

■ ■ ■ ■ ■ 확산탄(집속탄)금지운동 안내서 ■ ■ ■ ■ ■

죽음의 비 확산탄을 금지하라

확산탄이 터지며 내장한 소폭탄들을 흩
뿌리는 모습을 실물로 형상화한 설치물
(라오스 COPE 전시관)

무기제로



공중 투하용 확산탄으로 폭격하는 모습



확산탄의 소폭탄들



확산탄이 터지며 내장한 소폭탄들을
흩뿌리는 모습을 실물로 형상화한
설치물 (라오스, COPE 전시관)



제거하고 난 소폭탄들 (라오스)



라오스에 떨어진 확산탄들



쇠구슬이 다량 들어있던 소폭탄의 내부



포격용 확산탄인 155mm 개량고폭탄



한국의 K-9 자주포.
포격용 확산탄인 DP-ICM을
포탄으로 사용한다.



한국의 다연장로켓시스템.
대표적인 확산탄 발사 무기체계이다.



실물로 만든 확산탄 전시물 (라오스)



확산탄의 껍데기로 만든 배.
라오스 사람들은 도처에 널린
확산탄 껍데기로 온갖 생활 용품을
만들어 사용했다.



확산탄의 폭탄 껍데기를 이용해 지은 집 (라오스)



확산탄 탄피를 이용해 만든 설치물
(라오스, COPE 전시관)



라오스의 피해생존자들이 그린 작품.
 핸디캡인터내셔널의 프로그램이었다.
 (위) 원치 않는 선물 The Unwanted Gift, 솔리야 포미봉
 (가운데) 생활 A Livelihood, 홍사 꽃소반
 (아래) 사투 Striving, 손통 베룽빌라봉



피해생존자들.
드파르(확산탄 피해자, 라오스)
자라 수판(확산탄 피해자, 레바논)
송 코살(지뢰 피해자, 캄보디아)



확산탄금지협약을 채택한 더블린 외교회의 (2008년 5월)



확산탄금지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확산탄금지연합의 캠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확산탄금지협약 첫 당사국회의 개최식 (2010년, 라오스)



확산탄금지협약 첫 당사국회의에서 비축분 폐기 현황에 관한 국가별 보고가 진행 중이다.



확산탄금지협약 첫 당사국회의에 참석한 피해생존자들과 청년대사들 (2010년, 라오스)



피해생존자들과 청년대사들이 '비엔티안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채택하고 있다.



확산탄금지협약 2차 당사국회의 회의장 (2011년, 레바논)



확산탄금지협약 2차 당사국회의에서 확산탄금지연합의 워크숍.
지뢰와 확산탄에 대한 모니터 결과 발표가 진행 중이다.



확산탄금지협약 2차 당사국회의의 기간 확산탄 오염지역을 방문했다. (레바논 남부)



확산탄금지협약 2차 당사국회의의 일정으로 확산탄금지연합 활동가들과 피해생존자들은 축구 시합을 가졌다.



한국에서의 확산탄 금지 캠페인 (2010년)



불발확산탄 제거활동 (레바논)



피해생존자들의 지뢰 · 확산탄 금지를 위한 시민조약(People's Treaty) 캠페인



확산탄금지연합의 활동가들 (2010년, 라오스)

죽음의 비
확산탄을
금지하라

확산탄(집속탄) 금지운동 안내서

죽음의 비 확산탄을 금지하라

무기제로

차례

머리말 : 아래로부터의 국제법 9

들어가며 : 확산탄 생존자들의 목소리 15

1부 확산탄금지운동의 역사 19

확산탄이란 21

오슬로 프로세스 이전 21

오슬로 프로세스 25

더블린 협상과 협약 채택 31

확산탄금지협약 조인 32

1차 당사국회의 36

2차 당사국회의 40

2부 전 세계 국가들의 정책과 시행 46

확산탄금지협약 서명 국가와 비준 국가 47

확산탄 금지 국내 입법 국가 49

확산탄 사용 중단 국가 50

확산탄 사용 국가 51

확산탄 생산 국가 60

확산탄의 비축 국가	68
확산탄의 이전 국가	75
확산탄에 관한 원조 금지	76

3부 한국의 확산탄 문제 81

한국의 확산탄 관련 정부 정책	82
확산탄 생산 기업 한화와 풍산에 투자하는 기관 목록	88
한국에서의 확산탄 문제	102

4부 확산탄금지협약 깊이 읽기 113

확산탄금지협약에 관한 브리핑	114
확산탄금지협약에 관한 12가지 오해와 진실	122
확산탄의 불법성에 대한 국제법적 이해	131
확산탄금지협약 VS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142

확산탄금지협약 전문 149

안내서를 내며 아래로부터의 국제법

송 코살 씨를 처음 만난 건 라오스에서였습니다. 2010년 마침내 확산탄금지협약이 발효되면서 열린 첫 당사국회의의 장소가 라오스였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에는 지뢰금지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십수 년을 함께 활동한 세계 각지의 활동가들이 모였고, 송 코살도 이 역사적인 장소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26살이었던 이 캄보디아 여성 활동가는 1000여명이 모인 커다란 국제회의의 공간에서도 자주 보였습니다. 송 코살은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다른 나라 활동가들의 요청으로 각국 대표부와의 만남에 불려 나갔고 그들의 정부 로비를 위해 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고 이야기를 나누려 했기 때문에 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뽁뽁한 행사 일정과 잦은 교류에 지칠 만도 한데도 누구에게나 밝은 웃음을 건네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확산탄금지협약의 첫 번째 당사국회의라는 역사적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국으로 몇 개의 글을 써서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운동을 이끈 활동가와의 인터뷰로 채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산탄금지연합 집행부를 비롯해 여러 활동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누구로 할지 선뜻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행사 기간에 열린

수많은 워크숍 가운데 ‘불발탄에 관한 젠더적 관점’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송 코살의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뢰 피해자라는 사실, 그리고 11살 때부터 여성 장애인이 처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뢰금지와 확산탄금지를 위해 활동했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에 이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비로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인사를 나누려 했던 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송 코살 씨를 인터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갖 이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낯선 사람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 만나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확산탄 금지는커녕 더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려고 애쓰는 나라로 공식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가 무색하게도 송 코살 씨는 기꺼이 긴 인터뷰에 응해 주었습니다.

송 코살 씨는 1989년 5살 때 땀감으로 쓸 벧짚을 가지러 어머니와 함께 논으로 나갔다가 묻혀 있던 지뢰를 밟았습니다. 30년간의 전쟁과 내전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녀가 살던 바탐방(Battambang) 주는 세계에서 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송 코살 씨는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했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하긴 했지만 1993년에 내전이 일단락되고 최초의 연립정부가 세워지자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그녀의 마을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지뢰 위험 교육과 피해자 지원 활동을 보면서 송 코살 씨는 대인지뢰금지운동에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또 다른 지뢰 피해자 톤 차나렛 씨와 ‘캄보디아지뢰금지캠페인’이라는 단체를 설립했고, 피해생존자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캄보디아 지뢰금지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피해 보상이라는 자기 안의 사안을 넘어 세계를 향해 대인지뢰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이들 피해자들의 결연하고 열정적인 노력은 획기적인 성과로 이어졌고 마침내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노벨상위원회는 이들의 노력에 노

벨평화상으로 화답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참혹한 아픔의 땅입니다. 베트남 전쟁 시기에는 미국이 2600만 개의 소폭탄이 들어있는 8만 개의 확산탄을 캄보디아 땅에 투하했습니다. 이때의 폭격으로 최소 60만 명의 캄보디아 양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땅에 최소 600~700만 개의 확산탄 소폭탄이 불발탄으로 남아 있다고 추정합니다. 전쟁 후에는 크메르루주의 폭압 정치가 이어졌습니다. 크메르루주의 폴 포트 정권은 당시 전 국민의 1/3에 달하는 200만 명의 목숨을 학살, 처형, 고문, 기아로 앗아갔습니다. 바로 '킬링 필드'입니다. 그 다음은 베트남의 점령과 11년간의 식민 통치 속에서 분쟁이 끝없이 이어졌고, 1993년에 연립정부가 탄생한 후에도 1998년까지 분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분쟁과 내전으로 심어진 엄청난 양의 지뢰는 캄보디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뢰가 매장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북동부의 21개 지역은 1킬로미터당 2400개의 지뢰가 설치된 최악의 무기 오염지역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참담한 아픔과 슬픔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캄보디아는 무기 금지에 앞장서는 가장 선도적인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피해생존자들의 열정적인 활동 때문입니다. 이들의 지뢰금지운동은 캄보디아는 물론 전 세계에 울림을 주었고 결국 대인지뢰금지협약을 만들어냈으며, 2003년부터는 확산탄 금지에도 나서면서 정부가 앞장서도록 이끌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확산탄금지협약을 추진하겠다는 오슬로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리더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태국과 동반 가입을 원하는 캄보디아 정부는 아직 확산탄금지협약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두 강대국이 협약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고민은 깊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빠른 미래에 가입하겠다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비인도 무기를

자랑스러운 한국 무기라며 공중과 방송에 버젓이 홍보하고 있는 한국과는 천양지차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인지뢰금지협약과 확산탄금지협약은 그야말로 ‘아래로부터의 국제법’입니다. 두 협약은 세계 각지의 수많은 활동가들, NGO들, 국제기구들이 함께 일구어온 결과물이며, 무엇보다 그 피해생존자들이 힘겨운 여건 속에서도 목소리를 내며 뛰어다니는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였습니다. 무기 금지에 대한 세계적 동의를 얻고 국제협약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이들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는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국제인권단체들과 각국의 비정부단체들이 아래로부터 새로 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지협약이 주는 감동은 그 협약문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시도 소설도 아닌 하나의 문서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여기에 어떤 마음과 노력이 담겨 있는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인류의 진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아름답지 않은 세상에 대한 이토록 아름다운 문장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어 우리가 함께 일구어가야 할 세상을 제시해 줍니다. 이는 강력한 세계 질서에 휘둘렸던 한명한명의 시민들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자,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국가들이 목소리를 함께 내겠다며 연대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가공할 무기가 넘쳐나는 오늘날에 지뢰나 확산탄 하나 없앤다고 달라질 게 있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에 피해를 입히는 이런 무기들을 하나씩 없애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기가 아닌 인류에 대한 희망으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지난할지라도 분명히 공존의 세상을 향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걷는 송 코살을 곧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이 운동을 이끈 사람들이 지학순정의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어 방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수상이 결정되었을 때부터 들떴습니다. 가난한 농사로 삶을 살아가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올린 목소리와 세상에 내민 마음이 분명 한국에도 전해질 것입니다.

이 안내서도 같은 바람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노력의 일환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한국 사회에 전하고 싶습니다. 확산탄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한국이 미래에 어떤 대가를 치를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남북이 서로 대량으로 이 무기를 배치하고 있어 한반도 전체가 미래가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안보 상황을 이유로 현재와 미래에 끔찍한 짐을 지워서는 안 되며, 이 죽음의 무기를 없애기 위해 현실적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무기제로의 모든 멤버들이 오랜 시간 수많은 자료를 구하고 번역하고 토론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박석진, 이재승 두 선생님이 소중한 글을 여기에 함께 싣는 데 동의해 주었습니다. 동료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지지해 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2월
동료들을 대신하여
염창근

일러두기

1. 이 책자는 대부분 확산탄반대연합, 랜드마인액션, 랜드마인모니터, 대인지뢰금지 국제캠페인, 휴먼라이츠워치에서 공동 발간한 『BANNIG CLUSTER MUNITION』 (2009) 와 확산탄반대연합이 발간하는 연간 보고서인 『CLUSTER MUNITION MONITOR』 (2011), 그리고 확산탄반대연합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선별해 편역하여 엮은 것이다. 특별히 글쓴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글은 이 자료들을 참조했다. 원문을 비롯해 세부 내용에 관한 출처를 확인하려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라.

<http://www.stopclustermunitions.org>

<http://www.the-monitor.org>

2. 이 책자에 사용된 용어는 따로 정리하지 않고, 확산탄금지협약 2조의 ‘개념 정의’에 따랐다.
3. 주석은 원문 및 글쓴이의 것과 편집자의 것을 함께 각주로 처리하였다. 편집자의 것은 ‘편집자 주’라고 표시하였다.
4.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준하여 표기하였다.

들어가며

확산탄 생존자들의 목소리

드따르Dtar (라오스)

“2003년 어느 날, 나는 두 아들과 함께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폭탄을 발견해 강가로 건져 올렸는데, 그때 폭탄이 내 손에서 터졌고 나는 두 팔을 잃었습니다. 오른팔은 폭발할 때 날아갔고 왼팔은 첫 번째 절단 수술 후 그 부위가 감염되어 다시 한 번 수술을 하면서 더 짧아졌습니다.

폭탄은 바로 눈앞에서 터져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친지들이 모아준 돈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시야는 흐릿했고 2005년에 다시 병원에 다녔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양팔이 없으니 가족들을 부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그나마 한쪽은 인조 팔이라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후로 제 아내와 가족이 번 돈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열다섯밖에 안된 아들 한 명은 아내를 돕겠다고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한 뭐라도 하려 합니다. 채소를 재배하기도 하고 집 안 청소도 합니다. 그러나 별 도움이 못 되고 있습니다.”

수라지 굴람 하비브 Suraj Ghulam Habib (16세, 아프가니스탄 헤라트)

“그때 전 여섯 살이었고 가족과 소풍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폭탄을 발견했을 때 통조림인 줄로 알았죠. 제 사촌은 폭발 후 즉사했고 나머지 우리는 심하게 다쳤어요. 저는 두 다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너무 심한 부상 상태여서 의사는 존엄사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수술 이후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다리를 잃기 전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었어요. 확산탄은 제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전 학교에 가거나 친구들과 뛰어놀 수 없게 되었고 가족은 휠체어에 의지한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저를 보면 크게 웃거나 동정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하지만 전 이제 저의 다리를 가져간 치명적인 무기들을 금지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찬타바 Chanthava 부인 (48세, 라오스 세풍)

“저는 언제나처럼 논에서 일하고 있다가 우연히 확산탄을 건드리고 난 후 다리를 잃었고 시력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다리를 잃었을 때 주위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다 지뢰 제거 단체 한 곳에서 제 사정을 듣고는 제 딸에게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이제 제 딸아이가 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애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딸 옆에서 지내며 손자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딸아이가 걱정이 됩니다. 그 애가 하고 있는 일이 위험하지 않나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라 후세인 수판 Zahra Hussein Soufan (12세, 레바논 남부)

“여동생이 그것을 발견해서 제게 가져다주었어요. 제가 받으려 할 때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집자마자 폭발해 손을 다쳤어요. 저는 넘어졌고

친구들이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엄마는 의사에게 데려갔지만 손가락을 절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울기 시작했지만 수술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폭발할 때 소리가 너무 커서 청각이 이상해졌고 이후로는 잘 듣지 못하고 있어요. 여동생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폭탄 파편이 그 애 손가락에 박혔고, 동생도 청각을 잃었어요. 정말 아파요. 그리고 항상 추워서 몸을 따뜻하게 해 줘야 해요.

놀지 못해요.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전에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는데 이젠 깨닫고 어울리지 못해요. 손가락을 보고 놀리면서 다시는 자라지 못할 거라고 놀려 대거든요. 손가락이 다시 자라고 손이 제자리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예요.”

자라의 어머니 이야기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우리 저녁식사 중이었죠. 딸애가 종교음악회 간다고 나갔는데 집 밖에 나가자마자 큰 굉음이 들렸어요. 동생이 오렌지밭에 놀러 나갔다가 무슨 장난감처럼 생긴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자라는 그것은 피라미드 모양의 뚜껑이 달린 알록달록한 박스처럼 생겼다고 말했어요. 그 애가 잡자마자 폭발해서 엄지손가락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웃들이 손수건에 손가락을 담아서 우리에게 가져왔는데, 마치 다시 붙이면 원래대로 될 것만 같았죠.”

룸 벳 Rum Vet (35세, 캄보디아 끄라쎄 주)

룸 벳은 그녀의 집 계단에 앉아 25년 전의 확산탄 폭발 사고를 수줍게 설명했다. 그 사고로 그녀는 오른쪽 다리와 남동생을 잃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집 근처 밭에서 일하다 확산탄 폭발사고를 겪었다. 그녀의 집이 있는 끄라쎄 주州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많은 폭탄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 중의 하나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그 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다.

룸 벳을 장애인으로 만들고 남동생의 목숨을 앗아간 그 폭탄은 베트남 전쟁 당시 캄보디아에 심어진 수백만 개의 확산탄 불발탄 중 하나다. 미국의 폭탄 통계에 따르면, 적어도 2600만 개의 소폭탄이 들어 있는 8만 개의 확산탄이 1969년에서 1973년 사이 캄보디아에 투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조차 캄보디아 땅에 남아 있는 폭탄의 수가 600만 개에서 700만 개 사이에 이른다고 내다보고 있다.

사고 이후 룸 벳은 그녀의 아버지 람 룸(61)과 함께 살았다. 그녀는 조그만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채소와 쌀을 재배했다.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어머니는 지난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와 아버지는 그 땅이 여전히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먹을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라고 그녀의 아버지는 말했다.

* 확산탄 생존자들의 수기와 확산탄 금지 조치를 이루어 내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라. www.banadvocates.org

제1부



확산탄금지운동의 역사



1부 확산탄금지운동의 역사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많은 정부들은 확산탄(집속탄, 클러스터 폭탄, Cluster Munition)의 군사적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해 급격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확산탄을 금지하자는 국제여론이 크게 일면서 많은 국가들은 이 무기를 단호하게 옹호했던 입장에서 금지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변했다.

2006년 11월에 노르웨이 정부가 발의한 오슬로 프로세스(Oslo Process)는 확산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빠르고도 다각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오슬로 프로세스의 특징은 각국 정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나 유엔의 기구와 같은 국제조직, 그리고 확산탄반대연합(CMC, Cluster Munition Coalition)에 소속된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행위자들의 폭넓은 협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프로세스의 결과가 2008년의 확산탄금지협약(CCM,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이다. 이 협약은 확산탄의 사용·생산·비축·이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지뿐 아니라 확산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오염된 땅을 정화하며, 이러한 인도주의적 목표들을 위한 국제원조를 제공할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 협약은 2008년 5월 더블린에서 107개 국가 대표들이 협상하고 채택했으며, 2008년 12월 3일 오슬로에서 조인식이 열렸다. 2012년 2월 현재 111개 국가가 협약에 서명했고 68개 국가가 비준했다.

확산탄

확산탄은 내장된 작은 폭탄들을 넓은 지역에 걸쳐 흩뿌리며 터지는 무기다. 비행기에서 투하되거나 땅에서 발사되면 확산탄의 컨테이너(母彈)가 공중에서 열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작은 폭탄들(子彈)이 아래로 떨어지며 폭발한다. 하나의 확산탄 안에는 보통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소폭탄이 들어 있다.

확산탄은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확산탄은 수많은 작은 폭탄들을 흩뿌리는 산탄형 폭탄이어서 이 무기를 주거지역 인근에 사용할 때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과 민간시설 모두에 피해를 준다. 그리고 분쟁 이후에도 수많은 불발탄(UXO, unexploded ordnance)들을 남겨 대인지뢰처럼 지속적으로 위험을 낳는다. 확산탄의 불발탄들은 해당 지역으로의 접근을 막으며 분쟁 후에도 오래도록 민간인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다.

오슬로 프로세스 이전까지

1960년대부터 확산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해 1970년대에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금지협약이 제안되었다. 이것은 동남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확산탄에 대한 첫 대응이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당시에는 확산탄의 불발탄이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40년이 지난 후에도 민간인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1999년 유고슬라비아 연방, 특히 코소보와 세르비아에서 나토가 사용한 확산탄은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낳으면서 이 무기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MBT, Mine Ban Treaty)을 계기로 각성한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은 지뢰 제거활동의 영역을 확장시켜 확산탄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후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랜드마인액션(Landmine Action),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ennonite Central Committee), 핸디캡인터내셔널(Handicap International),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벌인 공동 현장조사는 확산탄에 대한 국가 정책과 실행을 변화시킨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확산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제적십자위원회와 NGO들은 특정 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¹⁾에서 전쟁잔류폭발물(ERW)²⁾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각국 정부를 설득했다. 1999년 12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회의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모든 확산탄 사용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사용 중단(moratorium)을 최초로 요청했다. 2000~2003년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당사국들은 처음으로 전쟁잔

1)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으로 1980년에 체결되고 1983년 12월에 발효됐다. 지금까지 엑스레이로 탐지 불가능한 파편무기(제1의정서), 지뢰 및 부비트랩(제2의정서), 화염무기(제3의정서), 실명(失明) 레이저무기(제4의정서), 전쟁잔류폭발물(제5의정서) 등 5가지 무기에 대해 사용을 규제하는 의정서를 채택했으며, 2개 이상 의정서를 채택하면 가입국이 된다. 2012년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등 112개국이 가입국이다. 그러나 이 협약은 무기 금지를 위한 본래의 목적을 이행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협약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다. 규제 대상인 무기의 정의가 모호하여 통제에 허점이 많고, 무기 규제의 내용 역시 명확하지 않아 오용되거나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허용하며, 실질적으로 비인도 재래식 무기의 주요 생산국이자 사용국인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에 의해 협약의 이행 및 개정이 주도되어 왔기 때문이다.

— 편집자 주

2) 전쟁잔류폭발물(ERW, Explosive Remnants of War)은 무력충돌에 사용되었지만 폭발하지 않고 남은 확산탄 불발탄 및 폭탄, 로켓, 포탄, 수류탄, 탄약 같은 폭발성 무기를 의미한다. 또한 무력충돌이나 분쟁으로 버려지거나 남겨진 폭발물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ERW는 위험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류폭발물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상했다.

2001~2002년 아프가니스탄과 2003년 이라크에서 엄청난 양의 확산탄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확산탄과 같은 무기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돌아보게 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약 248,000개의 소폭탄을 투하했으며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미국과 영국이 2003년 이라크에서 200만 개의 소폭탄을 사용했으며, 이는 (소형무기를 제외한다면) 다른 어떤 무기보다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았다고 발표했다.

지뢰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NGO들은 2003년 4월 아일랜드에서 회의를 열고, 지속적인 확산탄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그 결과 2003년 11월 13일 헤이그에서 확산탄 반대운동의 연합기구인 확산탄반대연합이 시작되었다. 확산탄반대연합은 즉각적인 확산탄 사용 중단, 잔류폭발물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 그리고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을 촉구했다. 확산탄반대연합은 규모와 영향력이 계속 커졌으며, 특히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이 확산탄반대연합에 가입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2003년 11월 28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당사국들은 전쟁잔류폭발물에 대한 제5의정서를 채택했다. 이 의정서는 국가가 사용한 무기로 발생한 전후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확산탄 사용으로 야기되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불충분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확산탄반대연합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차원에서 확산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여전히 이 무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에 한정된 토론만 했고, 성과는 미미했다. 한편, 확산탄반대연합은 국가를 설득해 확산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2006년 2월 벨기에는 처음으로 확산탄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노르웨이가 확산탄 사용 중단을 선언했다.

이러한 흐름과 반대로 2006년 7월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엄청난

양의 확산탄을 사용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도덕적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UN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약 400만 개의 소폭탄을 레바논에 투하했고 100만 개의 불발탄을 남겨놓았다. 위험 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의 오염 정화 작업이 요구되었다. 확산탄반대연합은 여기에 지원 활동을 하면서 이 무기의 영향에 관해 빠르게 문서화할 수 있었다. 이는 현행 법률로도 충분하다는 많은 국가들의 주장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확산탄을 사용한 것이 촉매가 되어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차원의 외교적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2006년 11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제3차 평가회의는 이 협약이 당면한 확산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되었다.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이 평가회의에서 인구밀집지역에서의 확산탄 사용의 중단과 부정확하고 불발률이 높은 확산탄의 폐기를 촉구했다. 26개 국가가 확산탄이 야기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할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을 논의하자는 제안서에 지지했다. 이 제안서는 부결되었지만 25개 국가가 인구밀집지역에서의 확산탄 사용을 금지하고, 부정확하고 불발률이 높아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확산탄을 금지하고, 그러한 확산탄의 비축분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협정을 촉구하며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은 실패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확산탄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것에 강력히 반대했다.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은 전쟁잔류폭발물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평가회의의 마지막 날인 2006년 11월 17일, 노르웨이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과는 별도로 확산탄 관련 협약을 논의할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결과 오슬로 프로세스

라고 알려진 과정이 시작되었다. 같은 날 노르웨이 외무부 장관 요나스 가르 스토레(Jonas Gahr Støre)는 “용인할 수 없는 인도적 피해를 끼치는 확산탄을 금지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확산탄 금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폭넓은 공감대는 이미 마련되었습니다”라고 표명하며, 오슬로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슬로 프로세스

유엔 기구들, 국제적십자위원회, 확산탄반대연합뿐만 아니라 49개국이 2007년 2월 22~23일 열린 오슬로 회의에 참여했다. 회의는 오슬로 선언(Oslo Declaration)에 46개국이 서명하면서 끝이 났다. 이 선언은 민간인에게 까지 피해를 입히는 확산탄의 사용·생산·비축·이전을 금지하는 법적 인 협약을 2008년까지 마무리 지을 것과 이 무기가 이미 야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제도적 틀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슬로 선언은 협약을 진전시키고 논의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미래의 협정이 모든 확산탄을 금지할 것인지 혹은 단지 특정 형태의 것만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 양쪽 의견들을 모두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기술되었다.

오슬로 회의 전에 노르웨이는 오슬로 프로세스를 이끌어 가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과 자원을 제공할 중핵그룹(Core Group)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중핵그룹은 노르웨이, 뉴질랜드, 멕시코,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페루, 그리고 교황청으로 구성되었다. 유엔개발계획(UNDP)도 오슬로 프로세스에 함께하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참가했지만 유엔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외교 구상을 주도하고 자원을 지원하는 부담은

중핵그룹의 몫이었다.

2007년 3월 15일 오슬로 회의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지역회의로 이어졌다. 이것은 오슬로 프로세스에 더 많은 국가들의 참가를 독려하고 최종 협약을 도출하기 위한 지역모임의 첫 시작이었다.

한편, 국제적십자위원회는 2007년 4월 18~20일 스위스 몽트뢰에서 전문가모임을 소집했다. 여러 나라의 군사·외교·현장·NGO 전문가들이 집결한 이 모임은 확산탄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했으며, 기술적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 국제회의는 2007년 5월 페루 리마에서 열렸다. 리마 회의에는 총 67개국이 참가했으며,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해 27개국은 처음으로 오슬로 프로세스에 참여했다. 여기에서 협약의 초안 문안이 발표되었다.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을 주요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이 문서는 확산탄 금지와 인도적 대응이라는 두 가지 중심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참가국들은 향후 협약의 틀과 핵심적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확산탄의 사용·생산·무역의 금지, 비축분 폐기, 오염지역 정화에 대한 요구 및 마감기한, 그리고 피해자 지원 의무.

초안에서는 확산탄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지를 채택했으나 목표를 추적하고 명중시키는 소폭탄들은 제외되었다. 몇몇 국가들 역시 자기파괴 장치나 일정 수준의 신뢰도를 가진 소폭탄은 제외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초안은 또한 피해자 지원에 대한 특별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리마 회의 이후에는 다른 국가들이 협정의 목표를 이해하고 오슬로 프로세스에 참가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후속 회의들이 개최되었다. 2007년 9월 4~5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 지역회의에는 18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참석했다. 2007년 10월 3~4일 세르비아는 확산탄으로 피해를 받은 국가들을 위해 베오그라드 회의를 주최했다. 이 회의는 확산탄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바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했다. 베오그라드 회의에는 강력한 조약을 촉구한 확산탄 생존자들도 참가했다.³⁾ 10월 30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지역회의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확산탄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들, 특히 비축분 폐기와 피해자 지원에 대해 토론했다.

2007년 11월 5일 확산탄반대연합은 확산탄에 대한 첫 번째 ‘국제행동의 날’을 조직했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벌어진 이 행사의 첫 출발은 뉴질랜드에서 시작되었다. 활동가들은 비행기를 동원해 수도 웰링턴에 확산탄 모양의 전단지를 투하하는 ‘확산탄 폭격’ 행동을 벌였다.

2007년 11월 제네바에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당사국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논의하는 일에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으나 “그런 제안 자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07년 11월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에서 확산탄에 대해 1년간의 토론을 진행한 시점이자 오슬로 프로세스에서 조약의 초안이 만들어진 이후 시기였다. 당사국들은 확산탄에 대한 금지에 반대했고 홍보나 외교적으로 필요할 때에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 대안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오슬로 프로세스에 참가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도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 12월 5~7일 비엔나에서 차기 오슬로 프로세스 회의를 주최했다. 오스트리아의 외무부 장관은 자국 의회가 확산탄에 반대하는 국내법을 채택했다고 발표하면서 회의를 시작했다. 비엔나 회의에는 놀랍게도 138개국 정부 대표와 50개국 시민사회 참가자들이 참석했고 오슬로 프로세스 첫 해 동안의 운동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3) 베오그라드 회의에서 처음으로 레바논, 세르비아, 알바니아, 타지키스탄의 생존자 그룹이 벨기에 핸디캡인터내셔널의 협력 아래 오슬로 프로세스의 팀으로 구성되는 것에 동의했다. 이들 “Ban Advocates”는 오슬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블로그(blog.banadvocates.org)를 만들었다.

이 회의에서는 피해자 지원, 오염 정화, 비축분 폐기, 국제협력 및 지원과 같은 향후 협약의 중요 조항들에 관해 새로운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개념 정의(definition), 핵심적인 의무들이 적용되지 않는 과도기, (당사국이 아닌 국가와의 합동군사작전 같은) ‘상호운용(interoperability)’ 등 많은 이슈들이 논쟁거리로 남아 있었다.

비엔나 회의 동안 중핵그룹은 리마 회의의 내용에 기초했던 협약 초안을 개정했다. 새로운 초안은 확산탄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지를 명백히 유지했다. 하지만 (목표를 추적하는) 특정 무기는 금지목록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리마 문서의 내용 대신, “용납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신뢰할 만한 특정 확산탄을 금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노르웨이민중원조(Norwegian People's Aid), 노르웨이국방연구소(Norwegian Defence Research Establishment), 콜린킹협회(Colin King Associates)가 2007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99% 신뢰할 만하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대량으로 사용한 자기파괴형 M85 소폭탄과 많은 정부가 금지목록에서 제외되길 바라는 확산탄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라는 것이 밝혀졌다.⁴⁾

그리고 비엔나 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은 확산탄을 합법적인 무기라고 간주하는 국가들과의 군사적 파트너십에 협약이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상호운용’이라는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이 문제는 협정 당사국들에게 금지된 활동에 다른 나라가

4) 이들 세 단체가 공동으로 발간한 “M85 : 신뢰도 분석” 보고서(www.folkhjelp.no)는 자기파괴 장치를 갖춘 “DPICM-type” 소폭탄 M85의 신뢰도를 검정하면서, 어떻게 기계적 자기파괴 장치와 불합격률 테스트 체계가 인도적 위해를 예방하는 데 실패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시험 단계와 전투 단계 모두를 분석한다. 이 보고서와 발표 내용은 또한 개념 정의에 대한 미래의 논쟁에 예상되는 증거와 분석과 관련 해 전례를 만들었다.

관여하도록 원조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이 부분이 비록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있는 조항과 거의 동일할지라도 이 금지가 군사계획자와 지휘관을 법적 위협에 노출시키고 무기고에 확산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합동군사작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확산탄반대연합 등은 대인지뢰금지협약의 관례를 따라 윤리적이고 실질적인 일관성을 갖기 위해 이러한 “원조”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엔나 회의의 토론에서는 과거 확산탄 사용국들의 특별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피해국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새 조항은 다음 모임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정치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마지막 협약 원문까지 유지되었다. 이 무기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부터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공식 협상 전 마지막 오슬로 프로세스 회의는 2008년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렸다. 모두 106개 국가가 참가했으며 뉴질랜드에서 열린 가장 큰 군축회의가 되었다. 태평양 지역의 9개 국가를 포함해 몇몇 국가들은 오슬로 프로세스에 처음으로 참가한 것이었다. 43개국에서 온 142개 시민사회 참가단도 회의에 참여했다.

웰링턴 회의는 오슬로 프로세스 회의들 중에서 가장 논쟁적인 것이었다. 비엔나 회의 이후 중핵그룹에 의해 다시 개정된 협약의 초안에서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조항을 토론할 때는 팽팽한 분위기가 회의장을 감돌았다. 격렬한 토론이 끝나자 일부 국가들(‘유사의견 그룹’⁵⁾이라고 자칭한 국가들은 협약 초안을 수정하기 위해 새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특히 금지목록으로부터 면제 혹은 제외(개념 정의에 관한 문제), 과도기, 상호운

5) ‘유사의견 그룹’은 비엔나 회의 기간 동안 구성되었다. 공식적인 지위는 없었지만 여기에는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영국,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가 포함되어 있었다.

용을 용이하게 하는 조항을 요구했는데, 이는 확산탄반대연합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과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도 강한 비판을 받았다.

회의가 끝나자 ‘유사의견 그룹’은 불만을 표시했고 그들의 의견과 시각이 균형잡힌 방식으로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다른 많은 국가들, 특히 확산탄의 영향을 받은 라오스, 레바논,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은 협약 초안과 회의가 개방적이고 수용적이었다며 적극 찬성했다. 협약 초안은 향후 토론을 위해 변경 없이 더블린 협상으로 향했으나, 건설적인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유사의견 그룹’의 제안서는 추가적인 고려를 위해 요약본으로 첨부되었다.

총 82개 정부가 2월 22일 웰링턴 선언(Wellington Declaration)에 서명했고 그 숫자는 협상이 다가옴에 따라 증가했다. 웰링턴 선언은 더블린 협상으로 이어졌고 이 협상에서는 협상의 기초로서 웰링턴 초안문이 사용되었다. 국가가 이 협상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웰링턴 선언에 서명해야 했다.

웰링턴에서 국가들은 협상을 위해 “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 초안 역시 마련했고 더블린에서 이 규칙들이 승인되었다. 여기에는 공식회담에서 확산탄반대연합 같은 NGO들이 공식 참관인의 지위를 갖는 것을 허용하는 대인지퇴금지협약과 같은 선례가 유지되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초안 본문을 바꾸고 싶어 하는 어떤 국가도 수정안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협상에 참가하는 정부들의 2/3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더블린 협상으로 나아가는 몇 주 동안, 연대를 건설하고 핵심 이슈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회의가 잠비아의 리빙스톤(3월 31일 ~ 4월 1일), 멕시코의 멕시코시티(4월 16~17일)에서 열렸다. 국제적십자위원회도 태국 방콕에서 회의를 열었다(4월 24~25일). 확산탄반대연합은 2008년 4월 19일 50개 이상의 나라에서 공동으로 두 번째 ‘국제행동의 날’을 주최했다. 전 세계 종교지도자들과 대표자들도 확산탄 반대를 위한 강력한

조약을 요구했다.

더블린 협상과 확산탄금지협약 채택

2008년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아일랜드가 거대한 게일식 축구경기장인 크로크 파크 스타디움에서 확산탄에 대한 더블린 외교회의를 주최했다. 107개의 참가국과 20개의 참관국을 포함해 모두 127개 국가가 공식 협상에 참여했다. 회의는 협상 의장인 다이티 오케알라이그(Daithi O'Ceallaigh) 아일랜드 대사가 협상문의 세부항목들을 조목조목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전체(전원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 대사는 동료외교관들을 지명해 격의 없는 회의를 열었다. 첫 주말까지 각국 대사들은 개념 정의, 상호운용, 비축, 폐기, 피해자 지원, 의무 준수(compliance) 등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

양보를 요구하기보다는 해법을 찾는 보다 준비된 국가들 덕분에 초반의 분위기는 건설적이었다. 그럼에도 협상은 여러 쟁점에서 국가 간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개념 정의, 이행 기한, 상호운용뿐만 아니라 비축분 폐기와 처리의 마감기한에서 비축분 폐기 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람직한지, 훈련이나 개발 목적으로 확산탄과 소폭탄의 보유를 허락하는 조항을 둘 것인지, 과거 확산탄 사용자들에게 특별 책임을 지울 것인지, 피해자 지원 조항은 어느 정도까지 설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협약 발효를 위해서는 몇 개의 비준국이 있어야 하는지 등 쟁점에 따라 서로 입장이 달랐다.

그러나 이들 쟁점들에 대해 협상 직전 또는 도중에 상당수 국가의 입장이 극적으로 변했다. '유사의견 그룹' 대부분도 포함되었으며,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었다.

5월 28일 오케알라이그 대사는 통합 협상문 초안을 담은 의장 문서

(Presidency Paper)를 소개하며 이를 “극히 야심적”이라고 묘사했고 “오늘로 선언과 일치하는, 이해와 타협의 최고의 균형이다”라고 말했다.

총 71개의 국가들이 초안을 지지하는 열의의 수준은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채택을 거부할 국가는 없어 보였다. 확산탄반대연합은 그 초안을 “놀랄 만하다”고 묘사했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수백만 시민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며, 즉각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미 이 무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원조를 제공할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2008년 5월 30일, 확산탄금지협약을 전체 참가국 중 한 국가도 빠짐없이 107개 모든 국가가 박수로 통과시켰다.

더블린 회의의 확산탄반대연합 대표단은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이라크, 세르비아, 타지키스탄, 베트남, 서사하라에서 온 12명 이상의 확산탄 및 지뢰 생존자를 포함해 61개국 284명의 활동가들로 구성됐다. 회의 기간 동안 확산탄반대연합은 광범위한 로비 작업, 매체 홍보, 개최 장소인 크로크 파크와 더블린 시내에서 대중행사를 벌였다. 확산탄반대연합 대표단은 협약의 모든 특별조항들에 대해 강력한 로비를 펼쳤고, 외교관들에게 기술적인 조언을 했으며, 며, 회의에서 중재 역할을 했고, 협약의 안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자료들을 발간했다.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모범적인 협력, 특히 확산탄 생존자들의 열정적인 활동은 협상 과정을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으로 널리 보도됐다.

확산탄금지협약 조인

획기적인 법률적 문서인 확산탄금지협약은 확산탄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포괄적 금지의 의미는, 군축의 관점(사용, 생산, 교역에 대한 절대적 금지와 비축분 폐기 요구 및 마감기한)과 실제적인 인도주의적 관점(오염지역 정화

요구 및 마감기한, 위험 교육과 피해자 지원 요구, 그리고 현장에서의 인도적 행동에 대한 국제적 지원 요구) 둘 다로부터의 접근을 뜻한다.

오늘로 프로세스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국가들의 태도 변화의 정도는 협약에 담기지 않은 것들에서 나타난다. 스스로 터지거나 신뢰도가 높다고 주장되거나 “직사(직접조준사격)” 무기의 확산탄에 대해 관대한 예외를 두지 않았다. 금지됐지만 여전히 쓰고 있는 확산탄들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이행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오늘로 프로세스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러한 사안들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군사대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의 핵심적인 요구였다. 결국 이 나라들은 이러한 조항들이 인도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했다.

가장 뜨거운 두 개의 쟁점은 개념 정의와 상호운용이었다. 몇몇 국가들은 소폭탄들을 가진 모든 무기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협상에서는 결국 어떤 무기들은 확산탄과 같은 부정적 효과(즉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불발탄으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를 갖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 이런 무기들은 확산탄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지목록에서 제외되려면 훌쩍려지기보다는 단독 목표물만을 감지하고 공격하는 제한된 숫자의 소폭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그것들은 최소 무게와 불발탄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자기파괴 장치 및 자기비활성화 기능과 같은 안전장치를 가져야만 한다.⁶⁾ 확산탄반대연합은 생산·비축·사용하는 이에게 그러한 무기들도

6) 2조 2항의 (c)항은 10개 미만의 소폭탄을 가졌고, 각 소폭탄의 무게가 4킬로그램 이상이고 단일한 타격 목표를 감지하고 공격할 수 있고, 전자적 자기파괴 기능과 자기비활성화 기능을 지닌 폭탄을 확산탄에서 제외한다. 현존하는 무기 중 오직 세 종류만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 SADARM, BONUS, SMArt-155가 그것이다. 미국은 SADARM을 비축하고 있지만 생산은 중지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에서 SADARM을 사용했다. 두 개의 소폭탄이 들어있는 BONUS는 프랑스와의 합작으로 스웨덴에서 생산됐다. 역시 두 개의 소폭탄이 들어있는 SMArt-155는 독일에서 생산됐다. 지금까지 이 둘은 전투에 사용되지 않았다. SMArt-155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국가는 그리스와 스위스뿐이며 호주와 영국은 조달하는 과정

확산탄으로 기능하지 않고 기능할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고, 미래에도 이 무기들이 인도적인 조직들에 의해 면밀히 감시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전이 분분했던 상호운용 논쟁에서, 국가들은 21조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과의 관계”를 넣는 데 동의했는데, 확산탄반대연합은 이 조항이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졌으며 구체적인 행동을 규제하고 있는 원조 금지 조항이 합동군사작전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애매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⁷⁾ 그래도 이 조항은 참가국들이 비참가국에게 확산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협약에 동참할 것을 장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오염 정화, 피해자 지원, 국제협력과 지원에 관한 조항은 대인지뢰금지협약의 유사한 조항을 발전시켰다. 이 조항들은 무력충돌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장했다. 특히 피해자 지원에 대한 6조는 이러한 권리들을 실천하게 하는, 피해자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을 분명하게 표현한 획기적인 진전이다.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확산탄반대연합은 대인지뢰금지협약의 10년간의 실행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활용해 그 조항들을 개선했다. 연례투명정보 고서의 제출, 위험 교육을 제공할 의무, 과거 확산탄 사용자들에 대한 특별 책임(소급적용), 그리고 마감기한 연장 요청에 관한 매커니즘 등이 그것이다.

일부 조항의 유보 금지, 무력충돌 중의 협약 철회 금지, 형사상 제재를 포함한 국가 이행 조치들을 채택할 의무, “어떤 상황 하에서든”이라는

에 있다. BONUS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확산탄금지협약에 대한 12가지 오해와 진실”, 2009)

7) 21조는 당사국이 “당사국에게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당사국과의 군사협력과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1조의 당사국의 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

광범위한 적용 등도 대인지뢰금지협약에서 따온 중요한 조항이다.

확산탄반대연합이 비판하고 우려하는 협약의 요소들로는 비축분 폐기의 마감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조항, 훈련의 목적으로 확산탄과 소폭탄의 보유를 허용하는 조항, 그리고 참가국 영토를 가로지르는 확산탄의 이동이나 당사국 영토에 외국이 확산탄을 보관하는 것, 확산탄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 등에 대해 금지의 명료함이 부족한 점이 있다.

더블린으로부터 조인회담이 시작된 2008년 12월 3일의 오슬로로 가는 길은 도전이었다. 2008년 8월 그루지아와 러시아가 분쟁 중에 양쪽 모두 남오세티아에서 확산탄을 사용해 70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했다. 협약이 채택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 확산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확산탄반대연합은 항의했고 전 세계의 매체들도 비판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협약에 가능한 많은 국가들의 서명을 확보하는 활발한 활동들이 있던 시기였다. 불가리아의 소피아(9월 18~19일), 우간다의 캄팔라(9월 29~30일), 라오스의 시엥쿠앙(10월 20~22일), 에콰도르의 키토(11월 6~7일), 레바논의 베이루트(11월 11~12일)에서 개최된 지역회의는 서명에 대한 약속을 보증했고 협약 이행을 위한 유용한 기회를 제공했다. 2008년 10월 1일, 18개 국가에서 확산탄 금지를 위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활동가들은 발칸 반도에서 오슬로까지 8주간의 여정으로 “금지버스(Ban Bus)”를 출발시켰다. 확산탄반대연합의 국제행동 주간이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렸고 74개 국가에서 확산탄반대연합 회원들이 협약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오슬로 프로세스가 시작된 지 2년만인 2008년 12월 3~4일, 노르웨이는 확산탄금지협약 조인회담을 위해 오슬로에서 각국 정부들을 맞이했다. 94개 국가의 장관들과 고위관료들은 오슬로 시청에서 협약에 서명했으며,

75개국으로부터 온 250명의 활동가로 구성된 확산탄반대연합 대표단은 조인식을 환영했다. 4개 국가가 서명과 동시에 비준했다. 다른 28개 국가는 참관국으로 참석은 했으나 서명하지는 않았다. 그들 중 대부분은 확산탄에 대한 인도주의적 노력에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 이 역사적 사건에 참석했으며 이 협약에 곧 참여할 수 있는 위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조인회담에서 많은 국가들은 이 협약이 높은 수준에서의 인도주의적 보호뿐만 아니라 그간 성취해 온 대담하고 역동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협약이라고 확인했다. 또 정부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그리고 확산탄 피해자들의 직접적이고 결연한 노력은 획기적인 인도주의적 성취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금 보여줬다. 많은 연설자들은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이루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문구가 현실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가입과 비준을 확고히 하는 일과 이 협약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당사국회의⁸⁾

2010년 11월 9~12일 라오스는 확산탄금지협약의 역사적인 첫 당사국회의를 주최했다. 협약은 2008년 12월 3일 조인식 이후 1여 년 만에 30개 이상의 국가가 비준함으로써 2010년 8월 1일에 발효됐다. 이번 회의는 확산탄금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첫 번째 당사국회의라서 그 의미가 자못 컸다. 121개 나라가 대표부를 보냈으며 세계 각지에서 온 시민·사회 활동가 500여 명도 이 회의를 공식 참관했다. 회의는 1000여 명이 함께 의지를 모으는 보고와 논의의 장이 되었다. 확산탄 금지를 향한 세계적

8) 첫 당사국회의에 무기제로에서는 문명진(날맹), 염창근이 확산탄반대연합 소속으로 참가했으며 이 장은 염창근이 작성하였다. - 편집자 주

차원의 공식 회의가 성사된 것이다.

확산탄금지협약 당사국회의는 'No Cluster Munitions : From Vision To Action(확산탄 금지 : 전망에서 행동으로)'라는 모토로 라오스 정부가 국가적 행사로 준비했다. 이 가난한 나라는 여기에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았고 라오스에서 가장 좋은 시설과 호텔들이 각국에서 온 정부 대표단과 활동가들에게 배정되었다. 라오스의 이런 준비는 확산탄을 없애려는 라오스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었고도 남았다.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자연을 닮은 순수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유명한 라오스. 그러나 이런 땅에 현대의 무기인 확산탄이 지천에 깔려 있다. 라오스는 지금까지 한 번도 확산탄을 사용하기는커녕 생산하지도, 비축하지도 않았다. 오직 미국이 라오스 산천에 뿌린 확산탄을 경험했을 뿐이었지만 그 피해는 4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너무 크게 남아 있다

미국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인도차이나 반도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전폭기로 확산탄을 투하했고, 라오스에는 2억 6000만 개가 넘는 소폭탄을 살포했다. 이는 220만 톤(2차 세계대전 전 기간에 투하된 폭탄의 전체량을 넘어서는 규모였다. 그리고 이 소폭탄의 30%인 8100만 개가 불발탄으로 라오스 땅에 심어졌다. 역사상 최악의 무기 오염이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오스의 수많은 산골 마을 사람들은 확산탄에서 흩뿌려진 불발탄과 더불어 살아간다. 불발탄은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으면 터지는데 라오스에서 불발탄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가 지금까지 5만 명이 넘는다. 특히 경작할 농토에 묻혀 있는 불발탄이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다. 대다수가 농민인 라오스 사람들에게 쟁기질이나 고기를 잡다가 땅속, 물속에서 갑작스럽게

터지는 이 불발탄은 그야말로 재앙이다. 불발 확산탄 제거 노력이 계속되고 확산탄 위험 교육이 라오스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지금도 한 해 300명 이상이 불발탄이 터져 사망한다. 이조차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에 한정된 것이므로 실제로는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상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라오스는 전체 17개 지역 중 10개 지역이 확산탄으로 심각히 오염되어 있으며 전체 마을의 1/4이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이 뿌린 확산탄을 반세기 동안이나 겪고 있는 것이다. 유엔개발계획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는 세계에서 가장 확산탄의 피해가 큰 곳이다. 고통의 범위에 서도 단연 세계 최고라고 규정했다. 불발탄은 농토, 학교, 운동장, 둔덕, 강, 길, 집 곳곳에 숨겨져 있다. 불발한 확산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이미 가난 속에 살아가는 농촌 주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어 왔다.

라오스는 세계 최빈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라오스의 책임이 아니다. 서방의 오랜 경제제재는 삶을 힘겹게 만들었고 엄청난 양의 확산탄은 농사도 마음껏 짓지 못하게 했다. 확산탄을 제거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기술은 열악한 라오스 경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 왔다. 농토, 학교, 마을에서만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데에도 최소 16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2009년까지 고작 4만 개의 불발탄이 제거되었다. 이는 라오스 전체 불발탄 양의 0.05%에 불과하다.

농민이 절대 다수인 나라에서 땅은 생존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라오스 사람들의 삶은 그 땅과 분리할 수 없이 이어져 있다. 그 땅에 폭탄이 심어져 파괴되어 있다는 사실은 라오스 사람들의 삶에도 폭탄이 심어져 있는 것과 같다.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라오스의 확산탄 생존자들과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외쳐온 결과였다.

라오스는 원조를 기다리는 것을 넘어 직접 확산탄을 없애기 위한

걸음에 앞장섰다. 라오스는 확산탄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불발탄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진 확산탄금지협약이 국제협약으로 채택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비준을 이루어냈다. 라오스는 이 협약이 자신의 미래를 여는 길의 하나이자 세계에서 확산탄을 없애는 중요한 시작임을 분명히 인지했다. 그리고 첫 번째 협약 당사국회의를 국가 차원에서 주최하며 이 운동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라오스의 노력에 감명했으며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라오스가 주최한 1차 당사국회의에서는 확산탄 문제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 회의에서 전 세계 각국 정부 대표들은 확산탄을 더 이상 용인할 여지가 없다는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협약의 포편화, 비축분 폐기, 오염지역 정화, 피해자 지원, 투자 철회, 투명성 조치, 국내 이행 조치 등 확산탄금지협약의 실행과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짰다. 이미 스페인, 노르웨이, 벨기에 등 최소 7개 국가가 확산탄 보유분을 전부 폐기했으며 많은 나라가 구체적인 폐기 일정을 약속했다. 알바니아, 잠비아 등은 자국 내 확산탄 오염지역 정화를 끝냈다고 보고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확산탄 제거를 위해 더 많은 재정 지원을 공식 문서로 약속했다.

당사국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부들은 회의 마지막 날인 12일에 비엔티안 선언, 비엔티안 행동 계획, 2011년 프로그램, 국가별 보고서 양식이라는 네 가지 공식문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라오스 정부가 초안을 마련한 '비엔티안 선언'과 '행동 계획'은 더 빠른 불발탄 제거, 오염지역 정화, 희생자 지원 등에 관한 일정표를 보여준다. '행동 계획'에는 비준국의 비축분을 8년 내에 모두 폐기하고, 10년 내에 오염지역을 정화하고, 피해국가들은 피해자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6개월 내에 지정하고 다른 국가들은 이를 지원하는 내용 등 66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담았다. 유엔은

이 모든 과정에 전체적인 지원을 서약했다. 유엔은 새천년 개발 목표의 하나로 불발탄 제거를 등록시켰다. 확산탄반대연합은 개막식과 회의에서 다루어진 모든 의제들에 대하여 정책 권고를 했으며 기대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회의를 공식 참관한 30여 개 국가의 대표들도 확산탄 피해 마을 현장을 방문한 후 “확산탄이 지속적으로 이 땅의 순수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협약의 정신을 존중하며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검토하겠다”고 동조했다.

회의 도중에 라오스에서 또 한 명의 어린이가 확산탄 불발탄으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불발탄을 주운 소녀가 폭발로 사망한 소식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숙연하게 했다. 그러므로 8세 때 확산탄 폭발로 왼팔을 잃은 톰미 실람판(Thoummy Silamphan)이 당사국회의에서 라오스 생존자 대표로서 한 이야기는 확산탄금지협약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확산탄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불발 확산탄으로 야기되는 희생을 종식시키기 위한 작업의 속도를 높여 라오스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확산탄으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차 당사국회의⁹⁾

라오스에 이어 두 번째 당사국회의가 열린 레바논은 1975년 이래 700명이

9) 2차 당사국회의에 무기제로에서는 가람, 아침, 여옥이 확산탄반대연합 소속으로 참가했으며 이 장은 여옥이 작성하였다. - 편집자 주

넘는 확산탄 피해자가 발생한 나라이다. 라오스와 레바논처럼 확산탄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나라에서 당사국회의가 열리는 것은 확산탄이라는 무기가 가져오는 고통과 현실에 직면함으로써 이 끔찍한 무기를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노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회의는 복잡한 안보상황 및 확산탄 사용의 경험이 있는 중동에서 열리는 군축회의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했다. 회의가 열린 레바논은 확산탄의 피해가 심한 나라 중 하나인데, 2006년 7월 말 전쟁이 끝날 무렵 이스라엘은 엄청난 양의 확산탄을 레바논 남부에 퍼부었고, 1200곳에 걸쳐 흩뿌려진 확산탄 중 40% 정도가 불발탄으로 남아 민간인과 농지, 주거지역, 학교와 사회기반시설을 오염시켰으며 경제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UN의 중재로 휴전이 선포된 2006년 8월 14일 이후에도 불발 확산탄으로 인한 사상자는 400명이 넘고, 그중의 90%는 민간인이었으며 1/3이 18살 이하였다. 이 심각한 피해로 인해 형성된 세계적인 인도주의적 위기감은 확산탄금지협약의 발효에 큰 영향을 미쳤다.

확산탄금지협약 2차 당사국회의는 “Together for a safer life”라는 모토로 2011년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120여개 나라의 정부관계자들과 66개 나라의 시민사회 활동가들, 확산탄 피해 생존자들이 참석해 확산탄금지협약의 이행계획에 대해 의논했다. 확산탄금지협약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국제협약인만큼 회의에서도 시민사회영역의 참여가 활발했고, 이에 대해 당사국들 역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입국이 아닌 40여개 나라의 정부관계자들도 이번 회의에 참석했는데(북한은 참가등록을 했지만 결국 오지 않음), 이는 이 협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확산탄이라는 무기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회의 기간에 비준한 스와질란드를 비롯해 확산탄금지협약 가입국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이제까지의 협약의 성과를 축하하고, 앞으로 화학무기, 확산탄 등의 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모든 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가 하나의 기준으로 협약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회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사국회의는 지난해에 채택된 비엔티안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협약의 보편화, 비축분 폐기, 오염지역 정화, 위험경감 교육, 피해자 지원, 국제적 협력 등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당사국들은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에 따른 각 나라별 이행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공식 일정의 첫 번째 날인 9월 12일에는 2006년 이스라엘이 사용한 확산탄의 불발탄이 아직 남아 있는 레바논 남부지역으로의 현장방문이 있었다. 정부 관계자들과 NGO 활동가들을 비롯한 회의참가자들 전체가 나바티예 지역과 사라펀드 지역으로 나누어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확산탄 피해지역의 실상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불발탄 오염은 폭발로 인한 사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서 생계를 꾸리기 힘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 자기 땅에서 스스로 불발탄 제거를 시도하다가 다친 경우도 많다고 한다. 레바논은 현재까지 67% 정도가 정화되어 확산탄 정화 작업의 이상적인 모델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33% 정도가 남아있다. 나바티예 지역의 경우, 레바논 사람들의 거주지이기도 했지만 헤즈볼라의 활동 구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확산탄 폭격의 목표지점이 되었고, 2006년 9월 24일부터 현재까지(2011년 9월) 20,000m² 오염구역 중 15,000m²에서 150여개의 소폭탄을 제거했다고 한다. 레바논에서 사용된 확산탄은 대부분 미국산으로, 이 지역에서는 88개의 소폭탄이 들어가는 M42, 650개의 소폭탄이 들어가는 BLU63 등이 발견된다. 불발탄 제거를 위해 관련 정보를 미국에 요청했으나, 미국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같은 유형의 확산탄을 한국도 생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공식 일정 외에도 다양한 사이드이벤트와 전시가 열렸다. 특정재래식무식금지협약에 대한 논의를 브리핑하는 사이드이벤트에서는 최근 특정재래식무식금지협약에서 진행 중인 확산탄 관련 제6의정서 초안 논의 내용이 확산탄금지협약보다 훨씬 더 후퇴했다는 지적과 함께 많은 비판이 있었다. IKV 팩스 크리스티(IKV Pax Christi)에서 주최한 확산탄 투자에 관한 사이드이벤트에서는 확산탄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 단체에서는 매년 확산탄 생산기업 중 요주의 기업을 선정하는데, 2010년에도 8개 선정기업 중 한국의 한화와 풍산이 목록에 올라가 있었다. 이 두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니, 총 49개(한화 32, 풍산 34)로 그중 한국의 기관은 26개(한화 20, 풍산 18)였다. 공식 일정이 끝나는 전날 밤에는 확산탄반대연합에서 주최한 레바논 생존자 축구팀과의 축구경기가 열렸다. 확산탄이나 지뢰로 팔과 다리를 잃은 사람들이 의족으로 자유롭게 그라운드를 누비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활동가들로 구성된 확산탄반대연합팀보다 훨씬 더 잘 뛰던 생존자팀은 경기에서 승리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국적, 성별, 인종, 장애, 종교, 직업에 상관없이 모두가 어울려 레바논 전통춤을 추며 행사를 즐겼다.

마지막 날에는 확산탄금지협약 2차 당사국회의 최종 선언문인 베이루트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협약의 기준들이 엄격하게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여섯 개의 워킹그룹(보편화, 피해자 지원, 정화와 위험경감, 비축분 폐기와 보유, 협력과 지원)이 만들어졌으며, 3차 당사국회의 전에 운용 가능한 이행지원기구(Implementation Support Unit, ISU)의 설립을 위한 별도의 회의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그리고 확산탄과 지뢰 피해 생존자들의 선언도 이어졌다. 생존자들은 피해자로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기본 인권임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5일간의 확산탄금지협약 2차 당사국회의의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확산탄금지협약 3차 당사국회의는 2012년 9월 10~14일 노르웨이 오슬로

에서 열기로 결정했고, 다음 회기간 회의는 2012년 4월 16~19일 제네바에서 열린다.

제2부



전 세계 국가들의 정책과 이행



2부 전 세계 국가들의 정책과 이행

확산탄 문제에 쏟아진 국제적 관심을 고려했을 때 확산탄 관련 각국 정부 정책과 시행에 대한 대부분이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특히 각 정부들의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알려지는 정보는 거의 전무했다. 그동안 오슬로 프로세스와 확산탄금지협약 그리고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으로부터 도출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부들은 확산탄과 관련한 자국 상황이나 입장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 심지어 몇몇 정부는 아예 자신들이 확산탄을 생산, 비축, 수출을 해왔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동안 확산탄을 생산, 비축, 수출해 왔던 주요 나라들 중 일부는 오랫동안 자국의 그러한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나 통계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그나마 오슬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확산탄금지협약이 채택되면서 36개 국가들이 ‘휴먼라이츠워치’나 ‘랜드마인액션’의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였고 이 중 몇몇 국가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롭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다.

확산탄금지협약이 발효된 이후에는 많은 당사국들이 연례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노르웨이를 비롯해 최소 34개 국가가 협약 7조의 투명성 조치에 관한 의무에 따라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당사국들도 준비되고 있다. 아직 비준하

지 않은 서명국 중에서는 캐나다와 콩고민주공화국이 자발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했다.

확산탄을 금지하는 국제적 기준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투명성은 핵심적인 척도다. 우리는 각국 정부들이 확산탄과 같은 무기로 인해 초래되는 인도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일원으로서 최대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확산탄금지협약 서명 국가와 비준 국가

94개국이 2008년 12월 3~4일에 열렸던 조인회담(오슬로)에서 협약에 서명(조인)한 이래 2012년 2월 현재 111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서명했다.

확산탄금지협약에 서명한 국가 중에 확산탄을 사용, 생산, 비축했거나 수출을 한 국가는 최소 38개국이다.¹⁰⁾ 이는 확산탄을 사용, 생산, 비축했거나 수출한 86개 국가의 44%에 해당한다. 이 38개국은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했으므로 앞으로 다시는 확산탄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셈이다. 28개의 나토(NATO) 가입국 중에는 현재까지 22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였다. 확산탄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 중에는 16개 국가(확산탄으로 오염된 전체 28개 국가의 57%)가 확산탄금지협약에 조인하였다. 여기에는 라오스, 레바논과 같이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확산탄금지협약에 서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각 국가들은 ‘조약법에

10) 7개국이 사용국이었으며(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영국, 이라크, 콜롬비아, 프랑스), 5개국이 수출국이었으며(독일, 몰도바, 영국, 칠레, 프랑스), 15개국이 생산국이었으며(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영국,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칠레, 프랑스, 호주), 37개국이 비축국이였다(확산탄 비축 국가 참조).

관한 빈협약(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¹¹⁾에 따라 확산탄금지협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확산탄의 사용, 생산, 거래 등)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의무를 지닌다. 최소 3개국(노르웨이, 네덜란드, 스페인)은 확산탄금지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미리 확산탄금지협약 1조(금지에 관한 일반의무)를 적용하기도 했다.

확산탄금지협약은 30개국 이상의 비준이 이루어지면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발효된다.¹²⁾ 4개국은 노르웨이, 바티칸 시국(교황청), 시에라리온, 아일랜드이 조인회담이 열렸던 2008년 12월 3일에 바로 비준까지 마쳤으며, 이후에 라오스와 오스트리아 등이 뒤를 이었다. 2010년 2월 16일에 부르키나파소와 몰도바가 비준하면서 협약 발효를 위한 최소 비준 국가수 30개를 충족했다. 이에 따라 2010년 8월 1일에 협약은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현재 비준한 나라는 68개국이다.¹³⁾

조인한 다른 많은 국가들도 이미 비준 작업을 시작했으며 빠른 시일 안에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 조인하지 않은 국가들 중에서도 많은 나라가 향후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들(캄보디아를 비롯해 협약을 채택한 과정에 함께한 19개국 등)은 더블린 회의의 모든 협의 과정에 참여했고 여기서 도출된 조항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나라들이다.

11) 비엔나협약은 모든 국가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관습법으로 간주된다.

12) 확산탄금지협약에 30번째로 비준한 국가가 발생한 달로부터 6개월이 지난 그 달의 1일에 협약은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여기에서 “비준”이라는 용어는 “협약 내용의 준수에 동의”하는 것을 짧은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각국은 확산탄금지협약에 다양한 방식으로 협약 내용을 준수하는 데에 동의할 수 있다. “비준”, “수락”, “승인”, “가입” 등 이 모든 단어들은 한 국가가 단지 조인에 그치지 않고 협약 비준국으로서의 법적인 의무(구속력)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비준은 입법부의 승인(의회 동의)을 요구한다. 협약의 비준서는 반드시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식적으로 기탁되어야 한다.

13) 서명 및 비준 국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www.stopclustermunitions.org/treatystatus/>에서 참조하라. - 편집자 주

확산탄 금지 국내 입법 국가

당사국들은 협약 9조의 국내 이행 조치에 관한 의무에 따라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2011년 8월까지 벨기에를 비롯해 14개 국가가 협약 이행과 관련한 국내법을 이미 제정했다. 또한 호주를 비롯해 최소 9개의 국가가 현재 입법 과정에 있다고 보고했으며, 라오스를 비롯해 또 다른 14개 국가는 현행법의 개정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네덜란드 등 다른 13개 국가는 이미 현존하는 국내법으로도 협약을 이행하는 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들은 확산탄금지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확산탄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벨기에는 2006년 2월에 세계 최초로 확산탄 사용, 생산, 이전, 비축을 금하는 국내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 12월에 확산탄을 금지하는 법을 자국에서 통과시킨 두 번째 나라다. 이 두 나라의 법은 모두 확산탄 비축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기한을 명시했다.

아일랜드는 확산탄금지협약이 자국 법체계 안에서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008년 12월 2일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그 자체로 확산탄금지협약에 대한 협약 비준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확산탄금지협약 조인과 비준이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가능했다. 아일랜드의 이 법안은 확산탄과 소폭탄의 사용과 개발, 생산, 획득, 보유, 이전을 금하고 있으며, 또한 확산탄금지협약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조항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고 100만 유로의 벌금형과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는 2008년 겨울, 확산탄금지협약의 조항들을 반영하여 국

내법 초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확산탄이나 폭발성 소폭탄과 같은 폭발물 생산에 대한 투자를 금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확산탄 사용 중단 국가

많은 국가들은 오슬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시작되기 이전부터 확산탄 사용(어떤 경우에는 생산과 비축, 이전까지 포함해)을 먼저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2006년 5월, 노르웨이 국방부는 확산탄 불발물에 관한 추가 테스트가 착수될 때까지 확산탄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¹⁴⁾ 노르웨이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2006년 11월, 확산탄 사용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확산탄 사용 중단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2007년 2월에 열린 오슬로 프로세스를 이끌어낸 초기 회의에서 자국의 확산탄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5월 리마에서 열린 회의에서 헝가리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확산탄 사용을 일시 중단하는 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6월, 네덜란드 정부는 이후 추가적인 명시가 있기 전까지는 자국 군대는 확산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임시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12월,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미 자국 내에서 확산탄의 사용, 생산, 이송을 일시 중단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는 확산탄 사용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14) 이보다 전인 2003년 2월, 노르웨이 정부는 확산탄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으며 특히 아프카니스탄에 파병된 자국 군대의 확산탄 사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출되기 전까지 확산탄 사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2008년 2월에 밝혔다. 마찬가지로 2008년 2월에 불가리아 정부는 “민간인에게 용인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확산탄의 사용, 생산, 이전, 비축을 규제하는 국제적인 규약이 발효될 때까지” 자국의 확산탄 사용에 대해 일방적 중단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6월에는 스페인 정부가 확산탄 사용과 생산, 이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확산탄금지협약이 채택되고 발효되면서 협약에 참여한 국가들 모두가 협약의 의무에 따라 즉각 확산탄 사용을 중단했다.

확산탄 사용 국가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로 지금까지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때 40개 이상의 국가와 분쟁지역에서 확산탄이 사용되었다.¹⁵⁾ 이 40개의 지역에는 그레나다, 그루지야, 남수단, 라오스, 러시아(체첸), 레바논, 리비아,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베트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수단,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예멘, 우간다,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잠비아, 차드, 캄보디아,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등 36개의 국가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서사하라 지역, 체첸, 코소보, 포클랜드제도/말비나스 등 4개의 분쟁지역이 있다.

최소 19개국 이상의 정부군이 확산탄을 사용한 바 있다.

15) 현재 28개 국가가 사용된 확산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중 16개 국가가 확산탄금지협약을 비준했거나 조인했다. 다른 12개 국가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 외 나머지 국가들은 현재 더 이상 확산탄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확산탄을 사용한 국가와 사용된 지역]

사용 국가	사용된 지역
그루지야	그루지야, 아브하지야(아마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네덜란드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코소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러시아	그루지야, 아프가니스탄(소련 시기), 체첸
리비아	리비아, 차드
모로코	모리타니, 서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
미국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코소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그레나다, 라오스, 레바논, 리비아, 베트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예멘, 이라크, 이란, 캄보디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과거에 사용했으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음
수단	남수단, 수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영국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코소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포클랜드제도/말비나스,
이라크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유고슬라비아 연방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코소보, 크로아티아
콜롬비아	콜롬비아
태국	캄보디아
프랑스	이라크, 차드, 쿠웨이트

나고르노-카라바흐, 모잠비크,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콩

고민주공화국, 타지키스탄 등에서처럼 어떤 경우에는 어느 분쟁집단이 확산탄을 사용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게다가 확산탄은 비단 국가의 군대뿐만 아니라 비국가 무장그룹들에 의해서도 사용되어 왔다. 예컨대 아프가니스탄의 북부동맹군은 아프가니스탄에, 세르비아 민병대는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확산탄을 사용한 바 있다.

협약이 채택된 이후로 확산탄이 사용된 것은, 2008년 러시아와 그루지야 간의 분쟁, 2009년 미국의 예멘 공격, 2011년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분쟁, 2011년 리비아 정부군의 공격 때였다.

지난 2008년 8월 남오세티아 지역에서 발발한 러시아와 그루지야 간의 분쟁 때 양국 모두 확산탄을 사용했으며 최소 70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러시아는 공중투하용 확산탄과 지상발사용 확산탄을 남오세티아의 고리-츠힌발리 회랑 남쪽의 주 경계에 있는 9개 마을과 그 인근에 사용했다. 그루지야 군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한, 유도장치가 없는 지대지 로켓 Mk-4 160mm에 M85 소폭탄을 장착하여 발사하였다.¹⁶⁾ 이 확산탄들은 최소 5군데 이상의 마을과 그 인근에 투하되었다.

지난 2009년 12월 17일에는 미국이 예멘에 있는 알카에다 훈련캠프에 공격하기 위해 166개의 BLU-97 소폭탄이 들어있는 TLAM-D 크루즈 미사일 1개 이상을 사용한 것 같다고 국제앰네스티는 2010년 6월에 보고했다.

지난 2011년 2월에는 태국이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 중에 M42, M46, M85 소폭탄이 들어 있는 DPICM(이중목적고폭탄, 이중목적개량재래식탄)

16) 당시 그루지야 국방장관은 그루지야 군이 13대의 Mk-4 로켓으로 24차례에 걸쳐 일제히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로켓들에서 발사된 M85 소폭탄은 이론상 3만 2448개이다. (“몇 가지 사실들”, 그루지야 국방부 분석과장 데이비드 나다이가 보낸 이메일의 첨부파일, 2008년 11월 18일.)

포발사체로 캄보디아의 프레이비히어(Preah Vihear) 사원 인근을 공격했다. 태국은 처음에는 확산탄 사용을 부인했으나 나중 DPICM을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그것이 확산탄의 종류인 것은 부인했다. 2011년 6월에 태국은 이 분쟁에 대해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1년 4월에는 리비아의 카다피 정부군이 리비아의 도시 미스라타의 거주지역을 21개의 이중목적 소폭탄이 들어 있는 MAT-120 박격포로 공격했다. 리비아 정부 대변인인 무사 이브라힘은 확산탄 사용을 부인했다.

확산탄이 사용되는 범위는 분쟁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규모로 확산탄이 사용된 것은 미국이 1965~75년에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사용했을 때이다. 한 예로, 당시 라오스에는 2억 6천만 개가 넘는 확산탄 소폭탄들이 전 영토에 걸쳐 투하되었고 몇몇 분석들은 이때 떨어진 확산탄 중 약 8000만 개에 달하는 소폭탄들이 폭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확산탄들에 의한 오염으로 지금까지 수천 명이 넘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오늘날까지도 희생자가 생겨나고 있다. 또한 이 확산탄들은 라오스의 발전과 재건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확한 수치로 밝혀진 적은 없지만 구소련이 1979~89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한 확산탄도 이와 거의 비슷하게 엄청난 양이었다.

상대적으로 좀 더 짧은 시기의 분쟁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이라크 전쟁(1991년과 2003년), 레바논 전쟁(2006년)에서도 수백만 개의 소폭탄이 들어 있는 확산탄이 다량으로 사용되었다. 1991년에 발발한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 프랑스, 영국은 약 2000만 개의 소폭탄이 들어 있는 확산탄 6만 1000개를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투하했다. 이때 지상발사용 포와 로켓시스템으로 발사된 확산탄 수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3000만 개 이상의 DPICM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영국이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1만 3000개에 달하는 확산탄을 사용했고, 이 확산탄에는 약 180만~200만 개의 소폭탄이 들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을 침공하여 불과 며칠 동안에 무려 400만 개 이상의 확산탄을 사용했다.

그밖에 비교적 제한된 양의 확산탄이 사용되었던 사례들이 있다. 예컨대, 1983년 11월 있었던 그레나다 침공 때 미 해군 항공기는 긴밀한 공중 지원 작전에서 21개의 Mk.-20 Rockeye(록아이) 확산탄을 투하했다. 나이지리아 군은 서아프리카평화유지군(ECOMOG)을 운용하면서 1997년 시에라리온에 소량의 확산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한편, 확산탄금지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 중 일부는 향후 발생 가능한 확산탄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8년 6월에 나온 미국의 확산탄 정책에는 2018년까지 불발탄 비율이 1%가 넘는 확산탄(극소수의 미국 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가 포함된다)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고위급 지휘관인 “전투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¹⁷⁾ 미국은 또한 2018년 이후에는 불발률 1%를 넘기는 확산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¹⁸⁾

루마니아 정부는 “자국 국방 정책에 따라 적어도 자국 영토 내”에서는 확산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폴란드 국방부의 한 관료는 폴란드는 확산탄을 방어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자국 영토 바깥에서 확산탄을 사용하

17) 전투사령관은 지리적 구분 혹은 각 군의 구분에 따라 존재하는 최고사령관을 말한다. 예전에는 총지휘관(commander-in-chief)이라고 불렸다. 현재 “센서 기폭장치 장착 무기(Sensor Fuzed Weapons)”만이 이 안정성 기준(불발률 1% 미만)을 충족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전체 확산탄 중 1%밖에 되지 않는다.

18)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는 많은 국가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 “불발률 기준”을 확산탄 사용 제한에 적용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불발률 기준으로는 확산탄의 문제 중 하나인 피해 범위의 무차별성을 다루기 힘들며 또한 불발률이라는 것 자체가 실전에서는 실험 때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확산탄 사용 연혁]

시기	지역	알려진 내용
1939~ 1945	구 소련, 리비아, 몰타, 영국, 이탈리아, 팔라우 등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적대국 사이에 확산탄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무기를 사용했다.
1943	구 소련	독일군은 러시아 쿠르스크(Kursk) 핵심부에 SD-1과 SD-2 나비폭탄을 사용했다. 소련군이 독일 기갑부대를 상대로 공중투하용 확산탄을 사용했다.
1943	영국	독일 항공기가 1000개 이상의 SD-2 나비폭탄을 영국 그림즈비(Grimbsby) 항구도시에 투하했다.
1965~ 1975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핸디캡인터내셔널의 미국폭탄자료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1969~73년에 2600만 개의 소폭탄이 들어 있는 8만 개 이상의 확산탄을 캄보디아에 투하했다. 1965~73년에는 최소 2억 6000만 개 이상의 소폭탄이 들어 있는 41만 4000개 이상의 확산탄을 라오스에 투하했다. 1965~75년에는 9700만 개에 달하는 소폭탄이 들어 있는 29만 6000개의 확산탄을 베트남에 투하했다.
1970년대	잠비아	공중투하용 폭탄에서 나온 불발 확산탄을 포함해 확산탄 파편이 치쿰비(Chikumbi)와 상옹부(Shang'ombo)에서 발견되었다.
1973	시리아	이스라엘이 다마스쿠스 인근 비국가 무장그룹 훈련캠프에 확산탄을 투하했다.
1975~ 1988	서사하라, 모리타니	모로코 군이 서사하라 비국가 무장그룹을 상대로 포격용 확산탄과 공중투하용 확산탄을 사용했다. 또한 서사하라에서 사용된 같은 유형의 확산탄이 모리타니에서 발견되었다.
1978	레바논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확산탄을 사용했다.
1979~ 1989	아프가니스탄	소련군이 공중투하용 확산탄과 로켓탄발사용 확산탄을 사용했다. 비국가 무장그룹들 역시 소규모

		모이긴 하나 로켓탄발사용용 확산탄을 사용하였다.
1982	레바논	이스라엘이 시리아 군과 레바논 내의 비국가 무장그룹들을 상대로 확산탄을 사용했다.
1982	포클랜드제도/ 말비나스	영국군이 총 1만 5729개의 소폭탄이 든 BL-755 확산탄 107개를 투하했다.
1983	그레나다	미 해군의 항공기가 긴밀한 공중 지원 작전에서 Rockeye 확산탄 21개를 투하했다.
1983	레바논	미 해군의 항공기가 레바논 베이루트 인근에 있던 시리아 공군부대를 상대로 12개의 CBU-59와 28개의 Rockeye 폭탄을 투하했다.
1984~ 1988	이라크, 이란	이라크는 1984년에 처음 공중투하용 확산탄을 사용했다고 보고되었다. 이라크는 전쟁 후반에 Ababil-50 지대지 로켓을 사용했다.
1986	리비아	미국 해군 항공기가 3월 25일 시드라만에 있는 리비아 선박을 Mk-20 Rockeye 확산탄으로 공격했다. 4월 14~15일에는 60개의 Rockeye 폭탄을 베니나 비행장에 투하했다.
1986~ 1987	차드	프랑스 항공기가 와디 돔(Wadi Doum)에 있는 리비아 공군 비행장에 확산탄을 투하했다. 리비아 군 역시 AO-1Sch과 PTAB-2.5 확산탄 소폭탄을 사용했다.
1988	이란	미국 해군 항공기가 사마귀작전 중에 Mk-20 Rockeye 폭탄으로 이란혁명수비군의 고속정과 이란 해군 함정을 공격했다.
1991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군과 미군이 카프지(Khafji) 전투에서 이라크 군을 상대로 포발사용 확산탄과 공중투하용 확산탄을 사용했다.
1991	이라크, 쿠웨이트	미국, 프랑스, 영국군이 약 2000만 개의 소폭탄이 들어 있는 6만 1000개의 확산탄을 투하했다. 지상발사용 포와 로켓시스템으로 발사된 확산탄의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쟁에서 최소

		3000만 개 이상의 DPICM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2~ 1994	앙골라	PTAB(대전차용 항공미사일)의 소폭탄들이 많은 곳에서 발견되었다.
1992~ 1994	나고르노-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소폭탄에 의한 오염지역이 최소 162곳 이상 발견되었다. 지뢰제거작업에서 확인된 소폭탄에는 PTAB-1, ShO AB-0.5, AO-2.5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와 인접한 아제르바이잔 점령지에서도 역시 확산탄으로 인한 오염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들이 있다.
1992~ 199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유고슬라비아 군과 비국가 무장그룹이 내전 기간 중에 확산탄을 사용했다. 나토 항공기가 두 개의 CBU-87 폭탄을 투하했다.
1992~ 1997	타지키스탄	라쉬(Rasht) 계곡의 광(Gharm) 마을에서 ShO AB와 AO-2.5RT 소폭탄들이 발견되었다. 이 확산탄들은 내전 기간 중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누가 사용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1994~ 1996	체첸	러시아 군이 민병대들을 상대로 확산탄을 사용했다.
1995	크로아티아	1995년 5월 2~3일, 비국가 무장그룹이 자그레브(Zagreb) 시를 공격하면서 Orkan M-87 다연장 로켓발사기를 사용했다. 게다가 크로아티아 정부는 세르비아 군대가 쿠파 강(Kupa)을 따라 시삭(Sisak)과 쿠티나(Kutina)에 BL-755 폭탄을 투하했다고 주장했다.
1996~ 1999	수단	수단 정부군이 칠레산 PM-1 소폭탄이 들어 있는 공중투하용 확산탄을 수단 남부에 사용했다.
1997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의 서아프리카평화유지군이 BLG-66 Beluga(벨루가) 폭탄을 케네마(Kenema) 마을 동부에 사용했다.
1988	아프가니스탄, 수단	미국 함정과 잠수함이 8월에 166개의 BLU-97 소폭탄이 들어있는 TLAM-D Block 3 크루즈 미

		사일로 아프가니스탄 비국가 무장그룹의 훈련캠프와 수단 하르툼의 공장을 공격했다.
1998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양국이 서로 공습용 확산탄 공격을 벌였다. 에티오피아는 아스마라 공항을 공격했고 에리트레아는 메켈레 공항을 공격했다. 에티오피아는 또한 BL-755 폭탄을 에리트레아의 가쉬-바르카(Gash-Barka) 지역에 투하했다.
1998~1999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군이 접경분쟁지역에서 로켓탄발 사용 확산탄을 사용했다. 그리고 나토군이 6개의 공습용 확산탄 공격을 이행했다.
1998~2003	콩고민주공화국	카발로(Kabalo) 영토에 있는 카수(Kasu) 마을에 BL-755가 사용되었으나 누가 사용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1999	유고슬라비아	미국, 영국, 네덜란드 군이 29만 5000개의 소폭탄이 들어 있는 1765개의 확산탄을 코소보와 몬테네그로, 세르비아에 투하했다.
2001~2002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24만 8056개의 소폭탄이 들어 있는 1228개의 확산탄을 투하했다.
알 수 없음	우간다	RBK-250/275 폭탄과 AO-1Sch 소폭탄이 굴루(Gulu) 북부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2003	이라크	미군과 영국군이 3주에 걸친 주요 전투 기간 동안에 180만~200만 개의 소폭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만 3000개가량의 확산탄을 사용했다.
2006	레바논	이스라엘 군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지상발사용 확산탄과 공중투하용 확산탄을 사용했다. 유엔은 이때 이스라엘이 400만 개에 이르는 소폭탄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6	이스라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100개가 넘는 중국산 Type-81 122mm 확산탄 로켓을 사용했다.

2008	그루지야	러시아와 그루지야 양국의 군대가 모두 2008년 8월에 발발한 전쟁에서 확산탄을 사용했다. 지뢰 제거작업으로 발견된 소폭탄은 공중투하용 AO-2.5와 로켓탄발사용 9N210과 M85 등이 있었다.
2009	예멘	미국이 예멘의 훈련캠프에 166개의 BLU-97 소폭탄이 들어있는 TLAM-D 크루즈 미사일 1개 이상을 사용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보고했다.
2011	캄보디아	태국 군대가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 중에 프레아비히어 사원 인근을 포발사체로 공격했다.
2011	리비아	리비아의 카다피 정부군이 리비아의 도시 미스라타의 거주지역을 MAT-120 박격포로 공격했다.

확산탄 생산 국가

총 34개 국가가 200종류 이상의 확산탄을 개발하거나 생산해 왔다.¹⁹⁾ 이 중 16개의 국가가 모든 확산탄 생산을 중단하는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했다(비준국 10개, 서명국 6개).²⁰⁾ 확산탄을 생산해 왔던 나머지 18개

19) 새로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자 목록은 변화해 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02년에 확산탄을 생산해 왔거나 생산했던 나라는 총 33개국으로 확인했다. (HRW, “CCW 대표부에 관한 보고서: 폭발성 폭탄에 관한 전체 개괄,” 2002년 5월 20일.) 불가리아와 캐나다는 이 목록에서 삭제되었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일본, 호주가 추가되었다.

20) 호주는 1970~80년대 실험 목적으로 확산탄을 제조했다고 말해 왔다. 벨기에의 PRB(공공정책조사위원회)는 1990년 이전에 확산탄을 생산했다고 말했고, FZ는 2006년 확산탄 금지법 통과와 더불어 새 로켓시스템 생산을 중단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2007년에 11년 동안 확산탄을 생산했지만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칠레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고 2007년에 말했다. 프랑스는 1992년 이래로 생산

비서명국 중 17개국은 지금까지도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아르헨티나는 생산을 중단했다).

확산탄을 생산을 중단한 비준·서명국 (16개)	확산탄을 생산하는 비서명국 (17개)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영국,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칠레, 크로아티아, 프랑스, 호주	그리스, 러시아, 루마니아, 미국, 북한, 브라질,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미국, 중국, 터키, 파키스탄, 폴란드, 한국(남한),

서명국들 중 일부는 몇 년 전부터 생산을 중단했다.

비서명국들 중 아르헨티나는 155mm 포격용 발사체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전면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중단되었으며 발사체는 군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이 발사체에는 자기파괴 기능이 있는 DPICM 소폭탄이 들어 있었다. 세르비아는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이 해체된 후 확산탄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2009년 2월에 휴먼라이츠워치에 알렸다. 루마니아와 터키는 생산을 중단했다고 말하지만 불확실하다.

우리는 비축의 용이함을 위해 소폭탄 및 수송용 무기를 적재, 조립, 포장하는 행위를 확산탄 생산으로 간주한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 원 제조업체가 인도한 구성 형태를 개량하는 것도 역시 생산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몇몇 국가들은 확산탄을 개발해서 실험까지 했지만 생산 단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아르헨티나의 경우에 덧붙여, 호주는 1970~80년대에 Karinga(카링가)라고 불리는 확산탄을 개발, 제작, 실험했으나 생산

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독일은 2005년에 생산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독일 기업 Eurometaal NV는 2002년에 생산을 중단했다. 스위스 당국자는 2003년과 2004년 마지막 분기가 생산 종료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라크는 2003년 이후 생산 시설을 상실했다.

의 단계에까지 이르지지는 않았다. 유사한 예로 벨기에에서도 Mecar(메카) SA라는 기업이 소폭탄이 들어 있는 박격포탄을 한때 개발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생산의 단계에 이르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벨기에의 또 다른 기업 포르주 드 제이브뤼헤(FZ, Forges de Zeebrugge) 역시 “1980년대에 자기파괴 기능이 없는 소폭탄 9개가 들어 있는 로켓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 있으나 시제품(프로토타입) 이상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확산탄 생산

2009년 현재, 17개국이 일정 수위의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다. 확산탄은 여전히 국제 무기시장에 공개적으로 등재 가능한 품목이고 몇몇 무기 박람회에서 전시되기도 한다. 아래는 현재 확산탄 생산국, 관련 기업들, 현재 생산 중이라고 여겨지는 확산탄의 종류에 대한 목록이다.

국가	기업	종류
그리스	Hellenic Defence System S.A. (EBO-PYRKAL) (헬레닉 디펜스 시스템 S.A. EBO-피르칼)	GRM-49 155mm 포격용 발사체(두 가지 버전), GRM20 107mm 박격포탄 발사체
	Bazalt State Research and Production Enterprise (바잘트 국립연구생산 터프라이즈)	다양한 폭탄
러시아	Mechanical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기계공학연구소)	120mm, 152mm, 203mm 포격용 발사체
	Splav 국립연구생산 엔터프라이즈 (스플라프)	122mm, 220mm, 300mm 로켓
루마니아	Aerotech SA (항공기술 SA)	GAA-001 소폭탄
	Romarm (롬암)	CG-540, CG-540 ER 152mm 발사체

미국	Lockheed Martin (로키드마틴)	M30 GMLRS 227mm 로켓
	L3 Communications (L3 커뮤니케이션즈)	M101 소폭탄 자기파괴 장치(퓨즈)
	Textron Systems (텍스트론 시스템즈)	CBU-97/CBU105 센서 기폭장치 장착 무기
북한	알려져 있지 않음	122mm, 170mm, 240mm 로켓
브라질	Ares Aeroespacial e Defesa Ltda (아레스 항공우주방위산업)	FZ-100 70mm 로켓
	Avibras Aeroespacial SA (아브리브라스 항공우주 SA)	ASTROS(아스트로스) 로켓
	Target Engenharia Industries (타르젯 엔지니어리아)	BLG-120, BLG-252 폭탄
슬로바키아	Konstrukta Defence SA (콘스트루크타)	152mm 포격용 발사체, AGAT 122mm 로켓
싱가포르	Advanced Material Engineering Pte Ltd. (선진재료공학 회사)	155mm 발사체
이란	알려져 있지 않음	Shahab(사하브)-2 미사일
이스라엘	Israel Military Industry (이스라엘군사산업)	다양한 폭탄, 대포 발사체, 로켓
이집트	Helipolis Company for Chemical Industry (헬리폴리스 화학산업)	122mm, 130mm 포격용 발사체
	SAKR Factory for Developed Industry (사크르공장)	SAKR-18, ASKR-36 122mm 로켓
인도	Khamaria Ordnance Factory (카마리아군수공장)	130mm, 155mm 포격용 발사체
중국	China Northern Industries (NORINCO, 중국북방공업)	다양한 폭탄, 포격용 발사체, 로켓
	Sichuan Aerospace Industry Corporation (쓰촨항공우주산업)	WS-1, WS-1B, WS-1E 302mm, WS-2 320mm 로켓

터키	Makina ve Kimya Endustrisi Kurumu (MKEK) (마키나 베 키미야 엔듀스트리시 쿠룸)	M396 155mm 발사체
	Roketsan (로케트산)	TRK-122 122mm 로켓
파키스탄	Pakistan Ordnance Factories (파키스탄군수공장, POF)	K-310, M483A1 155mm 포격용 발사체
폴란드	Dezamet	ZK-300 Kisajno, LBKas-250 폭탄, 98mm 박격포 발사체, 122mm, 152mm 대포 발사체
	Tlocznia Metali Pressta Spolka Akcynjna	122mm 로켓
한국 (남한)	한화	M261 MPSM 70mm 로켓, KCBU-58B 폭탄
	풍산	K308 DP-ICM TP, K310 DP-ICM B/B 155mm 포격용 발사체

많은 국가들이 국외 기업들에게 확산탄 생산권을 허가했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2004년 11월 한국의 기업인 풍산이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군수공장(Pakistan Ordnance Factories)과 함께 K310 155mm 사거리 연장형(항력 감소장치, base bleed) DPICM 발사체를 공동생산하기로 합의했다. 탄약은 주로 파키스탄 군을 위해 생산하긴 하지만, 전하는 바에 따르면 두 기업은 발사체 수출을 위해 공동마케팅도 벌일 것이라고 한다. 이스라엘군사산업 (Israel Military Industry)의 경우는 미국(ATK, Alliant Techsystem, 알리언트 테크시스템), 인도(Indian Ordnance Factory), 루마니아(Romarm), 터키(MKEK, Roketsan)의 회사들과 M85 DPICM 소폭탄 생산 계약을 맺었다.

현재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들 중 최소한 3개국은 소폭탄에 대한 신뢰도 기준을 설정했다. 2001년에 미국은 2005회계년도 이후에

생산이 결정된 모든 소폭탄에 대해 1% 미만의 불발률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도입했다.²¹⁾ 폴란드 국방부는 2005년에 “구매한 소폭탄의 불발률이 2.5% 미만이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²²⁾ 한국은 2008년에 자기파괴 기능이 있고 1% 이하의 불발률을 가진 확산탄만을 획득할 것이라는 지침을 발표했다.²³⁾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

벨기에에서 확산탄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NGO 네트워크 플란데런(NGO Network Vlaanderen)은 확산탄 산업 투자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활동은 실제로 몇몇 금융기관의 변화와 이후 법제 개혁을 불러왔다. 2006년 12월에 벨기에 상원의원인 필립 마호(Philippe Mahoux)가 대인지뢰의 생산, 사용 혹은 보유에 대한 직간접적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확산탄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2007년 3월에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벨기에는 확산탄 생산 회사에 대한 투자를 범죄행위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세계에서 확산탄에 대한 투자를 금지시킨 두 번째 나라는 아일랜드인데, 확산탄금지협약 실행에 관한 아일랜드의 법은 생산자에게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 2008년 12월 룩셈부르크는 확산탄이나 폭발성 소폭탄에 대한 개인과

21)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국방부 장관들의 보고서, 주제: 소폭탄 신뢰도에 관한 국방부 정책(U),” 2001년 1월 10일. “양산”하는, 즉 실전배치용 소폭탄은 회계연도 2005년의 첫 분기 이후로 새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M30 GMRLS 로켓 탄 소폭탄에 관해서는 기존 적용에서 제외한다. 2~4% 불발률을 허락한다.

22) 폴란드 국방부가 네덜란드 파스 크리스티(Pax Christi)에 보낸 전언, 2005년 2월 14일. 이 정보는 “문서 내용이 폴란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드시 반영한 것은 아님”이라는 단서를 달고 파스 크리스티에 제공되었다.

23) 한국 정부의 발언, 2008 CCW 당사국회의, 제네바, 2008년 11월 13일. 2008년 동안 한국은 CCW 공식 대표단에 확산탄을 생산하는 한국의 기업인 한화의 대표자를 포함시켰다.

사업체의 “고의적인” 투자를 금지하는 확산탄금지협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공표했다.²⁴⁾

2004년에는 노르웨이 재정경제부가 노르웨이 정부 연금기금의 윤리지침 아래 투자가 제외(금지)되어 있는 비인도적 무기 범주에 확산탄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2005년 6월에는 확산탄 생산에 관련한 8개의 외국 기업들이 연금기금의 투자에서 제외되었다.²⁵⁾ 그 이후 2006년과 2008년에도 또 다른 관련 사업체들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²⁶⁾

2007년 3월 18일, 네덜란드에서는 주요 연금기금이 지뢰와 확산탄 생산에 관련한 기업들에 투자한 것을 고발한 “The Clusterbomb Feeling”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고 이에 시청자들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²⁷⁾

24) 프랑스어 원문 구절 “En connaissance de cause”는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 법안은 또한 협약의 2조와 3조에 따라 “고의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 징역 5년에서 10년형과 벌금 2만 5000유로에서 100만 유로에 처하거나 이들 중 하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산탄금지협약을 찬성하는 입법안이 2008년 12월 3일 오슬로에서 서명을 위해 열린다,” No. 5981, 의원실, 2008-09 일반 회의, 2009년 1월 12일.)

25) 노르웨이 재정경제부, “8개 기업이 추가로 석유기금의 투자에서 제외되었다,” 대언론 공식발표, 2005년 9월 2일, www.regjeringen.no. 그 기업에는 Alliant Techsystem Inc.(알리언트 테크시스템), EADS Co.(European Aeronautic Defence and Space Company, 유럽 항공우주방어및공간), EADS 자금회사 BV, General Dynamics Corporation(제너럴다이나믹스), L3 Communications Holdings Inc.(L3 커뮤니케이션즈홀딩스), Lockheed Martin Corp.(로키드마틴), Raytheon Co.(c), Thales SA(탈레스 SA)가 있다. 5명의 독립된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이 기금의 윤리위원회는 재정경제부에 제외 결정을 조언했다.

26) 한국 기업 풍산은 2006년 12월에, 한화는 2008년 1월에 제외되었다. 다음을 보라. 노르웨이 재정경제부, “한국의 확산탄 생산업체는 우리 정부의 연금기금-글로벌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언론 공식발표, 2006년 12월 6일; 노르웨이 재정경제부, “한 확산탄 생산업체와 두 핵무기 생산업체가 우리 정부의 연금기금-글로벌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언론 공식발표, 2008년 1월 11일.

27)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켄블라(Zembla)의 요스 반 동겐(Jos van Dongen)과 안드레 타크(André Tak)가 제작했다. “The Clusterbomb Feeling,” 2007년 3월, 켄블라, VARA

이로 인해 많은 연금기금들이 확산탄 생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다.

2007년 7월에는 프랑스 보험회사인 악사(Axa)그룹이 확산탄 생산에 관여된 회사들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악사는 “아직 확산탄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사그룹은 특정 종류의 확산탄 금지에 동의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08년 3월 3일, 아일랜드 국가연금준비기금(NPRF, National Pensions Reserve Fund)은 확산탄 생산에 관여한 6개의 세계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8년 4월 4일 뉴질랜드 퇴직연금기금(NZ Superannuation Fund)도 선례를 따랐다.

2008년 6월 1일, 스웨덴 연금기금 AP 7도 확산탄 생산에 관여한 회사들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스웨덴 정부 소유의 7개 연금기금 중 하나인 AP 7은 900억 크로나(약 14조 8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다. 이어서 2008년 9월 다른 4개의 연금기금 역시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몇몇 확산탄금지협약 서명국들은 재정적 투자금지가 협약 하에서 도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멕시코는 “확산탄 생산에 대한 투자 역시 협약에 의해 금지된다”라고 말했다. 레비논도 확산탄 생산이나 이전에 대한 투자나 용자는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불가리아는 “확산탄 생산에 관한 투자 금지가 협약문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확산탄 개발과 생산에 대한 일반적 금지에 비추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네덜란드는 확산탄 생산에 대한 투자는 협약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그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and NPS 방송국, zembla.vara.nl.

확산탄 비축 국가

한때, 86개 나라가 확산탄을 비축해 왔다. 확산탄금지협약이 발효되면서 국가별 새로운 정보들이 공개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수치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었다. 확산탄 비축분의 폐기 의무에 따라 비축하지 않은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비축한 86개 나라 중 37개 국가가 2011년 8월까지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했다.

확산탄을 비축했던 37개 비준국(20개) 및 서명국(17개)은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에콰도르, 영국,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이라크,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크로아티아, 페루,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등이다²⁸⁾. 이들 37개 비준국 및 서명국 중 현재 비축분 폐기를 완료한 국가는 스페인을 비롯해 15개이다. 이 15개국은 더 이상 확산탄 비축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나머지 22개 국가도 폐기가 진행 중이다.

확산탄을 비축했던 비서명국은 48개로 그루지야, 그리스, 러시아, 루마니아, 리비아, 모로코, 몽골, 미국, 바레인, 벨로루시, 북한,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수단, 슬로바키아, 시리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예멘,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중국,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쿠바, 쿠웨이트,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폴란드, 핀란드, 한국 등이다. 비서

28) 호주는 확산탄을 실험 목적으로 개발·생산한 적은 있으나 비축하지는 않았다.

명국 중에는 유일하게 아르헨티나가 비축분을 모두 폐기해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지금은 69개 나라(비준 및 서명국 22개와 비서명국 47개)가 확산탄을 비축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국내 생산 또는 수입을 통해 확산탄을 비축했고 어떤 나라들은 독립을 하면서 확산탄 비축분을 물려받기도 했다.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투르크메니스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 세계 확산탄에 들어있는 소폭탄의 비축분은 수십억 개에 달한다. 그러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 비축 국가들이 자세한 비축분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은 가능하지 않다. 2004년 미국 의회가 보고한 것에 따르면, 미국 한 나라가 보유한 확산탄은 최소 550만 개이며, 여기에 들어있는 소폭탄은 7억 3000만~10억 개에 달한다. 러시아와 중국의 확산탄 비축분도 규모 면에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그 밖의 많은 국가가 수천만 개의 소폭탄이 든 수백만 개의 확산탄을 비축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20개 당사국들이 지금까지 보고한 자국의 비축분의 합계는 1억 6천만 개 소폭탄이 들어있는 확산탄 120만 개가 넘는다. 이 중 16개 당사국은 비축분에 대해 보고했고, 2개 당사국(네덜란드, 불가리아)은 일부만 보고했다. 다른 2개 당사국(기니-비사우, 칠레)은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

[당사국의 확산탄 비축분]

당사국	비축한 확산탄 수	비축한 소폭탄 수
독일	54만 4549개	6730만 5417개
영국	19만 1128개	3875만 8898개
네덜란드(일부)	19만 1500개	2600만여 개
프랑스	3만 4937개	1492만 3621개

벨기에	11만 5210개	1013만 8480개
노르웨이	5만 2190개	308만 7910개
덴마크	4만 2020개	244만 0940개
일본	1만 4011개	202만 9469개
오스트리아	1만 2672개	79만 8336개
불가리아(일부)	9802개	
스페인	4762개	23만 2647개
크로아티아	7380개	19만 0868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429개	14만 3152개
슬로베니아	1080개	5만 2920개
몬테네그로	353개	5만 1891개
몰도바	1385개	2만 7050개
에콰도르	117개	1만 7199개
포르투갈	11개	1617개

서명국 중에서는 4개국이 자국의 비축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 4개국의 비축분 합계는 확산탄 1만 4054개, 소폭탄 133만 개다. 캐나다는 130만 개의 소폭탄이 들어있는 확산탄 1만 3626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콜롬비아는 1만 832개의 소폭탄이 들어있는 확산탄 72개를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고, 체코는 1만 5000개의 소폭탄이 들어있는 확산탄 67개를 비축했다고 알렸다. 헝가리는 4000개의 소폭탄이 들어있는 289개 확산탄 비축분을 모두 폐기했다고 전했다. 일부 다른 서명국들도 비축한 확산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나 수량을 알리지는 않았다.

비서명국 중에서는 모로코,

[비서명국의 확산탄 비축분]

비서명국	비축한 소폭탄 수
미국	7억 3000만 개
바레인	610만 개
요르단	310만 개
모로코	250만 개
이집트	220만 개
사우디아라비아	120만 개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의 정보를 미국 수출공고를 통해 파악했다.

비축된 확산탄의 폐기

2011년 8월 현재, 최소 15개국이 비축된 확산탄 전부를 폐기했다. 여기에는 당사국 8개, 서명국 6개, 비서명국 1개국이 해당된다.

확산탄을 비축해온 20개 당사국 중 12개 국가는 확산탄 폐기했거나 폐기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이 중 8개 당사국(노르웨이,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스페인,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은 비축분 폐기를 이미 완료했고, 4개 당사국(독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영국, 프랑스)은 폐기가 진행 중이다.

벨기에와 오스트리아는 국내 입법을 통해 비축된 확산탄을 폐기하기 위한 최종시한을 지정했었다. 벨기에의 2006년의 금지법안은 3년 이내인 2009년 6월까지 모든 비축분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2008년 12월에 벨기에 외교부 장관은 “비축된 확산탄의 폐기는 계약된 규정에 따라 잘 진행 중이고 내년(2009년) 초에 완료될 것이다”라고 확인했다. 오스트리아의 국내법은 3년 내인 2011년 1월까지 폐기를 요구했고 오스트리아는 2010년에 비축된 확산탄이 전부 폐기했다. 확산탄 폐기에 100만 유로(약 15억 40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

스페인인 2008년 6월 자국의 확산탄 사용 중단에 따라 비축된 확산탄을 2009년 3월 18일에 폐기를 완료했다. 스페인 정부는 비축된 확산탄의 해체와 폐기 비용으로 막삼(Maxam) 산업그룹의 Fabricaciones Extremenas SA(FAEX)사에 490만 유로(약 75억 6000만 원)를 지불했다. 노르웨이는 비축된 확산탄을 폐기하는 절차를 2008년 10월에 시작해 2010년에 모든 확산탄을 폐기했다. 노르웨이는 155mm 확산탄을 폐기하는 데 개당 40유로가 들었다.²⁹⁾

독일은 2001년부터 비축된 확산탄을 폐기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약 58%를 폐기한 상태다. 폐기에 드는 비용은 4000만 유로(약 617억 원)로 추정했다. 영국의 경우 비축분의 60% 이상을 폐기한 상태다.

나머지 당사국들도 비축분을 조사하고 폐기 계획을 세우는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아직 폐기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일본의 경우 확산탄 비축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이 약 200억 엔(약 2713억 원)이라고 추산됐다.

[당사국이 폐기한 확산탄 비축분]

당사국	폐기한 확산탄 수	폐기한 소폭탄 수
독일 (미완료)	30만 6503개	2795만 6812개
영국 (미완료)	9만 6513개	2215만 3148개
벨기에 (완료)	11만 5210개	1013만 8480개
노르웨이 (완료)	5만 2190개	308만 7910개
오스트리아 (완료)	1만 2672개	79만 8336개
스페인 (완료)	4762개	23만 2647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미완료)	12개	7만 8641개
몬테네그로 (완료)	353개	5만 1891개
몰도바 (완료)	1385개	2만 7050개
에콰도르 (완료)	117개	1만 7199개
포르투갈 (완료)	11개	1617개
프랑스 (미완료)	9개	721개

확산탄을 비축해온 17개 서명국 중에서는 6개 국가(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온두라스, 체코, 콜롬비아, 헝가리)가 비축분 폐기를 완료했다. 1개 국가(이라크)는

29) M483 포격용 발사체는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폐기되었다. BL-755 폭탄과 M26 로켓은 2007년에, CRV-7 로켓은 2008년에 폐기가 시작되었다.

이미 오래 전에 비축분이 없는 상태였다. 나머지 10개 서명국들도 비축분을 조사하며 폐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폐기를 시작했다.

비서명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가 확산탄 비축분 전부를 폐기했다. 아르헨티나의 군 당국은 비축해 둔 BLG-66 벨루가(Belouga)와 록아이(Rockeye) 공중투하용 폭탄을 2005년에 폐기했다고 말했다.

일부 비서명국들은 확산탄을 폐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확산탄들은 구식이라고 간주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여겨져 통상적으로 폐기되어 왔던 것들이다. 낡고 유통기한이 지난 확산탄의 폐기는 관례적인 탄약 사업의 일부이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매년 평균 660만 달러(약 76억 6000만 원)를 들여 평균 7000톤의 확산탄을 폐기해 왔다. 2006년에도 적어도 10만 3473톤의 구식 확산탄이 폐기되었다.³⁰⁾

나토정보보급본부(NAMSA)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나토 소속 국가들을 위해 6500만 개 이상의 소폭탄이 들어있는 확산탄을 폐기했다. 한 산업 컨소시엄(제너럴 다이내믹스와 EBV)약은 1년 만에 미국에 시설을 건설, 시험, 가동해 5년 동안(2005~2009) 2300만 개 이상의 소폭탄이 들어있는 3만 8538개의 확산탄 비축분을 폐기했고 94% 가까이 재활용했다.

확산탄 이전 국가

확산탄의 전 지구적 거래의 실상은 공식 정보의 부족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15개국이 50종 이상의 확산탄을 최소 60개국으로 이전시켜 왔다. 확산탄의 이전에 관해 보고된 최근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30) 육군의 연간보고서에 있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육군 회계에서 수집하여 계산했다.

- 미국은 2006년 9월에 아랍에미리트에 DPICM 소폭탄과 함께 M30 GMLRS 로켓 780개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의회에 통보했다.
- 터키는 2006~2007년에 아랍에미리트로 TRK-122 122mm 로켓 3020개를 판매했다.
- 슬로바키아는 2007년에 터키로 AGAT 122mm 로켓 380개를 수출했다고 보고했다.
- 이스라엘은 2007년 그루지야에 GRADLAR 로켓탄발사기 4개를 수출했다. 그루지야는 2008년 8월 러시아와의 분쟁 중에 M85 DPICM 소폭탄 104개가 각각 들어있는 160mm Mk.-4 로켓 발사기를 사용했음을 인정했다.
- 한국은 2008년 3월에 M261 로켓을 파키스탄에 수출했다.³¹⁾
- 미국은 2008년 9월에 CBU-105 공중투하용 센서 기폭장치 장착 무기 510개를 인도에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은 2011년 6월에 CBU-105 D/B 센서 기폭장치 장착 무기 404개를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들 무기가 불발률 1% 미만이라고 보고되었기 때문에 수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 스페인은 협약 가입 이전인 2006년과 2008년에 2만 2155개의 소폭탄이 들어있는 1055개의 MAT-120 확산탄을 리비아에 이전했음을 2011년 6월에 확인해 주었다.
- 태국이 2011년 캄보디아와의 분쟁에서 사용한 NR269와 M85 확산탄은 이전에는 비축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전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누가 언제 제공해 준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31) 영국에 있는 오메가연구재단은 휴먼라이츠워치에 파키스탄 재무부에서 발간한 수입일반목록 요약본 사본을 제공했다. 2008년 3월 19일 카라치 항에 도착한 BBC islander호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배에 실린 물품들은 부산에서 선적되었으며 군비조사단의 단장이 수입업자로 확인되었다.

역사적 기록은 부족하지만, 미국은 신뢰할 수 없고 부정확한 소폭탄 수천만 개가 들어있는 확산탄 수십만 개를 최소 30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모로코, 바레인,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영국, 오만, 온두라스,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태국, 파키스탄, 폴란드, 프랑스, 한국, 호주)에 이전해 왔다.

러시아/구소련제의 확산탄은 33개국(그루지야, 기니, 기니-비사우, 루마니아, 리비아, 몰도바, 몽골, 벨로루시, 북한, 불가리아, 수단, 슬로바키아, 시리아,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앙골라,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예멘, 이집트, 이라크, 이란, 인도, 체코, 카자흐스탄, 쿠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투르크메니스탄, 페루, 폴란드, 헝가리)에 비축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

중국 확산탄의 수출 범위는 전부가 알려지지 않는 않지만, 불발된 중국 제 소폭탄들이 레바논, 수단, 이라크,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바 있다. 헤즈볼라는 2006년에 DPICM 소폭탄이 들어있는 중국산 Type-81 122mm 로켓 100개 이상을 이스라엘 북부에 쏘았다.

확산탄금지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나라 중 최소 두 개 나라, 미국과 싱가포르의 수출일시정지(export moratorium)를 법제화했다. 2007년 12월에 미 의회는 99% 이상의 검사 신뢰도가 없는 확산탄을 1년간 이전을 중지하도록 했다. 이 법률은 또한 미국으로부터 확산탄을 인도받은 어떤 국가든지 명확한 군사 목표물로 지정된 곳을 공격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현재 민간인 지역으로 알려진 곳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요구했다. 이 법은 2009년 3월 11일에 영구 법령이 되었다. 싱가포르는 2008년 11월 26일에 확산탄 수출에 대해 즉각적으로 효력을 갖는 무기한 중단을 강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확산탄에 관한 원조 금지

확산탄금지협약을 진전시키기 위해 오슬로 프로세스 및 더블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협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인 (확산탄에 대한) 군사적 원조 금지와 관련해 이견이 드러났다. 당사국은 협약 1조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도 협약에 금지된 모든 행위에 가담하도록 원조, 장려,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지닌다.

확산탄반대연합은 이 포괄적인 금지 조항을 당사국의 영토, 영공, 영해로 확산탄을 운송 또는 통과시키는 일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당사국의 영토에 비당사국이 확산탄을 비축하는 일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안에 관여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에 동의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³²⁾

또한 여전히 확산탄을 비축하고 있고 사용할 여지가 있는 비당사국과의 공동군사작전에 협약 1조가 미칠 영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³³⁾ 이 같은 “상호운용”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당사국들은 새로운 조항인 21조의 삽입에 동의했다. 확산탄반대연합은 “비당사국과의 관계”에 관한

32) 이 같은 문제들은 거의 동일한 조항이 있는 대인지뢰금지협약에서 10년에 걸친 긴 토론이 지속되어온 주제이다. 압도적 다수의 당사국들은 영토 통과와 외국의 비축이 금지된다는 견해를 표현했다.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연간보고서, 지뢰 감시 보고서, www.icbl.org/lm.

33) 이것은 대인지뢰금지협약의 맥락에서도 많이 논의된 주제이다.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비당사국과의 공동군사작전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당사국들은 다음의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뢰 사용 계획에 참여하는 것, 다른 나라가 지뢰를 사용하도록 훈련하는 것, 다른 나라의 지뢰 사용에서 직접적인 군사 이익을 얻는 것, 지뢰 사용을 허가하는 교전 규칙에 동의하는 것, 다른 나라가 지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것, 다른 나라가 지뢰를 사용하도록 보안을 제공하거나 지뢰를 운송하는 것.

이 새로운 조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고, 확산탄에 관한 원조 금지 조항을 어떻게 공동군사작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모호함을 남겨둔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확산탄반대연합은 “당사국은 비당사국과의 공동군사작전에 참여할 때 이 협약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행위도 의도적 혹은 계획적으로 원조, 장려, 유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산탄반대연합은 당사국들이 이 협약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 협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2009년에 휴먼라이츠워치와 랜드마인액션과 함께 모든 서명국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편지를 발송했다. 답변은 국가들이 작성한 다른 관련 자료들과 함께 아래에 요약했다.

확산탄의 당사국 영토 통과 및 외국의 비축

- 불가리아는 확산탄금지협약 1조의 의미가 외국 확산탄의 국내 비축이 금지된 것처럼 당사국의 영토에서 외국 확산탄을 “통과”시키는 것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 부르키나파소는 비당사국이 당사국의 영토를 통과하여 확산탄을 통과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 에콰도르는 당사국 영토에서 확산탄 통과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레바논은 확산탄의 이전 금지가 “통과” 금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 마다가스카르는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비당사국이 확산탄을 통과시키고 비축하는 것은 조약의 효과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 몰타는 “이 협약으로부터 도출된 책임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당사국으로서 우리는 본국의 영토 안에서 확산탄의 통과나 비축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멕시코는 “특별히 3조의 6·7항에서 언급된 목적에서 수행되는 이러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확산탄의 통과와 보관 모두를 금지한다. 이 규칙은 또한 21조에 나온 것처럼 협약 비당사국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여긴다.

- 네덜란드는 “문제의 제3국에 자산으로 남은 확산탄이 네덜란드의 영토를 지나 통과되는 것은 조약에 의해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외무부는 2009년 3월에, “확산탄금지협약의 국내법을 만들 때 주요 가이드라인으로서” 2003년의 대인지뢰금지법이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했다. 이 법은 이전에 관한 개념 정의에 “통과”를 포함하고 협약에서 금지된 행동을 하는 대인지뢰금지협약 비당사국으로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군이 지원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 영국은 2008년 6월 5일, 비록 협약 아래서는 법률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여길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정신에 일치하여, 영국은 자국 영토에 비축된 모든 확산탄을 찾아서 제거할 것이고 8년 내로 비축분을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잠비아는 당사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공동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영토 내외부에서 확산탄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확산탄금지협약이 발효된 이후에는, 협약의 이 포괄적 금지 조항은 당사국의 영토, 영공, 영해로 확산탄을 운송 또는 통과시키는 일도 금지하는 것이며 또한 당사국의 영토에 비당사국이 확산탄을 비축하는 일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에 독일을 비롯해 최소 27개 국가가 동의하거나 재확인했다. 5개 국가(네덜란드, 영국, 일본, 포르투갈, 호주)가 확산탄의 당사국 영토 통과 및 외국의 비축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군사작전/상호운용

불가리아는 “협약의 21조의 규제를 전적으로 준수할 것이다. … 21조의 4항은 이러한 군사작전의 참가가 당사국에게 협약의 항들에서 금지된 행위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그런 행위들의 목록을 철저하게 포함한다”고 말했다.

에콰도르는 21조가 협약의 핵심적 금지로부터 어떤 일탈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선 안 된다고 경계를 촉구했다.

더블린 협상 동안 아일랜드 대표자는 21조가 협약에 의해 금지된 어떤 행위에 원조할 수 없다는 1조의 의무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 조항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게 호소하는 동안, 희망된 것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협력을 유지할 필요를 인정한다. 이러한 의도는, 권한이 있는 당사국이 이 제한된 목적을 위해 협약에 따른 특정의무를 피하는 것으로 읽혀져서는 안 됨을 21조에 명백히 담고 있다.”

레바논은 협약의 1조는 21조보다 우선하며, 이에 따라 “당사국은 금지법에 따라 고의적인 원조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진술했다.

오슬로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마다가스카르 외교부 장관은 상호운용의 문제가 협약에 조인하려는 국가에게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협약 외부에 있는 나라들이 확산탄의 사용과 이전에 기대지 않도록 권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멕시코는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공동군사작전 중 금지된 활동에 자신이 참가하지 않을 때조차, 금지된 활동의 실행을 위해 고의적으로 원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호운용에 관해 네덜란드는, 당사국들은 다른 나라들이 협약에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확산탄 사용을 단념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당사국과의 군사협력은 여전히 가능하다. 확산탄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 곳에서의 작전을 포함해 … 나토의 작전에서 이 조항의 결과는 현재 명백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확산탄금지협약 발효 이후에는, 최소 20개의 당사국과 서명국이 비당사국과의 공동군사작전에 참여할 때 협약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의도적 혹은 계획적으로 원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협약에서 확산탄에 관한 원조 금지에는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투자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확산탄반대연합은 여기고 있다.

2011년 8월 현재, 최소 19개 국가가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는 협약에서의 원조 금지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5개 국가(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이슬란드, 이탈리아)는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를 국내법으로 제정했으며, 이들 나라의 연금기금은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거나 금지했다. 또한 12개 국가(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의 금융기관은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데 함께하고 있다.

제3부



한국의 확산탄 문제



3부 한국의 확산탄 문제

한국의 확산탄 관련 정부 정책

한국은 주요 확산탄 생산국이자 비축국이며, 확산탄을 수입 및 수출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2007년부터 진행된 오슬로 프로세스와 더블린 협상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2008년 12월 오슬로에서 있었던 조인식에는 참관국으로 참석했다.

한국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당사국이며 2008년 1월 23일에는 이 협약의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제5의정서에 비준했다. 이 의정서는 확산탄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은 최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한국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안에서조차 확산탄에 관한 국제적인 행동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6년 11월, 이 협약의 3차 평가회의에서 한국은 확산탄에 대해 강제력 있는 법적 규범을 협의하기 위한 위임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임 동의에 실패했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전례를 거울삼아 오슬로 프로세스가 제안되었을 때 한국은 갑자기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 확산탄을 논의할 가장 적당한

장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2008년 1월, 한국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을 “활기 넘치고 건강한 제도”라고 묘사했다. 이러한 표현은 “확산탄을 다루는 가장 적절한 제도”라는 뜻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확산탄이 초래하는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이 현재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안에서 확산탄을 규제하는 활동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확산탄이 “적의 공격을 단념시키는 데 있어 … 효과적 인” 합법적 무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은 “확산탄과 관련된 진짜 문제는 무책임하며 무차별적인 확산탄 사용에 있는 것이지 무기체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확산탄에 관한 향후 협정이 확산탄 자체의 금지보다는 확산탄의 사용, 전쟁잔류폭발물의 효과적인 제거를 위한 정보 공유, 피해자 지원, 그리고 현존하는 국제인도법(IH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규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존하는 국제인도법의 보다 엄격한 적용과 이행과 집행이 확산탄에 대한 관심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³⁴⁾ “확산탄에 관한 가장 주요한 관심 중 하나는 분쟁 이후에 … 민간인 희생자 문제다. 이러한 희생자들이 분쟁 시기 민간인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면 분쟁 이후 전쟁잔류폭발물의 제거를 위해, 사용된 확산탄의 수뿐만 아니라 확산탄의 목표 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 공개 절차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³⁵⁾

한국은 기술적인 발전이 확산탄의 충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지만 향후 국제협정에서는 기술적 기준에 기반한 어떠한 가이드라

34) 군축회의 한국대표부 장동희 대사의 발언. 확산탄에 관한 CCW 정부전문가그룹 (GGE) 2008년 첫 회의, 제네바, 2008년 1월 14일.

35) 군축회의 한국대표부 장동희 대사의 발언. 확산탄에 관한 CCW GGE 2008년 3차 회의, 제네바, 2008년 7월 7일.

인도 각 당사국들의 경제적, 기술적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 또한 확산탄에 관한 향후 의정서를 토론할 때 한국은 규제들과 의무들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³⁶⁾

2008년 11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7주간의 회의에도 결국 확산탄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다시 실패했을 때, 한국은 “실망스럽고” 2009년에도 계속 활동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한국은 미래에는 자기파괴 장치가 있고 1% 이하의 불발률을 가진 확산탄을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정부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표명했다.³⁷⁾

2008년 10월 확산탄 반대 국제행동주간 동안 한국의 활동가들은 확산탄금지협약에 한국 정부가 조인할 것을 요구하는 28개 단체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활동가들은 조인을 독려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또한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콘서트를 조직했고 시민조약(People's Treaty)을 위한 서명을 모았다.

12월 오슬로에서의 조인식에서 한국은 참관국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확산탄금지협약의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북한과의 현재 관계를 고려했을 때 우리는 협약에 조인할 수 없다 … 한국은 인권외교에 중요성을 두는 우리의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협약에 조인하지 않는 한국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온 당국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군과 심각한 대치상태에 있는 한국은 확산탄을 단념할 수 없다 … 우리는 세계적인 경향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국가안보는 우리의 즉각적인 추진과제이다.”

36) 군축회의의 한국대표부의 발언. 확산탄에 관한 CCW GGE 2008년 5차 회의, 제네바, 2008년 11월 4일.

37) CCW 9차 당사국회의에서 한국대표부의 발언(제네바, 2008년 11월 13일). 2008년 한 해 동안 한국은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인 한화의 대표자를 CCW 공식 대표단에 포함시켰다.

2009년 10월 11일, 64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한국의 한 당국자는 “한국은 확산탄이 야기하는 인도적 고통을 줄일 필요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확산탄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 ... 그러나 한반도의 독특한 안보 환경 때문에 한국 정부는 모든 확산탄 사용을 금지하는 확산탄금지협약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0년 11월 25일에는 제네바에서 열린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당사국회의에서 “한국은 군에 국제인도법의 기준을 반영해 확산탄의 인도주의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알렸다.

사용, 생산, 이전, 비축

2008년 7월의 발언에 따르면 “한국은 직면한 독특한 안보환경 때문에 현재 자기방어를 위해 확산탄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려는 것은 우리는 확산탄을 실제 전쟁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민간인들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확산탄의 비축은 군 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관리 하에 실시되고 있다.”³⁸⁾

국방부는 “한국은 구형 확산탄의 생산을 중단했다”며 “현재 확산탄의 생산은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자기파괴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³⁹⁾

미국은 2001년 한국과 다연장로켓시스템(MLRs,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에 들어가는 이중목적개량재래식탄(DPICM, dual purpose improved conventional munition, 혹은 이중목적고폭탄)의 소폭탄 생산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생산은 한화와 풍산이 했다.

38) 장동희 대사의 발언. 확산탄에 관한 CCW GGE 2008년 3차 회의, 제네바, 2008년 7월 7일.

39) 2005년 6월 3일, 유엔 한국대표부를 통해 네덜란드 팩스 크리스티로 보내온 한국 국방부의 회신.

풍산은 2006년 12월에, 한화는 2008년 1월에 확산탄 생산과 관련한 노르웨이 석유기금의 윤리지침에 따라 투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화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한화는 확산탄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연장로켓시스템, 2.75인치 다목적소폭탄(Multi-Purpose Submunitions) 로켓들을 생산해 왔고 과거에는 KCBU-58B 또한 생산했다”고 말했다.⁴⁰⁾ KCBU-58B는 한화 홈페이지 생산품 명단에 “항공기 살포식 폭탄”으로 올라가 있다. 2008년 3월, 한화는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양의 M261 다목적소폭탄 로켓(MPSM, 각각은 9개의 M73 소폭탄들을 담고 있다)을 파키스탄에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⁴¹⁾

2006년 노르웨이 정부 연금기금 윤리위원회(Ethical Council of the Norwegian Government Pension Fund-Global)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풍산은 홈페이지를 통해 DP-ICM TP라고 표시된 88개의 소폭탄들을 담고 있는 155mm 발사체와 DP-ICM K305라고 표시된 소폭탄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155mm 발사체를 광고했다. 2009년 4월에 풍산은 그들의 생산품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타입의 155mm 포발사체들을 목록에 올렸다. 88개의 K224 소폭탄이 들어있는 K308 DP-ICM TP와 49개의 K221 소폭탄이 들어있는 K310 DP-ICM B/B.

풍산은 2004년 11월에 파키스탄군수공장과 K310 155mm 사거리 연장형(항력 감소장치) 이중목적개량재래식탄 발사체의 공동생산을 위한

40) MLRS는 지상 로켓시스템이다. 2.75인치 로켓은 보통 헬기에서 발사된다. KCBU-58B는 공중투하용 확산탄이다.

41) 영국에 있는 오메가연구재단은 휴먼라이츠워치에 파키스탄 재무부에서 발간한 수입일반목록 요약본 사본을 제공했다. 2008년 3월 19일 카라치 항에 도착한 BBC islander호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배에 실린 물품들은 부산에서 선적되었으며 군 비조사단의 단장이 수입업자로 확인되었다. 1219톤의 짐은 확산탄 로켓들과 다른 무기들, 그리고 재료들을 포함한다. 다목적소폭탄 로켓들은 보통 헬기에서 발사된다.

면허생산 계약을 맺었다. 우선은 파키스탄생산대를 중목 생산되지만, 두 회사는 또한 수출을 위한 공동마케팅을 펼치기로 했다.

2005년에 한국 국방부는 “높은 불발률을 가진 오래된 확산탄의 비축을 계속했음”을 인정했고 “현재 이러한 보유물들을 개선시킬 계획이 없으며 … 오래된 소폭탄들에 자기파괴 구조를 갖추는 일은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⁴²⁾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확산탄을 수입해 왔다. M26 로켓, M26A1 사거리 연장형 로켓, 그리고 다연장로켓시스템 발사기의 ATACMS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3년부터 1999년 사이에 미국은 393개의 M26A1 사거리 연장형 로켓 포드(pods), 271개의 M26 로켓 포드, 111개의 ATACMS-1 미사일, 111개의 ATACMS 미사일을 제공했다.⁴³⁾ 한국은 또한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DPICM 소폭탄(M483A1, M864, M509A1)이 있는 포발사체들을 비축하고 있다.⁴⁴⁾

2001년에 미국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확산탄을 16개씩 제공했다. CBU-87, CBU-97, CBU-103, CBU-105.⁴⁵⁾ 제인스정보그룹(Jane's Information Group)은 한국을 CBU-87과 록아이 확산탄(Rockeye cluster bomb)의 보유한 국가로 명단에 올렸다.⁴⁶⁾

42) 2005년 6월 3일, 유엔 한국대표부를 통해 네덜란드 팩스 크리스티로 보내온 한국 국방부의 회신.

43) M26 로켓은 각각 644개의 소폭탄(M77)들을 가지고 있으며 포드 하나당 로켓 6발이 장착된다. M26A1 로켓은 각각 518개의 소폭탄을 가지고 있다. ATACMS-1 미사일은 950개의 소폭탄(M74)을 가지고 있다.

44) M483A1은 88개의 소폭탄들을 가지고 있고 M864는 72개의 소폭탄을 가지고 있다.

45) 또한 45개의 AGM-54 JSOW 폭탄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소폭탄이 들어있는 폭탄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46) CBU-87 폭탄에는 202개의 소폭탄이 들어있으며 록아이에는 247개의 소폭탄이 들어있다.

확산탄 생산 기업 한화와 풍산에 투자하는 기관 목록⁴⁷⁾

확산탄을 생산하는 한국의 기업은 한화와 풍산 2곳이다. 세계 8대 확산탄 생산 기업을 선정하는 수치의 전당(Hall of Shame)에는 두 기업 모두 이름이 올라가 있다. 한화(2위)와 풍산(5위)은 세계에서 주요 확산탄 생산 기업이다.

두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의 금융기관 및 연금기금은 총 49개이며 그중 한국의 기관은 26개이다. 한화에는 20개, 풍산에는 18개 국내 기관이 투자하고 있다.

[한화 투자기관 목록]

국내	해외
국민연금공단	Acadian Asset Management (미국)
국민은행	AXA (프랑스)
대우증권	BlackRock (미국)
동부증권	Credit Suisse (스위스)
동양증권	Dimensional Fund Advisors (미국)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Fidelity Group (미국)
메리츠증권	Goldman Sachs (미국)
미래에셋증권	Grantham Mayo Van Otterloo & Co (미국)

47) 이 글은 네트워크 플란데런(벨기에, <http://www.netwerkvlaanderen.be>)과 IKV 팩스 크리스티(네덜란드, <http://www.ikvpaxchristi.nl>)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 “Worldwide Investments in Cluster Munitions - a shared responsibility(확산탄에 대한 세계적 투자 - 공동 책임)” 2011년판에서 한국과 관련한 내용을 추린 것이다. 보고서는 2009년에 발간되어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다. 원문 보고서는 두 단체의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다. - 편집자 주

삼성그룹	Mellon Capital Management (미국)
신한은행	Prudential (영국)
우리투자증권	State Street (미국)
유진투자증권	Vanguard Group (미국)
천안북일교육재단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한양증권	
한화증권	
HI투자증권	
HMC투자증권	
SK증권	

[풍산 투자기관 목록]

국내	해외
부국증권	Allianz (독일)
국민연금공단	AXA (프랑스)
국민은행	Baring Asset Management (영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Batterymarch Financial Management (미국)
대신그룹	BNP Paribas (프랑스)
동양증권	Dimensional Fund Advisors (미국)
미래에셋증권	DJE Kapital (독일)
삼성그룹	Franklin Templeton (미국)
신영증권	Helaba (독일)
신한은행	Mellon Capital Management (미국)
우리투자증권	Nomura (일본)
한국산업은행	State Street (미국)
한국수출입은행	UBS (스위스)
한국투자금융지주	Vanguard Group (미국)

한화증권	Wells Fargo Bank (미국)
비투자증권	Yuanta Financial Holdings (타이완)
KTB자산운용	
SK증권	

1. 확산탄을 제조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주)한화

1952년 화약류 생산 기업(한국화약주식회사)으로 출발한 한화는 화약 산업 생산 및 건설, 무역, 기계, 제약, 금융, 레저 등을 아우르는 세계적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했다. 한화는 1974년에 공식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군수품을 전문으로 생산했다. 군수품 제작 과정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으며 한국 정부가 유일한 고객이다.

한화는 130mm 다연장로켓시스템(MLRS)과 2.75인치 다목적소폭탄(MPSM)을 생산한다. 이는 2007년 노르웨이 정부 연금기금에 답변한 확산탄 제조에 관한 한화의 서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 홈페이지에 130mm 다연장로켓시스템이 “넓은 지역에 걸쳐 집중된 적의 진지에 다량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2.75인치 다목적소폭탄은 “HE MPSM K224 탄두에 사람, 물건, 경량장갑에 사용할 수 있는 9개의 다목적소폭탄이 각각 들어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2011년 1월, 2.75인치 다목적소폭탄은 여전히 한화 웹사이트에 나와 있었지만, 130mm 다연장로켓시스템은 없어졌다. 웹사이트에는 2.75인치 다목적소폭탄을 “헬리콥터와 제트기를 사용하는 공대지 작전을 위한 무기 체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130mm 다연장로켓시스템과 2.75인치 다목적소폭탄뿐만 아니라

2010년 2월에는 소위 항공기용 살포식 폭탄을 웹사이트에 언급했다. 이는 항공기에 부착되며 “밀집된 적의 진지와 지상 부대를 공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2011년 1월, 이것이 확산탄 유형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한화 웹사이트에서는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었다.

노르웨이 연금기금 윤리위원회는 이 무기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지만, “이는 애초에 한화가 연금기금 투자대상으로부터 배제당하게 된 원인이었던 바로 그 범주의 확산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화는 웹사이트에 다목적소폭탄을 마케팅하고 있으므로 투자금지 대상 목록에 올라와 있다. 2008년 5월 이래로 이러한 유형의 소폭탄 생산을 중단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주)풍산

한국의 선도적인 방위산업체인 풍산은 탄약을 개발한다. 한화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 확산탄 생산 기업이다.

풍산은 DPICM TP/K308과 DPICM K310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155mm 포격용 확산탄을 생산해 왔다. 2011년 1월 현재 풍산 홈페이지에는 K310은 더 이상 생산품 목록에 보이지 않지만 K308은 여전히 광고되어 있다.

풍산 홈페이지에는 DPICM TP/K308이 설명되어 있다. 그것은 155mm 포격용 포탄으로, 확산탄인 작은 폭발성 소폭탄인 소형 폭탄 88개가 들어있다.

풍산은 또한 자기파괴 장치가 내장된 49개 소폭탄이 들어있는 발사체인 DPICM K310도 생산했다. 이는 파키스탄군수공장과 공동생산을 한 것이다. 2008년 4월에 처음 제조되었고, 2009년 4월에 155mm K310의 새로운 비활성 부품을 파키스탄으로 수출했다. 이러한 내용은 “155mm K310 Dummy Kit”과 “KM577 Dummy Metallic Fuze”에 관한 선적서류에

자세히 나와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월 풍산으로부터 또 다른 K310 포탄의 비활성 부품을 배송되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한 선적서류에는 155mm K310 TP 발사체의 4개 운반대에 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풍산은 확산탄인 DPICM K310을 생산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투자금지 대상 목록에 올랐다. 게다가 여전히 DPICM TP/K308을 웹사이트에 광고하고 있다. 반면 2008년 5월 이래 이러한 확산탄 생산을 중단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회사는 이와 관련한 설명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2. 한화와 풍산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

국민연금공단 (자산관리)

2009년 12월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한화 주식의 7.14%를 보유 및 운용. 이는 미화 219,800,000달러(약 2420억 원)에 상당함.

2010년 12월 29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풍산 주식의 6.03%를 보유 및 운용. 이는 미화 71,800,000달러(약 792억 원)에 상당함.

국민은행 (투자은행, 자산관리)

2007년 7월, 한화는 12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국민은행의 일부인 한누리투자증권은 그중 미화 10,900,000달러(약 120억 원)를 인수했음. 2008년 3월, 한화는 12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을 이끄는 두 회사 중 하나인 국민은행은 그중 미화 26,300,000달러(약 300억 원)를 인수했음.

2008년 6월, 한화는 미화 30,000,000달러(약 33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을 이끄는 두 회사 중 하나인 국민은행은 그중 미화 3,000,000달러(약 30억 원)를 인수했음.

2008년 6월, 한화는 17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국민은행은 그중 미화 32,700,000달러(약 360억 원)를 인수했음.

2009년 2월, 한화는 26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국민은행은 그중 미화 6,750,000달러(약 74억 원)를 인수했음.

2010년 5월, 한화는 15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국민은행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했음.

2010년 8월, 한화는 10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국민은행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했음.

2011년 2월, 한화는 11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국민은행은 그중 200억 원을 인수했음.

2010년 12월 31일, 국민은행 소유의 KB자산운용은 풍산 주식의 0.16%를 보유 및 운용, 이는 미화 1,900,000달러(약 21억 원)에 상당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출)

2008년 12월, 풍산은 4년 신용편의 30억 원을 확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편의의 전액을 제공했음.

대신그룹 (자산관리)

2010년 12월 31일, 풍산홀딩스 주식의 0.33%를 보유 및 운용. 이는 미화 1,000,000달러(약 11억 원)에 상당함.

대우증권 (투자은행)

2008년 3월, 한화는 12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대우증권은 그중 미화 13,200,000달러(약 150억 원)를 인수했음.

2008년 6월, 한화는 17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대우증권은 그중 미화 16,350,000달러(약 180억 원)를 인수했음.

동부증권 (투자은행)

2009년 2월, 한화는 2600억 원어치의 채권을 발행했고(700억 원은 3년 만기, 1400억 원은 2년 반 만기, 500억 원은 1년 만기 채권,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동부증권은 그중 미화 20,300,000달러(약 220억)를 인수했음.

동양증권 (투자은행, 자산관리)

2010년 2월, 한화는 10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유일한 사무간사회사였던 동양증권은 미화 86,100,000달러(약 950억 원)를 인수했음.

2010년 5월, 한화는 15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동양증권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

2010년 8월, 한화는 10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동양증권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

2010년 9월 30일에, 동양인베스트먼트는 한화에서 발행된 미화 22,300,000달러(약 245억 원)에 상당하는 전체 미지불 채권의 1.3%를 보유 및 운용.

2010년 12월 31일에, 동양인베스트먼트는 풍산에서 발행된 미화 2,700,000달러(약 30억 원)에 상당하는 전체 미지불 채권의 0.89%를 보유 및 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자산관리)

2010년 12월 31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은 한화 주식의 0.16%를 보유 및 운용. 이는 미화 4,900,000달러(약 54억 원)에 상당함.

메리츠종금증권 (투자은행)

2009년 2월, 한화는 26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메리츠종금증권은 그중 미화 13,500,000달러(약 150억 원)를 인수했음.

부국증권 (자산관리)

2010년 12월 31일, 풍산 주식의 0.16%, 풍산홀딩스 주식의 1.3%를 보유 및 운용. 이는 각각 미화 1,900,000달러(약 22억 원), 3,900,000달러(약 43억 원)에 상당함.

미래에셋증권 (투자은행, 자산관리)

2007년 7월, 한화는 12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미래에셋증권은 미화 10,900,000달러(약 120억 원)를 인수했음.

2009년 2월, 한화는 26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미래에셋증권은 그중 미화 6,800,000달러(약 75억 원)를 인수했음.

2010년 6월 30일, 미래에셋증권은 풍산홀딩스 주식의 0.12%를 보유 및 운용. 이는 미화 200,000달러(약 2억 원)에 상당함.

삼성그룹 (투자은행, 자산관리)

2010년 8월, 한화는 10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사무간사회사(bookrunner)였던 삼성증권은 그중 400억 원을 인수했음.

2011년 2월, 한화는 11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삼성증권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했음.

2010년 12월 31일, 삼성투자신탁운용은 한화 주식의 0.17%를 보유 및 운용. 이는 미화 5,300,000달러(약 59억 원)에 상당함.

2010년 7월 30일, 삼성투자신탁운용은 미화 7,800,000달러(약 86억 원) 상당의 풍산 주식 1.03%를 보유 및 운용. 또한 미화 300,000달러(약 3억 원) 상당의 풍산홀딩스 주식의 0.1%를 보유 및 운용.

신영증권 (자산관리)

2010년 12월 31일, 신영증권은 미화 7,000,000달러(약 77억 원) 상당의 풍산 주식 0.59%를 보유 및 운용.

2010년 12월 31일, 신영증권은 미화 10,300,000달러(약 110억 원) 상당의

풍산홀딩스 주식 3.39%를 보유 및 운용.

신한은행 (투자은행)

2007년 5월, 한화는 미화 30,000,000달러(약 33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을 이끈 신한은행은 그중 미화 10,000,000달러(약 110억 원)를 인수했음.

2008년 3월, 한화는 12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신한은행은 그중 미화 13,200,000달러(약 150억 원)를 인수했음.

2009년 2월, 한화는 26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신한은행은 그중 미화 6,800,000달러(약 75억 원)를 인수했음.

2010년 4월, 풍산홀딩스는 7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네 은행 중 하나인 신한은행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했음.

2011년 2월, 한화는 11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신한은행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했음.

우리투자증권 (대출, 투자은행)

2010년 3월, 풍산은 1년 신용편의 100억 원을 확보, 우리은행이 신용편의의 전액을 제공했음.

2008년 3월, 한화는 12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그중 미화 13,200,000달러(약 145억 원)를 인수했음.

2008년 6월, 한화는 17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 중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그중 미화 16,400,000달러(약 180억 원)를 인수했음.

2009년 2월, 한화는 2600억 원어치의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그중 미화 6,800,000달러(약 75억 원)를 인수했음.

2009년 10월, 풍산홀딩스는 5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세 은행 중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그중 미화 8,600,000달러(약 95억 원)를 인수한 것으로 추산됨.

2010년 4월, 풍산홀딩스는 7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네 은행 중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200억 원을 인수했음.

2011년 2월, 한화는 11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했음.

유진투자증권 (투자은행)

2011년 2월, 한화는 11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유진투자증권은 그중 미화 8,900,000달러(약 100억 원)를 인수했음.

천안북일교육재단 (자산관리)

2009년 12월 31일, 한화 주식의 1.83%를 보유 및 운용. 이는 미화 56,300,000달러(약 620억 원)에 상당함.

한국산업은행 (대출)

2008년 8월, 풍산은 5년 신용편의 175억 원 확보, 한국산업은행이 신용편의 전액을 제공했음.

2008년 12월, 풍산은 5년 신용편의 130억 원 확보, 한국산업은행이 신용편의 전액을 제공했음.

2009년 6월, 풍산은 5년 신용편의 25억 원 확보, 한국산업은행이 신용편의 전액을 제공했음.

2009년 9월, 풍산은 5년 신용편의 100억 원 확보, 한국산업은행이 신용편의 전액을 제공했음.

2009년 10월, 풍산은 5년 만기 신용편의 132억 원 확보, 한국산업은행이 신용편의 전액을 제공했음.

2010년 3월, 풍산은 2년 만기 신용편의 925억 원 확보, 한국산업은행이 신용편의 전액을 제공했음.

2007년 5월, 한화는 30,000,000달러(약 33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을 이끈 한국산업은행은 그중 미화 17,000,000달러(약 190억 원)를 인수했음.

2007년 7월, 한화는 12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은 그중 미화 54,400,000달러(약 600억 원)를 인수했음.

2008년 3월, 한화는 12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을 이끈 두 회사 중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은 그중 미화 26,300,000달러(약 290억 원)를 인수했음.

2008년 6월, 한화는 미화 30,000,000달러(약 33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을 이끈 두 회사 중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은 그중 미화 7,000,000달러(약 77억 원)를 인수했음.

2008년 6월, 한화는 17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을 이끈 세 회사 중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은 미화 32,700,000달러(약 360억 원)를 인수했음.

2008년 10월, 풍산은 4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한국산업은행은 채권발행단을 이끈 두 회사 중 하나였음.

2009년 2월, 한화는 2600억 원어치의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을 이끈 두 회사 중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은 미화 27,000,000달러(약 300억 원)를 인수했음.

2009년 10월, 풍산홀딩스는 5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세 은행 중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은 그중 미화 8,600,000달러(약 180억 원)를 인수했음.

2010년 4월, 풍산홀딩스는 7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네 은행 중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했음.

한국수출입은행 (대출)

2007년 5월, 한화는 30,000,000달러(약 36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그중 3,000,000달러(약 33억 원)를 인수했음.

2010년 3월, 풍산은 1년 신용편의(credit facility) 500억 원 확보, 한국수출입은

행이 신용편의 전액을 제공했음.

한국투자금융지주 (투자은행, 자산관리)

2007년 7월, 한화는 12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한국투자증권은 미화 21,800,000달러(약 240억 원)를 인수했음.

2008년 3월, 한화는 12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은 그중 미화 21,800,000달러(약 240억 원)를 인수했음.

2008년 6월, 한화는 17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일부인 한국투자증권은 채권발행단을 이끈 세 회사의 하나이며 그중 미화 32,700,000달러(약 360억 원)를 인수했음.

2009년 2월, 한화는 26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을 이끈 두 회사 중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은 그중 미화 60,750,000달러(약 700억 원)를 인수했음.

2010년 8월, 한화는 10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

2011년 2월, 한화는 11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

2010년 12월 31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일부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화 주식의 0.12%를 보유 및 운용. 이는 미화 3,800,000달러(약 21억 원)에 상당함.

2011년 2월 28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풍산 주식의 7.56%를 보유 및 운용. 이는 미화 77,800,000달러(약 860억 원)에 상당함.

한양증권 (투자은행)

2011년 2월, 한화는 11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양증권은 그중 200억 원을 인수했음.

한화증권 (투자은행, 자산관리)

2008년 3월, 한화는 12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화증권은 그중 13,200,000달러(약 150억 원)를 인수했음.

2008년 6월, 한화는 17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화증권은 그중 미화 13,200,000달러(약 150억 원)를 인수했음.

2009년 2월, 한화는 26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화증권은 그중 미화 27,000,000달러(약 300억 원)를 인수했음.

2010년 5월, 한화는 15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화증권은 그중 600억 원을 인수했음.

2010년 8월, 한화는 10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화증권은 그중 200억 원을 인수했음.

2011년 2월, 한화는 11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화증권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했음.

2010년 2월 프루덴셜자산운용은 한화증권으로 편입, 당해 12월 31일 한화 주식의 0.11%를 보유 및 운용. 이는 미화 3,500,000달러(약 38억 원)에 상당함.

2010년 9월 30일, 한화증권은 한화기업에서 발행한 미지불 채권의 0.2%를 보유 및 운용. 이는 미화 3,400,000달러(약 37억 원)에 상당함.

2010년 12월 31일, 한화증권은 풍산 주식의 0.11%를 보유 및 운용. 이는 미화 1,300,000달러(약 14억 원)에 상당함.

HI투자증권 (투자은행, 자산관리)

2010년 8월, 한화는 10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으며,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HI투자증권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했음.

2011년 2월, 한화는 11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HI투자증권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했음.

HMC투자은행 (투자은행)

2008년 6월, 한화는 17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

의 하나인 HMC투자증권은 그중 미화 16,400,000달러(약 180억 원)를 인수했음.

KTB자산운용 (자산관리)

2010년 12월 31일, KTB자산운용은 풍산 주식의 0.47%를 보유 및 운용. 이는 미화 5,600,000달러(약 62억 원)에 상당함.

SK증권 (투자은행)

2007년 4월, 풍산은 5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SK증권은 채권발행단을 이끌었음.

2008년 10월, 풍산은 4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SK증권은 채권발행단을 이끈 두 회사 중 하나였음.

2009년 10월, 풍산홀딩스는 5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을 이끈 SK증권은 그중 미화 25,000,000달러(약 275억 원)를 인수했음.

2010년 4월, 풍산홀딩스는 7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네 은행 중 하나인 SK증권은 그중 300억 원을 인수했음.

2010년 5월, 한화는 1500억 원어치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발행단의 사무간사회사였던 SK증권은 그중 700억 원을 인수했음.

한국에서의 확산탄 문제⁴⁸⁾

여기에서 필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확산탄⁴⁹⁾의 문제가 외국의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되었을 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공론화조차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현재 한반도는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확산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그 전면 폐기와 금지협약 가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1. 한국의 확산탄

현재 한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확산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필자가 국방부 에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으나 국방부 측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한사코 이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어서 기사화된 각종 자료들과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의 자료들을 통해 국방부가 운용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한 확산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8) 이 글은 2010년 7월 30일에 열린 확산탄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박석진(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토론문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원혜영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무기제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 주최 ‘확산탄(집속탄)금지협약 발효에 즈음한 토론회.’ 이 글의 주석은 글쓴이의 것이다. - 편집자 주

49) 이 무기의 영문 표기는 cluster bomb 또는 cluster munition이다. 직역을 하면 ‘다발폭탄’ 정도로 해석이 될 것인데 다발폭탄, 즉 집속탄(集束彈)이라는 표현이 이 폭탄의 성상을 표현한 것이라면 확산탄(擴散彈)이라는 표현은 이 폭탄의 기능과 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속탄으로 많이 소개되었음에도 굳이 확산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폭탄의 모습보다 그 작용을 설명하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1) 155mm DP-ICM(이중목적개량고폭탄)

포에서 발사하는 곡사포 탄약으로 전차 및 전차 주위의 사람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확산탄이다. 이 유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88개의 소폭탄이 내장된 K308 모델과 49개의 소폭탄이 내장된 K310 모델이 그것이다. K310 모델은, 길이는 804.85(mm)이고 중량은 45~47kg이며 탱크 등 경(輕) 목표물을 파괴할 때는 그 관통력이 100mm 이상, 사람 등 연(軟) 목표물을 살상할 경우에는 소폭탄(자탄) 1발의 살상반경이 7m 이상이다. 최대 사거리는 기존 곡사포에서 발사할 경우 28km, 신형 자주포에서 발사할 경우에는 36km에 이르며 모(母)탄 1발의 살상면적은 5100평방미터(1540평)를 넘는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명칭에 'BB'라는 표기가 붙은 것은 자체 자기파괴 장치가 장착된 것이라 하는데 '155mm B/B DP-ICM K310'의 경우 불발율은 2.8%에 이른다. 자기파괴 장치가 장착된 경우에도 모탄 1발에 약 1.5발의 불발 소폭탄이 나온다는 말이 된다. 특히 이 확산탄은 2006년 당시 이스라엘이 종전 72시간을 앞두고 레바논 민간인 지역에 대량 투하하면서 국제적 문제를 야기시켰던 탄과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풍산이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2010년) 국방예산에 721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주)풍산은 국내 수요에 만족하지 않고 이 확산탄의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2004년 11월 파키스탄의 군수공장과 이 확산탄의 발사체 공동생산 계약을 맺고 공동수출 마케팅을 벌이고 있으며 2008년 3월에는 류진 (주)풍산 회장과 파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파키스탄 군과 진행한 탄두이전식이 보도된 바 있다.

(2) 2.75인치 MPSM(다목적소폭탄)

주로 공격형 헬기에 장착되어 발사되는 공대지 확산탄으로, 국방과학연구

소의 발표를 보면 최근에는 고속항공기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2006년 (주)한화가 독자 개발한 70mm MLRS(다연장로켓시스템)에도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9발의 자탄을 내장하고 있으며 대전차 파괴나 인마살상 역시 가능토록 제작되었으며 올해(2010년) 87억의 구매비용이 국방비에 포함되었다. 미국의 HYDRA 70 체계의 로켓탄과 유사하며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투하한 1만 8000발의 확산탄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알려졌고 평균 불발율은 6% 정도이다. 앞서 언급한 (주)풍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한화 역시 2008년 3월 파키스탄에 M261 다목적 로켓탄을 수출한 것이 확인되었다.

(3) MLRS(다연장로켓시스템)

MLRS는 12발의 로켓탄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무기인데 한국이 이 무기체계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북한의 장사정포 문제가 확산되자 당시 한미연합사는 유사시 이를 일시에 제압할 필요를 제기하며 대화력전 수행본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은 초기의 대화력전 임무를 한국에게 넘기기로 결정하고 이를 한국에 강요하기 시작했다. 이에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판단으로 국방부는 급하게 MLRS 무기체계의 구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며 전량을 미국으로부터 직도입하게 된 것이다.

당시 도입된 M270A1모델의 경우 12발을 모두 발사하는 데 60초가 소요되며, 기본형 로켓탄인 M26의 경우 총 644발의 자탄을 내장하고 있다. 이 자탄은 수류탄 크기로 100mm 이상의 철갑을 관통할 수 있으며 사람과 전차를 모두 공격할 수 있는 이중목적고폭탄(DP-ICM)의 한 종류이다. 이 로켓탄 1발은 축구장 3개 면적을 일시에 초토화시킬 수 있으며 3문의 MLRS로 구성된 1개 포대가 일제 사격할 경우 1분 안에 2만 3184발의

자탄을 목표지역에 쏟아부을 수 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이 이라크에 사용한 바 있다.

미국으로 MLRS를 직도입하면서 국방부는 더욱 가공할 무기를 하나 더 구매하는데 중거리 지대지미사일 ATACMS가 그것이다. ATACMS는 1998년과 2002년 두 번에 걸친 MLRS 도입과정에서 모델을 달리하여 총 222발이 전력화되었다. 이 무기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확산탄으로 평가되는데 자탄이 최대 950발이 내장되며 개량형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300km에 달한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각서⁵⁰⁾를 받아두고 있었는데 개량형 ATACMS의 경우 2001년 이 각서의 개정 직후에 도입된 것이다. 1발당 가격이 13억 원에 달해 그 비용 역시 막대하다.

그 외 초음속 경공격기 A-50에 장착되는 확산탄 MK-20 등 한국군에서 운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여러 종류의 확산탄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2. 확산탄 무기체계의 구비와 막대한 비용의 문제

(1) 다연장로켓시스템(MLRS) 구비 비용

방위사업청의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MLRS 주거래 업체인 한화를 통해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9731억 29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미국으로부터 직도입한 MLRS 구매비용은 빠져 있다.

50) 한미미사일양해각서. 1979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써 준 미사일 개발 제한 보장 각서인데, 한국 정부가 일련의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 대가로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하지도 획득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내역은 다연장 탄약 확보와 탄약 창고의 건설 그리고 정비비 등이 포함되는데 그 연도별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973,129	42,863	45,158	57,622	68,019	92,541	131,584	131,999	123,610	80,635	105,825	93,272

(단위 : 백만원)

MLRS 구비 비용⁵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거리 등 이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는 차기 다연장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013년 까지 총 1546억 8200만원의 예산을 따로 배정해 놓고 있다.

(2) 대포병 탐지레이더 무기체계 구비 비용

현재 국방부는 대포병 탐지레이더로 TPQ36과 37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직접적인 타격 무기는 아니나 MLRS 등의 운용을 직접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므로 확산탄 무기체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추가 구비에 2947억 6100만원, 이의 성능 향상을 위해 219억 1400만원, 도합 총 3166억 75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지난 2007년부터 배정해 오고 있다. 그 연도별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대포병 탐지레이더 구입 비용]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94,761	50	46,418	22,215	28,743	31,586	41,004	59,928	37,048	22,769

(단위 : 백만원)

51) 참고로 한화로부터 구매하는 MLRS 탄두 1발의 가격은 32,432,169원(전력화용탄 기준)이다.

[대포병 탐지레이더 성능 개발 비용]

계	08	09	10	11	12
21,914	284	2,818	8,915	5,911	3,986

(단위 : 백만원)

(3) 확산탄 주요 발사체 구비 비용

확산탄만을 발사하는 무기체계는 아니나 확산탄을 장착하여 발사할 수 있는 무기체계에 투여되는 비용 역시 확산탄 무기체계의 구비 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K9자주포 구비 비용과 와 K55자주포의 성능개량 비용이 그것인데, 자주포는 MLRS와 더불어 대화력전의 주요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K9자주포의 구비비용은 실로 천문학적 액수이다. 1990년에 최초로 소요가 제기되고 1993년 개발이 시작되어 1999~2000년경 전력화되기 시작한 이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8조 782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2010년부터 예산으로 배정되기 시작한 구형인 K55자주포의 성능개량⁵²⁾ 비용 9750억 6700만원을 더하면 그 비용은 우리나라 1년 국방비 총액의 1/3에 육박하는 액수이다.

(4) 전투예비탄으로서의 확산탄 구비 비용

한국군은 현재 한미간의 협정에 의해 미국이 인가한 기준에 맞춰 일정 종류와 일정 수량의 전투예비탄약을 보유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앞서 살펴본 DP-ICM이나 MPSPM이 그것인데 2010년 이 두 탄약에 배정된 예산은 총 808억 원으로 2010년 전투예비탄약 구비 예산 2182억 6600만 원의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2) K55자주포의 성능 개량이 완료되면 현재는 발사할 수 없는 확산탄인 DP-ICM도 발사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확산탄 장착 가능 무기인 공격형 헬기, 전투기, 신형 확산탄의 개발비 등을 더하면 확산탄 관련 무기체계를 구비하기 위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3. 확산탄의 최대 수혜자, 군수산업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연장로켓시스템을 생산하는 (주)한화의 예를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리라고 본다.

1998년 MLRS의 국산화 방침에 따라 (주)한화가 주 계약업체로 선정되자 (주)한화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기술도입 협상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방부와 1조원 규모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2003년 (주)한화는 대전에 227mm 대구경 MLRS 생산 공장을 준공하여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가는데 준공식에 조영길 국방부장관, 김종환 합참의장, 남재준 육참총장 등 당시의 군 수뇌부가 총출동한 것은 군수산업계에서 (주)한화의 위상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 사례다. 이런 방산 부분의 활약에 힘입어 (주)한화의 주가는 지속적 상승세를 유지했고⁵³⁾ 이를 바탕으로 당시 국내 6위의 손해보험회사였던 제일화재 경영권을 인수하고 방산 부분에서 보다 공격적 마케팅에 들어간다. 2006년 독자 개발한 70mm MLRS를 국제 무기시장에 선보이며 요르단에 공급 및 공동개발, 공동마케팅에도 나서게 된다. 현재 (주)한화는 국내 화약산업 시장의 80% 수준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후 MLRS는 물론 미사일 정밀유도무기체계의 개발 그리고 해외의 항공 정밀무기 기업의 인수에도 나설 것이 예상된다.

53) 당시의 관련 기사를 보면 “2002년 7월 31일 국방부와의 MLRS 공급계약 체결을 사측이 발표하자 오전내 보험권에 머물던 (주)한화의 주가가 15% 가까이 급등하여 마치 로켓탄이 솟아오르듯 상한가를 기록하며 상한가 사자 잔량만도 무려 100만 주에 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4. 한국에서의 확산탄 문제와 미국

미국에게는 한반도 역시 주요 확산탄 사용 대상 지역이다. 이는 한국이 미국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확산탄을 수입하는 국가라는 점, 미군 훈련시 확산탄 투하 훈련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예비물자로 8000발이 넘는 확산탄을 저장해 두고 있는 점 등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여기서 미국의 대한반도 전시예비물자(WRSA-K)에 포함되어 있는 확산탄의 문제를 살펴보자. 지난 2008년 11월, 한미 당국은 WRSA-K 52만 5000톤(대부분은 탄약)의 인수 및 매각 협상⁵⁴⁾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은 25만 9000톤의 전쟁예비물자를 인수하였고, 26만 6000톤의 미인수 탄약 중 지뢰와 확산탄의 경우에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철수하되 철수되지 않고 잔존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무상으로 저장해 주기로 하였다. 필자가 26만 6000톤 분량의 미인수탄의 목록과 수량이 적시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대량의 비인도적 탄약(백린탄, 지뢰 등)⁵⁵⁾이 대량 포함되어 있었으며 확산탄만도 최소 8469발⁵⁶⁾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양이면 확산탄의 표준 확산면적을 300평방미터로 환산했을 경우 여의도의 8배가 넘는 지역을 초토화시킬수

54) WRSA-K 협상과 관련하여서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탄약들이 대부분 1970년대를 전후로 한국에 배치된 것이어서 노후탄약으로 인수대상이 아니라는 비판이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2713억 원을 들여 이를 인수하였고, 노후탄약의 폐기 비용과 계속 저장되는 미군 탄약의 미래저장비까지 떠안았다. 이를 통해 미국이 본 이익은 최소 3조원을 넘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5) 백린탄의 경우 201,299발, 지뢰의 경우 979,017발이 확인되었다.

56) 탄약 목록에서 ‘확산탄’이라고 적시된 것만을 더한 수치, 이외 2.75인치 고폭탄이나 ICM탄 등 확산탄일 것으로 추정되는 탄약도 대량 확인되었으나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생략하였다.

있는 양이다. 이렇듯 미국이 국제적으로 불법화된 무기들을 우리나라에 저장해 두고 있는 것이 마치 한국을 자신의 탄약 저장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실례로 미국은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2004년과 2005년 이 전쟁예비물자를 반출해 사용한 사실이 있다.⁵⁷⁾ 이때 반출된 탄약 중에 확산탄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미군은 이라크에 무차별적으로 확산탄을 투하하였고 이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과 어린이가 희생되었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미국 소유의 확산탄의 한국 내 배치가 한국 정부의 국제조약 가입권 등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확산탄 전면 폐기와 금지협약에의 가입에 대한 한국 정부(국방부) 입장의 문제점

필자가 확인한 확산탄 문제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은 미국의 그것과 너무도 닮아 있다. 즉 불발탄 등 확산탄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국방부는 2008년 확산탄의 구매기준으로 불발율이 1%미만이거나 자기파괴 장치 등의 구비를 정한 바 있다. 소위 신형 확산탄의 개발로 확산탄의 문제를 피해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구형 확산탄의 폐기 요구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국방부 스스로 내세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합리성을 상실한 태도이다. 신형 확산탄의 구매기준을 설정한 것은 구형 확산탄의 문제를 인정한 것인데 그러한 구형 확산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CCM(확산탄금지협약)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CCW(특정제래식무

57) 당시 미국 정부는 이 탄약의 과거저장비 명목으로 우리 정부에 4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기금지협약에는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CW는 미국이 중심으로 되어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확산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전력에 손실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논의에 참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국방부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확산탄의 규제라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군축에 해당한다. 군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사력의 제한과 감축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국방부의 입장처럼 전력에 손실이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제한다면 국제 군축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군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군축회의에 임하는 국방부 및 한국 정부의 입장 자체의 변화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국방부는 수차례의 항의서한과 공개질의서에서 일관되게 다른 나라와 다른 우리의 독특한 또는 특수한 안보환경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과 상존하는 전면전의 위험 때문에 확산탄을 완전히 폐기하고 금지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사례로 북한의 장사정포, 화학무기, 핵실험과 최근의 천안함 사건 등을 언급하였다. 국방부의 이런 주장과 관련하여 먼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국방부가 열거하는 독특한 안보환경의 요인들이 바로 한국의 확산탄 보유의 근거로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확산탄을 폐기하고 상호 금지협약에 가입해야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반세기가 넘는 한반도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속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일방의 적대행위의 수위만큼 또 위협적 군사행동의 수위만큼 또 다른 일방의 대응을 불러와 관계의 악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왔다는 것이다. 일례로 2006년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 역시 그러한 경험의 연장선에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본격화된 한국의 확산탄 무기 체계의 증강은 북한을 자극해 더 격렬한 확산탄 군비 경쟁에 남북한을

내몰게 될 것이다. 만약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하고 남북한 할 것 없이 자신이 보유한 무기들을, 특히 확산탄을 무차별 사용한다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레바논 등에서 벌어졌던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고통의 몇 배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국방부와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국민에게 들이대고 있는 국가의 안보라는 것이 단지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많이 보유한다 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총칼로서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국방부와 한국정부에 상기시키며 남북한 상호 군축의 시작으로 확산탄의 폐기와 금지협약에의 가입이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음을 권하는 바이다.

제4부



확산탄금지협약 깊이 읽기



4부 확산탄금지협약 깊이 읽기

확산탄금지협약에 관한 브리핑

확산탄금지협약은 확산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금지하고 잔류폭발물의 제거와 비축분의 폐기를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이다. 협약은 생존자들과 그들의 공동체에 지원을 제공할 것을 각국에 요구하며 기존의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협약은 2008년 12월 3일 오슬로에서 조인식을 가졌으며 2010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이 새로운 협약은 역사적인 성과이다. 이 협약의 강점은 모든 면에서 확산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상에 참여한 나라들은 넓은 예외를 두는 것도, 확산탄 사용의 과도기를 두는 제안도 거부했다. 협약은 8년 내에 비축분을 폐기할 것과 10년 내에 오염지역을 정화할 것을 각 나라에 요구한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의무는 획기적이다. 협약은 확산탄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요구하며 각 나라에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실행할 것을 요청한다.

1. 각국의 핵심 의무에 관한 요약

일반의무 및 적용범위 (1조)

모든 확산탄의 생산, 사용, 비축, 이전은 국제적·비국제적 분쟁 상황을 포함해 모든 상황에서 금지된다. 또한 협약에 금지된 활동에 가담하려는 누군가를 원조, 장려, 유도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개념 정의 (2조)

협약에서는 확산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각각 20킬로그램 미만의 폭발성 소폭탄들을 방출하거나 흩뿌리도록 설계된 재래식 무기와 이러한 폭발성 소폭탄’ 개념 정의는 연기, 불꽃, 유도 방향 전환 전자장치(ECM)를 위해 설계된 소폭탄을 가진 무기들처럼 소폭탄이 들어있지만 확산탄으로 간주되지 않는 무기에 대한 일정한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소폭탄을 가지고 있으나 무차별적인 지역 영향(area effects)을 일으키지 않거나 불발탄의 위험이 없는 무기들은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무기들은 협약에서 규정한 최소 다섯 가지의 기술적 특성을 충족해야만 한다.

비축분 폐기 (3조)

모든 당사국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의 관할권에 있는 확산탄의 모든 비축분을 폐기해야 하나 그 기간은 자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후 8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비축분 폐기를 위해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한 연장 요청이 제출되어야 하며 4년간의 기한 연장이 승인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정화 기술 및 대응책의 개발과 훈련에 필요한 확산탄 및 소폭탄의 “최소량” 보유는 허용하며, 보유 무기들에 관한 상세한 연례보고를 요구한다.

오염지역 정화 (4조)

당사국들은 가능한 한 빨리 확산탄으로 오염된 지역을 정화할 의무를

가 지나 그 기간은 자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후 10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당사국들은 정화 프로그램의 상태와 진행 상황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하며 국가들은 가능한 한 신속히 정화활동을 시작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확산탄반대연합은 확산탄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10년의 마감 기한 전에 오염지역을 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당사국들이 오염지역을 정화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릴 경우 5년의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한 연장은 정확히 필요한 기간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

또한 4조에는 오염지역을 표시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조항과 위험경감 교육을 실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점은, 과거에 다른 당사국의 영토에 확산탄을 사용했던 당사국들은 그 장소와 무기의 종류에 대한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확산탄을 정화하고 파괴하는 일을 돕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 지원 (5조)

이 조항은 확산탄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당사국들에게 보장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전체론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확산탄 피해자들에게 의료, 재활,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도울 의무가 있다. 확산탄 피해자에는 확산탄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게 되는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도 포함된다.

당사국들은 피해자 지원 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국가 행동계획을 개발해야 하며 이 조항과 관련된 모든 일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 내에 담당 부서나 연락관(focal point)을 지정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에서 당사국들은 확산탄 피해자들 및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들과 협의하고 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당사국들은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기존의 체제에 피해자 지원 활동을 통합시켜야 한다.

국제협력과 지원 (6조)

그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모든 당사국들은 확산탄에 의해 영향을 받은 당사국들에게 사회적·경제적 회복을 포함해 확산탄의 제거, 위험 교육, 비축분 폐기, 피해자 지원을 돕기 위한 기술적,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염지역 정화의 의무에 의해 예전에 확산탄을 사용한 적이 있는 당사국들은 그들이 사용했던 확산탄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당사국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이 적극 권장된다.

투명성 조치 (7조)

당사국들은 자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후 180일 이내에 유엔에 보고하고, 그 이후로는 매해 4월 30일 이전에 매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들은 협약 이행의 상태(국내 이행 조치들, 비축된 확산탄과 소폭탄의 종류·수량·기술적 특성, 비축분 폐기 프로그램의 상태 및 진행 상황, 생산 시설의 개조 혹은 해체, 확산탄에 의해 오염된 지역의 규모 및 위치, 확산탄 제거 프로그램의 상태 및 진행 상황, 위험경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 협약의 피해자 지원 조항의 이행과 관련한 상태 및 진행 상황, 확산탄 제거·비축분 폐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할당된 국가 자원의 양, 국제협력 및 지원의 유형·양·대상 등)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의무 준수의 촉진과 해명 (8조)

당사국들은 협약의 이행에 관해 협의·협력하며 그들의 의무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을 동의한다.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과 당사국회의에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을 포함해 의무 준수에 관한 의문들에 해명과 결의를 다루는 과정이 마련된다. 당사국회의에서는 다른 절차나 “의무 준수의 해명을 위한 특정한 체제”를 채택할 수도 있다.

국내 이행 조치 (9조)

당사국들은 형사적 제재를 포함해 협약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모든 법적, 행정적, 여타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있다. 확산탄반대연합은 모든 당사국들에게 포괄적이고 새로운 국내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당사국회의 (11조), 평가회의 (12조) 개정 (13조)

첫 번째 당사국회의는 협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첫 번째 평가회의 때까지 매년 개최되어야 한다. 첫 번째 평가회의는 발효 후 5년째 개최되어야 한다. 만약 당사국들이 협약의 개정을 원한다면 당사국 다수가 개정회의 소집에 관한 요구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인 (15조), 비준 및 가입 (16조), 발효 (17조), 유보 (19조)

아직 조인하지 못한 모든 국가는 뉴욕에 소재한 유엔에서 협약에 조인할 수 있다. 이후 서명국들은 (보통 의회의 승인을 거쳐) 협약을 비준하고 정식으로 유엔 사무국 법률실(treaty@un.org)에 비준서를 기탁한다. 국가들이 비준 혹은 가입하면 협약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유보할 수 없다. (이는 국가들이 특정 조항에 대해 자신의 나라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선언을 정식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협약은 30개국이 비준 절차를 마치면 6개월째 되는 달의 1일에 발효된다. 협약이 발효되면 국가들은 더 이상 서명만 할 수 없고 가입 혹은 동의를 묶어서 해야(기본적으로 조인과 비준의 일괄처리) 한다.

협약 비당사국과의 관계 (21조)

당사국들은 협약의 보편화를 증진시키고 조약 의무들을 비당사국에 통지하며 비당사국이 확산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사국에게

는 금지된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비당사국과 군사협력 및 군사작전을 할 수는 있다.

2. 설명을 필요로 하는 협약의 조항들

협약의 몇몇 조항들은 상반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확산탄반대연합은 당사국들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확산탄의 통과

2조의 ‘이전’의 의미에는 (대인지뢰금지협약과 마찬가지로) 당사국의 영토에서 확산탄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 협약에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 명시적이지 않다. 그러나 1조 1항 (c)의 확산탄 원조 금지, 1조 1항 (b)의 확산탄 이전 금지 조항은 국가 영토를 가로지르거나 통과하는 일을 금지한 것이라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인지뢰금지협약에서 일반적인 해석이다.

국가들은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이전뿐만 아니라 확산탄의 통과도 협약에서 금지된다.

투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1조 1항 (c)의 확산탄 원조 금지 조항은 확산탄 생산자들에 대한 투자도 금지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국가들은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 1조 1항 (c)의 확산탄 원조 금지 조항은 확산탄 생산자에 대한 투자 금지를 포함한다.
- 룩셈부르크, 벨기에, 오스트리아가 이미 그렇게 한 것처럼 투자 금지를 자국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

개념 정의

비록 협약에서는 모든 확산탄을 금지하고 있지만, 2조 2항 (c)는 소폭탄을 가지고 있지만 확산탄의 인도주의적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기들을 “확산탄” 범주에서 제외한다. 허용되기 위해서는 무차별 지역 영향과 불발탄 위험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다섯 가지 기술적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 소폭탄들이 하나의 목표물을 개별적으로 찾아 공격하고, 최소 중량과 최대 개수의 기준을 충족하고, 전자적 자기파괴 구조와 전자적 자기비활성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조 2항 (c)를 모두 충족하는 현존 무기는 독일의 SMArt-155, 프랑스/스웨덴의 BONUS, 그리고 생산이 중단된 미국의 SADARM이 유일하다. 이 세 종류는 개별 목표물을 탐색하는 소폭탄이 두 개 들어 있는 포탄을 사용한다. 이 무기들은 널리 사용되지 않았고 많이 비축되지도 않았다.

2조 2항 (c)의 기술 기준의 특성은 확산탄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무기의 개발을 방지한다는 점이다. 또한 (무차별 지역 영향과 및 불발 소폭탄에 의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배제식 효과 기반의 접근 방식은 미래 기술의 인도주의적 결과를 판단하는 데 가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국가들은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 2조 2항 (c)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어떤 무기도 확산탄과 비슷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2조 2항 (c)의 기술적 특성들은 확산탄에서 제외되는 무기를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해도 무차별 지역 영향 및 불발 폭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2조 2항 (c)의 의도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 향후의 당사국회의에서는 민간인 보호를 위해 이러한 특성들이 적절한지 2조 2항 (c)의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확산탄 보유

탐지·제거·파괴 기술이나 대응책의 개발과 훈련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확산탄과 소폭탄들의 면제와 관련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어떻게 해석할지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보유하는 확산탄들에 관해 국가들이 상세한 보고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국가들은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 3조 6항에서 보유할 수 있는 폭발성 소폭탄들의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은 수백 개 혹은 수천 개 이하여야 하며, 대인지뢰금지협약의 일반적 합의처럼 수만 개여서는 안 된다.
-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확산탄이나 소폭탄들도 예외적인 뿐이며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심지어 현재 확산탄을 비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확산탄을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

상호운용과 외국의 확산탄 비축

21조 3항에는 당사국들의 합동군사작전 동안 확산탄을 사용할 수도 있는 비당사국들과의 관계와 관련해 다소 모호한 표현이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당사국은 … 본 협약의 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에게는 금지된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비당사국과 군사협력 및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조 1항 (c)는 여전히 당사국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활동에 가담하도록 어느 누구에게도 원조, 장려, 유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국가들은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당사국들은 비당사국들과 합동군사작전을 할 때 확산탄의 사용, 이전, 비축을 포함해 이 협약에서 금지하는 어떤 행동도 의도적으로 원조, 장려, 유도해서는 안 된다.
- 당사국들은 그들의 관할 영토에서 비당사국의 확산탄을 비축해서는

안 된다.

- 당사국들은 그들의 관할 영토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확산탄을 가능한 한 빨리 파괴 혹은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대인지뢰금지협약에서 일부 국가들은 외국의 비축분에 관해서도 폐기 시한을 정하였다.
- 비록 외국의 비축분이 당사국의 관할권 아래 있지 않더라도 당사국은 이 협약의 정신과 일치하도록 확산탄 제거를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확산탄금지협약에 대한 12가지 오해와 진실⁵⁸⁾

오해 1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국가안보상 위험하다. 특히 적국이 가입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다.

진실

- 현대의 전쟁에서 확산탄의 유용성은 한정적입니다. 냉전시대의 무기들은 탱크와 부대의 대규모 작전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오늘날의 전투는 확산탄의 인도적 피해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시가지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 확산탄의 사용은 현대군에게 역효과를 가져오곤 합니다. 잔류확산탄은 군사작전을 방해하며 아군과 시민들을 위협에 빠뜨립니다. 확산탄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시민들은 확산탄 사용자에게 적개심을 키울 것입니다.

58) 이 글은 휴먼라이츠워치에서 2009년 4월에 발표한 <Twelve Facts and Fallacies about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를 번역한 것이다. 원문은 <http://www.stopclustermunitions.org/wp/wp-content/uploads/2009/04/hrw-ccm-facts-and-fallacies-4-10-09.pdf> - 편집자 주

- 상당수의 확산탄들은 보존기한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기한이 끝나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게 됩니다. 근접항공지원이나 정밀 유도무기와 같은 확산탄의 대체무기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 확산탄은 방어 효과가 미미한 무기입니다. 남겨지는 다량의 불발탄들이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자국의 영토에 이 폭탄을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이 무기는 이미 악명이 높아 사용한다면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에 국익에 반하게 됩니다. 확산탄 사용으로 감당해야 할 정치적 비용이 상당할 것입니다.
- 오히려 협약에 가입한다면 확산탄의 악명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적국의 확산탄 사용은 가입국에게 도덕적 우위를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국도 확산탄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해 2 일부 주요 생산국, 비축국, 사용국들이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산탄금지협약은 별로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진실

- 확산탄을 생산하고 보유하거나 사용한 국가들 중 적어도 33개국이 협약에 조인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22개 이상의 나토 소속 국가가 조인했고 남아공, 인도네시아, 일본, 콜롬비아도 가입했습니다. 그들의 참여는 주요한 세계적·지역적 군사 세력들이 이 무기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모든 지역에서 세계의 절반 이상이 이 협약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확산탄에 대한 거부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협약의 효과는 심지어 확산탄을 사용하는 비당사국들과 비정부 무장세력에게조차 정치적인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이미 대인지뢰금지

협약의 경우 대인지뢰 사용에 악명을 높이는 효과를 낳은 바 있고, 지금은 상당량의 지뢰를 사용하는 국가는 버마(미얀마)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해 3 확산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면 이 협약에 가입하기 힘들 것이다.

진실

- 이 협약은 당사국에게 그들의 확산탄 비축분을 없애는 데 8년의 기한을 줍니다. 만일 비축분이 너무 많아 이 마감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4년의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인지뢰금지협약은 당사국들에게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인지뢰를 폐기하는 데 연장 없이 단 4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폐기 마감기한 내에 지뢰를 없애지 못한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뢰가 확산탄보다 폐기하기가 더 쉽긴 하지만 확산탄금지협약의 당사국들은 폐기를 완료하는 데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해 4 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확산탄 관련 의정서가 확산탄 주요 사용국과 비축국의 지지를 더 받을 여지가 크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이 의정서 또한 지지해야 한다.

진실

-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의정서는 확산탄금지협약의 목표에 반합니다. 확산탄을 금지시키기보다 단지 조절하기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느슨하기만 한 다른 협약의 존재는 확산탄금지협약의 포괄적인 금지가 만들어 내는 효과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 확산탄에 대한 보다 느슨한 협약의 존재는 각국 정부들에게 더 강한 협약에 참여하는 것을 피할 구실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의정서에 동의함으로써 확산탄의 문제를 적당한 수준에서 다루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 동일한 주제에 관해 더 높은 기준의 협약이 이미 광범위하게 합의된 상황에서 낮은 기준의 차선택을 지지하는 것은 국제법상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 국제법상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비록 협약이 발효되기 전이라 해도 협약의 “목표와 목적”을 지켜야 합니다.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상당수 가입국들은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국가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이 일부 확산탄의 사용을 허용하는 느슨한 조약을 만들어 낸다면 그들이 확산탄금지협약의 “목표와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은 더 강한 수준의 협약인 확산탄금지협약을 지킬 그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오해 5 확산탄금지협약이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과 별개로 협상되었기 때문에 유엔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과 같은 “유엔 협약”이 아니게 된다.

진실

- 유엔의 기구들, 특히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지뢰행동국(UNMAS), 유니세프 등은 협약을 탄생시킨 오슬로 프로세스에 활발하게 참여했습니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일찍이 오슬로 프로세스와 조인식에서 확산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협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 유엔 사무총장이 확산탄금지협약의 서명과 비준과 가입을 관리하며 유엔이 조약의 위임 책임을 집니다. 이런 면에서는 확산탄금지협약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해 6 확산탄금지협약은 모든 종류의 확산탄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진실

- 확산탄금지협약은 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모든 확산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협약에서 확산탄은 소폭탄을 가지며 광범위한 효과와 대량의 불발탄 때문에 인도적 피해를 야기하는 재래식 무기라고 정의됩니다. 협약은 이러한 무기 일반에 대한 포괄적 금지입니다.
- 불꽃, 연기, 꽃불, 채프와 같은 것들을 흩뿌리도록 설계된 일부 무기들은 확산탄과 같은 피해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지 않습니다.
- 한정된 숫자의 소폭탄만을 가지고 다섯 가지의 기술적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일부 무기들은 확산탄이 초래하는 것만큼의 인도적 피해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협상국들이 판단하여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무기들은 확산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단 세 개의 무기(SADARM, BONUS, SMArt-155)만이 다섯 가지의 요구되는 특성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오해 7 협상국들은 그들의 무기고를 보호하기 위해 확산탄금지협약에서 확산탄의 정의를 교묘하게 만들었다.

진실

- 협약은 특정 국가의 확산탄을 제외한 것이 아닙니다. 확산탄의 정의는

정치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무기의 효과에 기초했습니다.

- 협상 과정 중에 국가들은 오슬로 프로세스 동안 일부가 제안한 ‘자기파괴 장치를 갖춘 것’과 같이 계속 확산탄을 사용하고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많은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 극히 소수의 국가들만이 최근 BONUS나 SMar-155를 보유하고 있거나 획득한 상태입니다. 이 무기들의 보유량은 확산탄에 비하면 대단히 적습니다. 또한 최근의 전투에서 사용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최근에 획득한 높은 성능의 확산탄들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확산탄에 들어가는 엄청난 숫자의 소폭탄들을 폐기할 것입니다.

오해 8 “상호운용”이나 비당사국과 합동군사작전을 할 경우를 다룬 21조는 확산탄금지협약을 기본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다.

진실

- 21조는 “당사국의 군대나 국민은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에게는 금지된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비당사국과 군사협력 및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고 부분적으로는 말합니다.
- 휴먼라이츠워치와 확산탄반대연합은 21조가 협약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안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불명확하고 해석상의 여지를 남기며 인도적인 고려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산탄의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1조 1항 (c)에 따라 당사국들은 협약에 의해 금지된 비당사국의 활동을 원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다양한 범주의 원조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21조는 이러한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해석은 확산탄으로부터 초래되는 인도적인 피해를 끝내고자 하는 협약의 목표와 부합합니다.

- 대인지뢰금지협약에서의 경험은 당사국이 군사적 지원에 대한 금지를 위반하지 않고도 비당사국과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인지뢰금지협약의 많은 당사국들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과의 군사작전에 참여해 왔습니다. 합동작전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원조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21조 4항은 허용되지 않는 합동작전 행위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항의 어떠한 항목도 1조에 의해 금지되는 군사적 원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사국들은 금지된 행위를 원조하는 어떠한 고의적 행동도 금지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 21조의 첫 두 항은 협약을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당사국이 다른 국가의 확산탄 사용 중단을 요청하고, 이 협약의 가입을 독려하고, 그들의 동맹국에게 조약의 의무를 알리고, 확산탄금지협약의 규범을 촉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기존의 무기 관련 협약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중요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오해 9 협약은 앞으로 있을 확산탄 사용을 막을 수 있지만 과거에 사용된 확산탄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진실

- 협약의 몇몇 조항들은 분쟁이 끝난 후 발생한 확산탄 오염지역에서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의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 협약은 잔류확산탄을 제거하여 향후 발생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확산탄을 사용한 국가들이 확산탄 제거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4조 4항은 협약이 효력을 갖기 이전에 사용한 것에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이 또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 협약은 다른 기존 협약들의 피해자 지원 조항들에 비해 크게 강화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은 확산탄 피해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겪을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약은 확산탄 피해자의 범위를 확산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5조에는 당사국이 취해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원 등 광범위한 지원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 확산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당사국들도 이와 같은 지원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오해 10 확산탄금지협약은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게 피해자 지원과 불발탄 제거에 대한 최종 책임을 떠맡김으로써 과도한 짐을 안긴다.

진실

- 협약은 해당 당사국의 주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피해국들이 불발탄 제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에 따라 국가는 자국의 국민을 돌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사국이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 협약은 “그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기술적,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피해국가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해당 국가 혼자 그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산탄 사용국가들은 피해국이 잔류확산탄을 제거하는 일에 지원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가집니다. 4조는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사용했던

소폭탄들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사용국가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10년의 기한 내에 정화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오염이 됐을 경우 5년의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해 11 훈련 목적의 확산탄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협약이 규제하는 완전한 금지를 피할 수 있게 하는 핑계가 될 것이다.

진실

- 물론 이 조항이 없다면 훨씬 더 강력한 협약이 될 수 있었겠지만, 당사국들이 훈련 목적의 확산탄만을 남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조항(3조 6항)으로도 확산탄 비축분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당사국들은 훈련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당사국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과 그것들의 사용 계획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확산탄이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당사국들은 훈련 목적으로 보유 중인 확산탄을 협약이 금지한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 12 현재 확산탄금지협약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

진실

- 확산탄금지협약은 이 무기의 재앙을 근절시키기 위한 큰 성과였습니다. 각국은 가능한 한 빨리 조인, 비준, 이행해야 합니다.

- 각국은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확산탄의 악명을 더 퍼뜨릴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국가들이 함께한다면 이 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의 메시지도 명확해질 것입니다.
- 각국은 자국에서 가능한 한 빨리 협약을 비준하여 발효시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각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포괄적 이행을 위한 입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협약은 당사국에게 협약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이 협약이 국내적 효력을 가지려면 국내 입법을 필요로 합니다.

확산탄의 불법성에 대한 국제법적 이해⁵⁹⁾

1. 인도성의 원칙

인도법의 원칙, 즉 구별의 원칙, 무차별공격금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은 확산탄 규제 문제에 대한 주요한 검토기준이다.⁶⁰⁾ 인도법의 원칙을 거론하는 이유는 만약 확산탄 사용금지규범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규범이 한국과 같은 확산탄금지협약의 비당사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확산탄을 사용한 국가는 비록 협약의 당사국이 아닐지라도

59) 이 글은 이재승(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철학)의 논문 <확산탄금지협약의 발효와 한국의 과제> (2010)에서 3장을 전문 그대로 실었다. 이 논문은 '민주법학' 44호에 실렸다. - 편집자 주

60) 이러한 원칙들에 대한 간결한 설명은 Wiebe, Virgil, "For Whom the Little Bells Toll: Recent Judgements by International Tribunals on the Legality of Cluster Munitions", *Pepperdine Law Review*, vol. 35(2008), 899쪽 이하.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원칙들의 영역을 명료하게 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때에 국가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미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확산탄에 관한 법적 책임을 완전히 털어 버릴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는 점이다.⁶¹⁾ 이는 확산탄 자체의 법적 성격과 결부되어 있다. 즉 확산탄금지협약이 선언한 확산탄의 불법성이 ‘창설적’인 미아니면 ‘확인적’인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협약이 확산탄의 불법성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면, 금지규범은 훨씬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확산탄 협약이 확산탄의 불법성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쟁점과 상관없이 확산탄을 국제인도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위반하여 사용한 국가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구별의 원칙, 무차별공격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들은 국제관습인도법의 차원에서 설명된다.⁶²⁾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펴낸, <국제관습인도법 규칙>은 ‘성질상 과도한 피해와 불필요한 희생을 야기하는 전투의 수단과 방법의 사용은 금지된다’는 규칙을 국제관습법으로 설명한다.⁶³⁾ 이러한

61) 관습법 자체의 형성과정에 집요한 반대자(persistent objector)가 있을 수 있다. 관습법의 적용을 면제받으려는 국가는 관습법의 성립 이전에 ‘명백하게 그리고 일관되게(manifestly and consistently)’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베네쉬는 지뢰금지규범의 관습법 형성과정에서 이러한 유형의 집요한 반대자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로부터 확산탄금지규범에 대한 관습법의 성립과 비당사국에 대한 적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Benesch, Susan 외,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nd Anti-personnel Landmines: Emergence of a New Customary Norm,” Landmine & Cluster Munition Monitor, <http://www.the-monitor.org/index.php/publications/display?url=lm/1999/appendices/custom_law.html>, 검색일: 2010. 7. 23.

62) Turns, David, “Weapons in the ICRC Study on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Journal of Conflict & Security Law, vol. 11(2006), 201쪽 이하.

63) ‘Rule 70: The use of means methods of warfare which are of a nature to cause superfluous injury or unnecessary suffering is prohibited.’ Henckaerts, Jean-Marie & Doswald-Beck, Louise,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 1: Rul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237쪽 이하.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발행한 연구서가

원칙을 현대적으로 정식화한 것은 비교적 오래되었지만 1868년 페체르부르크 선언이다. 이 원칙은 헤이그법(Hague Regulations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1907)에 재등장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수괴급 전범재판에서 헤이그법은 최소한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한 1939년부터 확실히 관습법이 되었다고 선언하였다.⁶⁴⁾ 최근에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핵무기의 합법성 문제에 대한 결정에서 이러한 원칙을 ‘국제인도법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주요 원칙들 중의 하나’로 언급하였다.⁶⁵⁾ 나아가 <국제관습인도법규집>은 ‘성질상 무차별적인 무기의 사용은 금지된다’는 규칙을 국제관습인도법으로 확인하고 있다.⁶⁶⁾ 이러한 정신은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에 ‘구별의 원칙’과 ‘무차별공격 금지의 원칙’⁶⁷⁾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관습인도법의 규칙에 따라 때 확산탄이 성질상 무차별적인 무기로서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규칙을

제시하는 규칙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국제인도법 분야의 관습법에 대한 비공식적인 법전화(Codification)로 규정할 수 있다. 인도법의 형성고 확인(restatement)에 대해서는 Wilmshurst, Elisabeth & Breau, Susan, Perspectives on the ICRC Study on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15쪽 이하.

64) “Judgement: The Law Relating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http://avalon.law.yale.edu/imt/judlawre.asp>>, 검색일: 2010. 9. 7; “Legality of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of 8 July 1996, 1996 I.C.J. 226, General List No. 95, para. 80.

65) “Legality of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para. 78.

66) Rule 71: The use of weapons which is by nature indiscriminate is prohibited. Henckaerts, & Doswald-Beck, 앞의 책, 244쪽 이하.

67) 1977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정서(1977 Additional Protocol I to the Geneva Conventions) 51조 (2)와 제2추가정서 13조 (2)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있다(구별의 원칙). 제1추가정서 51조 (4)는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해석할 때 특히 문제되는 점은 특정 무기가 그 자체로 불법적인 무기(illegal per se)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한 금지조약이나 특정무기 금지에 관한 별도의 관습법이 존재해야 하는지 여부이다.⁶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자의 입장이 우세한 것 같다. 이런 점에서 1996년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참조할 만하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핵무기 자체를 불법화하는 협약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 자체를 국제관습법상 불법적이라는 판단을 확정적으로 내리지 못했다.⁶⁹⁾ 그러나 이러한 결정요지는 확산탄의 불법성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미 확산탄을 불법화하는 국제협약이 발효되어 있기 때문에 확산탄금지에 대한 관습법의 형성은 핵무기보다는 여러모로 유리하다.

68) Turns, 앞의 글, 214쪽.

69) “Legality of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266쪽 이하. “법원은 (13대 1로) 원 고의견에 대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며, 유엔총회(General Assembly)가 기탁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A. (만장일치로) 국제관습법이나 국제조약법 어디에도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 B. (11대 3으로) 국제관습법이나 국제조약법 어디에도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 자체에 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금지를 정한 규정은 없다. C. (만장일치로) 핵무기를 수단으로 하여 유엔헌장 2조 4항에 위반하고, 51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무력 위협과 행사는 불법적이다. D. (만장일치로)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은 무력충돌시 적용되는 국제법의 요건, 특히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규칙들의 요건들, 나아가 명시적으로 핵무기를 취급하는 조약과 여타 약정상의 특수한 의무에 부합하여야 한다. E. (7대 7 가부동수 상황에서 의장의 결정권) 앞에서 언급한 요건에 비추어 볼 때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은 일반적으로 무력충돌시 적용되는 국제법의 규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인도법의 원칙과 규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법의 현황과 활용가능한 사실관계들을 고려하건대, 법원은 국가의 존망이 경각에 달린 극단적인 자위의 상황에서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이 불법적인지를 단정적으로 결론내릴 수 없다. F. (만장일치로) 엄격하고 실효적인 국제적인 통제 아래서 전면적으로 핵무장해제로 가는 협상을 신의성실에 따라 추진하고 종결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다른 한편, 금지조약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특정국가가 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국가가 금지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강행한다면, 인도성의 원칙은 전체적으로 유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당사국의 임의적인 행동은 인도성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되어야 하며, 국제인도법은 인도성의 원칙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마르텐스⁷⁰⁾ 조항(Martens clause)⁷¹⁾은 그러한 해석 방향에 대한 좋은 참조가 된다. 조약이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는 사항도 문명민족들의 관행, 인도성의 원칙, 공적인 양심(public conscience)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천명함으로써 부차적으로 국제법의 법원(法源)까지 언급하고 있다.⁷²⁾ 이는 새로운 국제관습법이나 강화된 인도성의 원칙들이 국제인도법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이자 변형(transformation) 규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⁷³⁾ 확산탄

70) 마르텐스(Fyodor Fyodorovich Martens 1845-1909)는 러시아의 국제법학자로서 헤이그 평화회의 당시에 러시아 외교관이었다. 그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Pustogarov, Vladimir, "Fyodor Fyodorovich Martens(1845-1909) - a humanist of modern times",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no. 312 (1996. 6. 30), 300-312쪽.

71) <육전의 법과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1899)> 전문의 다음과 같은 문구를 의미한다. "협약당사국들은, 전쟁법에 관한 보다 완전한 법전이 성립될 때까지 당사국들이 채택한 법전이 규율하지 않는 사안들에서 민간인과 전투요원이 문명민족들 간의 확립된 관행, 인도주의의 법, 그리고 공공양심의 요청으로부터 귀결되는 국제법의 제원칙의 보호와 통제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은 1907년 헤이그 제4협약에서 수정되어 나타난다.

72) 마르텐스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는 Meron, Theodor, "The Martens Clause, Principles of Humanity, and Dictates of Public Conscienc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4(2000), 78쪽 이하.

73) Meron, 앞의 글, 80쪽; Ticehurst는 마르텐스 조항의 취지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 최협의로, 조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국제관습법은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광의로, 무력충돌에 관한 조약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조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허용되지는 않는다. 최광의로, 무력충돌에서 행동은 조약이나 관습뿐만 아니라 마르텐스 조항이 지시하고 있는 국제법의 원칙들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Ticehurst, Rupert, "The Martens Clause and the Laws of

에 관한 금지규범이 협약을 통해 확립된 이상 금지규범이 국제관습인도법의 규칙으로 확립되는 것도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

2. 확산탄의 불법성에 관한 과거의 결정들

확산탄에 관한 종래의 결정의 취지는 확산탄 사용이 그 자체로 불법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만, 확산탄이 무차별적인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어 민간인에게 피해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국가에게 책임을 인정하였다. 물론 다음의 결정들은 금지협약이 성립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내려진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

2.1. 마르티츠 사건(1996)⁷⁴⁾

세르비아 정치인인 마르티츠는 인종청소와 자그레브 폭격을 이유로 구유고전범재판소(ICTY)에 기소되었다. 그는 자그레브 폭격에서 바로 확산탄을 사용하였다. 구유고전범재판소 사실심법원은 ‘확산탄 자체를 형식적으로 금지하는 국제인도법의 규정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자그레브 폭격과 관련하여 확산탄을 탑재한 로켓의 사용은 피고인들이 민간인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전쟁범죄에 대한 범의의 증거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부정확한 확산탄이 적법한 군사적 목표물이 없는 지역에 투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그레브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으려는 명백한 의도 하에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⁷⁵⁾

2.2. 나토의 확산탄 사용에 대한 구유고전범재판소의 입장(2000)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no. 317 (1997.4.30), <<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html/57JNHY>>, 검색일: 2010. 7. 25.

74) Trial Chamber I, Decision in Rule 61 Proceedings, 8 March 1996, 108 ILR 39(47).

75) 앞의 자료, 50~52쪽.

유고 내전에 개입한 나토도 코소보에 확산탄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불발율이 30%에 이르렀고, 공격 후 불발탄이 야기하는 피해 때문에 확산탄이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구유고전범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확산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수한 조약규정은 없다. 물론 확산탄도 무기 사용시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따라야 한다.”

“나토의 확산탄 사용이 그러한 일반원칙을 위반한 증거는 없다.”

“확산탄이 법적인 관점에서 (대인지뢰금지협약으로 금지된 : 필자 추가) 대인지뢰와 동등하다는 일반적인 합의는 없다.”⁷⁶⁾

영국의 국방장관 훈(Geoff Hoon)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작전과 관련하여 비슷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확산탄은 특수한 군사적 위협 - 무장 차량 - 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민간주민을 겨냥해서 사용되지 않는다. (확산탄은 : 필자 추가) 국제협약상 지뢰로 규정되지 않는다. 확산탄의 사용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다.”⁷⁷⁾

이라크 전쟁에서 영국상원의 바흐(Bach) 경도 유사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확산탄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다. ... 우리는 국제법상의 의무에 일치하는

76)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Final Report to the Prosecutor by the Committee Established to Review the NATO Bombing Campaign Against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8 June 2000)”,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Reports and Other Documents, vol. 39(2000), 1264쪽.

77) Turns, 앞의 글, 216쪽 이하.

방식으로 이라크 기갑부대와 같은 정당한 군사적 목표물에 대하여 확산탄을 사용하였다.”⁷⁸⁾⁷⁹⁾

2.3. 이스라엘 군대의 철제 다트탄 사용 사건(2003)

이스라엘 군대는 가자지구에서 철제 다트탄(flechette shell)⁸⁰⁾을 사용하였다.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철제 다트탄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이스라엘 대법원에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 다트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의미 있는 국제적인 지지를 획득하지 못했으며, ... 재래식무기협약도 철제 다트탄과 같은 자탄을 포함하는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철제 다트탄의 사용이 전쟁법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상고인의 주장은 옳지 않으며, 따라서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⁸¹⁾

법원은 철제 다트탄이나 유사한 무기들의 사용이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가증시킨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이러한 위협을 상쇄시킬 만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으며, 이스라엘 군대도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무기사용에 관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법원은 다트탄을 금지하는 국제관습법이나 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다트탄의 사용은 합법적이며, 단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불법적이라는 일반원칙을 확인하였다.

2.4.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 위원회의 결정(2004)

78) Turns, 앞의 글, 217쪽 이하.

79) 나토의 확산탄 사용과 관련해서 클린턴과 블레어 등에 대한 기소촉구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McDonnell, 앞의 글, 115쪽.

80) 무수한 강철 다트(자탄)로 구성된 이 무기는 몇백 평방미터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강철제 다트 무기가 처음 사용되었다.

81) Physicians for Human Rights v. O. C. Southern Command(HCJ 8990/02, 27 April 2003)

1998년에서 2000년까지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는 국경 문제로 전쟁을 벌였다. 전쟁은 에리트레아의 불법적인 국경 침범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책임은 에리트레아에게 있었다.⁸²⁾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 공군의 주력이 머무는 메켈레 공항을 폭격하면서 공항 인근지역의 학교와 민간인 주거지역을 확산탄으로 공격하여 민간인과 학생들의 인명을 대량으로 살상하였다. 전후 처리를 위하여 발족한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 전후배상위원회(Eritrea-Ethiopia Claims Commission)는 제네바협약 제1 추가 의정서 57조상의 공격시에 민간인 보호를 위한 특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한다는 규정을 원용하며 에리트레아에게 확산탄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⁸³⁾

3. 확산탄에 관한 국제관습법

종래의 결정들은 확산탄의 사용으로부터 곧바로 사용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확산탄을 특정한 방식으로, 즉 무차별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민간인에 대해 피해를 발생시킨 때에 한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한편 일정한 무기사용의 수칙을 지켰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지뢰금지협약과 같이 특정한 무기를 명시적으로 불법화하는 조약규정이 없는 한 특정한 무기의 사용을 그 자체로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세였다. 또한 대부분의 결정들은 해당 무기를 금지하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존재한다면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확산탄금지협약이 발효된 이상 확산탄 사용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다.

82) "Eritrea broke law in border war", <<http://news.bbc.co.uk/2/hi/africa/4548754.stm>>, 검색일: 2010. 7. 16.

83) Wiebe, 앞의 글, 903쪽 이하.

물론 협약의 당사국은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협약이 비당사국에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확산탄금지협약은 확산탄을 불법화시킨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동이다. 비록 금지협약은 협약당사국에게만 효력을 미치지만 협약 자체를 국제관습법의 원천⁸⁴⁾으로 이해하거나, 인도법 원칙의 구체화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확산탄금지협약의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도 지뢰금지규범의 발전과정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지뢰 사용 자체를 국제관습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몇 가지 국제관습법이 확인되고 있으며,⁸⁵⁾ 지뢰사용금지규범이나 지뢰피해자지원규범이 국제관습법으로 부상하는 중이다.⁸⁶⁾ 따라서 ‘대인지뢰금지협약’ 이후의 지뢰에 관한 국제관습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확산탄금지협약의 시행 이후의 확산탄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예후라고 할 수 있다.⁸⁷⁾

84) 지뢰금지협약의 관습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Benesch, 앞의 글 참조.

85) 〈국제관습인도법집〉은 대인지뢰와 관련해서 세 가지 관습법을 확인하고 있다.

규칙 81: 지뢰를 사용할 때에는 무차별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수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규칙 82: 지뢰를 사용하는 분쟁당사자는 가급적 지뢰설치 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규칙 83: 적대행위가 종료된 때에는 지뢰를 사용한 분쟁의 당사자는 지뢰를 제거하고, 기타 민간인에게 해가 없도록 하고, 지뢰 제거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Henckaerts & Doswald-Beck, 앞의 책, 280쪽 이하.

86) Benesch, 앞의 글; Rutherford, Ken, “State Legal Obligations to Landmine Victim Assistance”, U.C. Davis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vol. 7(2001), 41쪽 이하.

87) 관습법의 발전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재래식무기협약(CCW) 제2의정서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지뢰 등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CCW 제2의정서수정(1996)에 따라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뢰를 규제하고 있다. 우선 일정한 유형의 지뢰 사용을 금지하고, 지뢰의 이전이나 해외유출을 금지하고, 지뢰 생산품에 대하여 제조표시를 하고, 매설된 지뢰에 대하여 표시하고, 기록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0년 현재 김영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4. 확산탄금지협약의 국제법적 의의

확산탄금지협약은 확산탄의 피해 실상과 피해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국제적 정의를 구현하고 있고, 확산탄의 최대보유국과 사용국들의 이해관계와 맞서 국제인권단체들이 획득한 드문 성과라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협약의 성립 과정에서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점에서 지뢰금지협약과 같이 ‘국제적 거버넌스’의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협약은 국제인도법의 핵심원칙인 구별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강화하였다. 확산탄의 사용은 민간인 거주지역 또는 근접지역에서 군사적 목표물과 민간인 또는 민간시설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고, 공격 후에도 잔류한 불발탄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구별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나아가 확산탄은 민간인에 대하여 큰 피해를 야기하며, 특히 장기적인 효과까지 계산에 넣는 경우에는 확산탄은 비례성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협약은 비례성의 평가에서 확산탄의 후작용을 주목함으로써 비례성의 원칙을 강화하고 명료화한 것이다.

둘째로, 확산탄금지협약은 확산탄을 사용한 국가의 책임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하였다. 협약이 발효하기 전에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관할 지역에서 사용했거나 방치했던 잔류확산탄에 대해서도 이를 제거할 책임을 협약은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4조 4항)⁸⁸⁾. 이 규정은 확산탄 오염에 책임이 있는 국가를 직접적으로 끌어들이므로 종전(終戰)의 법(jus

88)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제5의정서’는 폭탄을 사용했거나 방치했던 국가에 대하여 공격 후 무기 제거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부과하는데 비하여(3조), 확산탄금지협약은 협약의 효력 발생 이전에 사용했거나 방치했던 확산탄도 당사국에게 제거하도록 한다는 점이 특색이다.

post bellum)으로서 성격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협약은 사용국가에게 확산탄의 위치정보를 피해국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로, 확산탄금지협약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통합하고 강화하였다. 학자들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통합을 주장해 왔는데, 확산탄금지협약은 바로 이러한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 협약은 통상의 국제인도법의 범주를 벗어나 국제인권법을 언급하고, 그 해법을 통합하고 있다. 예컨대, 협약은 전문에서 “모든 확산탄 피해자들의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확보하는 것”, “협약의 당사국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든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확보하고 촉진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장애인에 관한 협약”, “확산탄 피해자들에 대한 연령 및 젠더를 반영하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 그리고 취약집단의 특수한 수요를 다룰 필요” 등을 언급하고 있다. 협약은 이와 같이 아동권, 젠더권리, 취약집단의 권리와 같은 인권의 하위영역을 통합하고 있다.

넷째로, 확산탄협약의 채택 과정은 조약성립 방식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조약을 안에서 전통적인 방식이 협약을 만들어낼 수 없을 때, 뜻을 같이 하는 정부들, 국제기구들, 시민사회가 오슬로 프로세스를 꾸려서 신속하게 협약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지뢰금지협약을 성공시킨 오타와 프로세스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강대국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질 때 공동 목적을 가진 국가들과 비정부기구나 인권단체들이 반전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확산탄금지협약 vs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는 2011년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4차 평가회의가 진행되었다. 미국을 위시한 확산탄 생산국 및 비축국들은 지난 4년간 무차별적 살상을 야기하는 확산탄의 사용을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해 왔으며, 4차 평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의정서(제6의정서)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했다.

제6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불발률 1% 미만의 확산탄을 규제에서 제외시킬 것, 1개 이상의 자기파괴 구조를 장착한 확산탄을 규제에서 제외시킬 것, 1980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확산탄을 규제에서 제외시킬 것, 협약에서 금지된 확산탄도 12년의 유예기간을 허가할 것 등이다. 간단하게 말해 대표적 비인도적 무기로서 국제적으로 생산 및 사용, 비축, 이전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확산탄의 생산, 사용, 이전, 비축을 적법하게 허용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50개국 이상의 전면적 반대에 부딪혀 이 시도는 결국 실패로 마무리되었다. 반대는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멕시코가 중심이 되어 이끌었고, 확산탄금지연합과 국제적십자위원회, 그리고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등 많은 유엔 기구들이 반대하는 나라들을 강하게 지지했다.

새 의정서 통과를 지지했던 주장에 대해 확산탄반대연합의 반박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6의정서 채택을 지지한 국가들은 이 의정서가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등 확산탄의 주요 사용·생산·비축국들을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와 같이 최근 수십 년 동안 확산탄을 사용·생산·비축한 주요 국가들임에도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제6의정서는 규제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예외와 면제 조항과 허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도 특히 미국의 경우 이 의정서가 자국의 국가정책의 수준조차 넘어서지 못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규제를 위한 실효성이 전무하다. 마지막으로 대인지뢰금지협약의 선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어떤 무기에 악명을 씌우면 협약의 비가입국들에게까지 그 무기 사용에 있어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력한 국제법이 관대한 국제법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둘째, 제6의정서 채택을 지지한 국가들은 1980년 이전에 생산된 확산탄에 대한 규제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인도주의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조한 지 30년 이상 되어 노후한 무기들은 이미 수명이 다하여 의정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폐기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생산되어 전 세계적으로 비축되어 있는 확산탄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실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2008년 이후 확산탄이 사용되었던 태국, 캄보디아, 미국, 러시아, 그루지야의 경우 어느 곳에서도 1980년 이전에 생산된 확산탄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즉 현실적으로 실전에서 사용되는 확산탄은 1980년 이후 생산품으로 그 이전의 확산탄을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이 명백하다.

셋째, 제6의정서 채택을 지지한 국가들은 이 의정서가 전 세계 85~90%의 확산탄 비축분을 규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85~90%라는 수치는 미국이 단독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증명된 숫자가 아니다. 아무도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한국 등의 국가들에 비축되어 있는 확산탄의 규모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 의정서가 채택되면 1억 개의 소폭탄을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산탄금지협약 가입국들이 폐기시킬 소폭탄의 전체 수량은 2억 개에 달하며 그중 6천만 개가 이미 폐기되었다. 또한 이 의정서에는 1980년 대 이후에 제작된 확산탄은 규제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양의 확산탄을 아무런 규제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제6의정서 채택을 지지한 국가들은 불발률 1% 미만의 확산탄과 1개 이상의 자기파괴 구조를 장착한 확산탄을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인도주의적으로나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발률 1%라는 수치는 가장 안정적 형태인 단단한 표면에서조차 실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지난 수년간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었으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 때(2006년) 확인됐듯 설사 실험에서 1%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 드러나는 불발률은 10%가 넘었다. 또한 수천수만의 소폭탄이 피해 지역을 뒤덮어 초토화시키는 실전 상황에서는 불발률 1%라는 허용수치도 지나치게 높다. 또한 전자식 자기파괴 구조와 전자식 자기비활성화 장치 2개 모두를 장착하도록 요구하는 확산탄금지협약보다 후퇴한 기준을 설정한 것은 이 설정한 것을 정당화하려는 의발률다. 실험실과 같은 최상의 상황이 보장되지 않는 실전에서 이상적인 기술적 해법은 없다. 설사 비약적인 기술 발전으로 불발률을 낮추는 자기파괴 구조를 장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차별적 폭격을 퍼붓는 집속탄 자체의 비인도성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바로 확산탄의 태생적 비인도성에 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사항들은 이미 확산탄금지협약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가입국임과 동시에 확산탄금지협약 가입국인 76개 국가(전체 119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중 2/3에 달한다)는 이 의정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제6의정서 채택을 지지한 국가들은 군사적 필요를 고려하고 지지자들을 늘리기 위하여 12년의 유예기간을 허가할 것을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무기의 극심한 위험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지를 통한 즉각적 인도주의적 효과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12년의 사용 유예기간을 허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접근 방식이다.

여섯째, 제6의정서 채택을 지지한 국가들은 이 의정서가 특정재래식무

기금지협약의 신뢰성 제고 및 효력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의정서는 소수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영합한 내용에 다름 아니며,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신뢰성은 이로 인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약화될 것이다. 또한 새롭게 제안된 이 의정서는 국제인도법(IHL)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세계의 다수 국가가 동의한 높은 수준의 협약이 이미 제정되었는데 낮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협약을 채택하려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이미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채택된 이후에 하향 조정되는 경우는 없었으며, 제6의정서가 통과되었다면 부정적 선례를 낳아 국제인도법은 크게 후퇴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제안한 제6의정서는 현재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는 확산탄 비축분들을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인가를 명시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수많은 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이 무기를 사용하고자 고집하는 국가들에게 법률적,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확산탄반대연합 의장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스티브 구스(Steve Goose)는 제6의정서 내용이 시민들에게까지 끔찍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악명 높은 확산탄의 사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제6의정서가 통과될 경우 확산탄의 사용으로 시민들의 희생이 늘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급증할 것이며, 그런 협약은 “차라리 없느니 못하다”고 지적했다.

확산탄반대연합 소속단체인 노르웨이민중원조(NPA)의 지뢰제거부 정책자문위원인 그레테 오스테른(Grethe Ostern)은 확산탄반대연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단순한 외교 게임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다. 약화된 기준에 대한 이번 회의에서의 전면적 거부는 국제정치에서 유엔, 국제적십자위원회, 시민사회와 협력한 중소국가들이 의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확산탄반대연합의 캠페인 매니저인 에이미 리틀(Amy Little)은 “제6의 정서 통과 실패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확산탄은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불발탄으로 잔류하여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입니다. 중국, 인도, 이스라엘, 러시아, 미국이 진정 인도주의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말만 하지 말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즉시 보유하고 있는 비축분을 폐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확산탄금지협약은 최근 수십 년간 확산탄을 가장 많이 사용·생산하거나 비축한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을 포함해 2012년 2월 현재 111개국이 조인하였으며, 28개의 나토 가입국 중에서는 22개국이 협약에 가입했다. 2011년 4차 평가회의에서 현행 확산탄금지협약을 약화시키기 위한 새 의정서 통과가 실패함에 따라, 모든 종류의 확산탄 사용과 생산 및 이전을 금지하고 희생자와 생존자의 권리를 촉진하는 확산탄금지협약은 더욱 힘을 얻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탄을 금지하고 있는 흐름을 퇴보시키지 말고 아직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한다.

확산탄금지협약 전문



확산탄금지협약 전문

본 협약 당사국들은,

민간인과 시민들이 무력충돌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확산탄이 사용될 때 애초의 의도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사용 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버려짐으로써 발생하는 인명 피해와 고통을 종식시킬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잔류확산탄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을 살상한다는 점, 잔류확산탄이 생계수단의 상실은 물론 이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막고 있다는 점, 잔류확산탄이 분쟁 이후 복구와 재건을 방해한다는 점, 잔류확산탄이 난민이나 피신한 사람들의 귀환을 막거나 지연시키고 있는 점, 잔류확산탄이 국내 및 국제적 평화재건 사업과 인도주의적 지원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사용 이후 확산탄이 오랜 세월 잔류되어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우려하였으며,

또한 작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확산탄 비축분이 야기할 위험에 깊이 우려하였고, 비축분을 조속히 폐기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세계 도처에 널려 있는 잔류확산탄을 제거하는 도전에 효율적이고 협조적인 방식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할 필요가 있고, 잔류확산탄을 확실히 파괴할 필요가 있음을 믿으며,

또한 모든 확산탄 피해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도록 할 것을 결의하였고,

피해자들의 내재하는 존엄성을 인지하며,
 확산탄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 재활, 심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확산탄 피해자들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섬세한 지원을 할 필요성과 취약 집단의
 특수한 요구들을 반영할 필요성을 인지하며,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관련하여
 특히 본 협약의 당사국들은 장애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장애인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증진시킬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며,
 다양한 종류의 무기의 피해자들이 갖는 권리와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포럼에서 착수된 노력들을 충분히 조화시킬 필요성에 유념하고, 다양한 종류의
 무기의 피해자들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본 협약이나 다른 국제협약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든 민간인과
 군인들은 공공의 양심과 인도주의 원칙과 기존의 관습에서 도출된 국제법의
 원리의 권위와 보호 아래 있음을 재확인하며,
 또한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집단이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본 협약
 당사국에게 금지된 활동에 가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결의하였으며,
 1997년의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담긴 대인지뢰 금지 규범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
 적 지지를 환영하며,
 또한 매우 위험하고 무차별적 피해를 불러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무기들을
 금지하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에 추가로 포함된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되고 2006년 11월 12일에 발효된 점을 환영하고, 분쟁 이후에
 잔류확산탄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되길 희망하며,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평화·안전에 관한 결의안 1325호(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과 무력충돌지
 역 아동에 관한 결의안 1612호(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12
 on children in armed conflict)를 명심하며,
 지난 수년간 확산탄의 사용·비축·생산·이전을 금지하고 제한하고 중단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전 지구적 걸음들이 더 나아간 점을 환영하며, 확산탄으로 야기되는 민간인들의 고통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국제적 목소리가 입증하듯 인도주의 원칙들을 심화시키는 공공의 양심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유엔, 국제적십자위원회, 확산탄반대연합 그리고 세계의 무수한 비정부조직들이 행한 노력들을 인지하며, 확산탄에 관한 오슬로 회의의 선언, 특히 회의 참가국들이 확산탄 사용으로 야기된 심각한 결과를 인지했고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확산탄의 사용·생산·이전·비축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2008년까지 체결하기로 결의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의료와 재활 제공, 오염지역의 정화, 위험경감 교육, 확산탄 비축분의 폐기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로 한 선언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가 본 협약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본 협약의 보편화와 완전한 실현을 위해 분투할 것을 결의하며,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규범에 의거하여, 특히 무력충돌에서 당사국들은 전쟁의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원칙, 분쟁 중인 당사국들은 항상 민간인과 전투원 양자 및 민간시설과 군사적 목표물 양자를 구별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작전의 대상이 군사적 목표물에만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군사작전 수행 중에는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시적인 유의를 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민간인과 시민들이 군사작전으로 초래되는 위험으로부터 전반적인 보호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들에 의거하여, 본 협약의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조

일반의무 및 적용범위

1. 각 당사국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 (a) 확산탄을 사용하지 않는다.
 - (b) 확산탄을 개발, 생산하거나 획득, 비축, 보유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직간접적인 이전을 하지 않는다.
 - (c) 협약에 의해 금지된 활동에 가담하도록 누구에게도 원조, 장려,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본 조 1항은 항공기에 장착되어 흩뿌러지거나 방출되도록 특별하게 설계된 폭발성 소형 폭탄을 준용한다.
 3. 본 협약은 지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조

개념 정의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1. “확산탄 피해자(Cluster munition victims)”는 확산탄의 사용으로 인해 죽거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 경제적인 손실과 사회적 배제 혹은 자신들의 권리 실현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 모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확산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게 되는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도 포함된다.
2. “확산탄(Cluster munition)”은 각각 20킬로그램 미만의 폭발성 소폭탄들을 흩뿌러지거나 방출되도록 설계된 재래식 탄약과 이러한 폭발성 소폭탄들을 의미한다. 이는 아래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a) 불꽃, 연기, 꽃불, 채프(chaff, 방어용 금속조각)가 나오도록 설계된 탄약이나 소폭탄, 또는 오직 방공 역할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탄약.
 - (b) 전기 또는 전자적 효과를 목적으로 고안된 탄약이나 소폭탄.
 - (c) 무차별적인 지역 영향(area effects)과 불발 확산탄으로 생기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래의 특성들을 모두 지닌 탄약.
 - (i) 각각의 폭탄이 10개 미만의 소폭탄을 가지고,

- (ii) 폭발성 소폭탄 각각의 무게가 4킬로그램을 넘고,
 - (iii) 각각의 폭발성 소폭탄들이 단 하나의 목표물을 감지해 공격하도록 고안되고,
 - (iv) 각각의 폭발성 소폭탄들에 전자적 자기파괴 구조를 갖추고,
 - (v) 각각의 폭발성 소폭탄들에 전자적 자기비활성화 기능을 갖춘 경우.
3. “폭발성 소폭탄(Explosive submunition)”은 목적 수행을 위해 확산탄에서 흩뿌려지거나 방출되어 공격의 이전 순간, 이후에 걸쳐 폭발하도록 설계된 재래식 탄약을 의미한다.
 4. “실패한 확산탄(Failed cluster munition)”은 투하 및 발사(fired, dropped, launched, project)되거나 그 외 다른 방식으로 발사(delivered)되었으나 폭발성 소폭탄을 흩뿌리거나 방출하지 못한 확산탄을 의미한다.
 5. “불발 소폭탄(Unexploded submunition)”은 흩뿌려지거나 방출되거나 혹은 확산탄으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애초의 의도대로 폭발하지 않은 폭발성 소폭탄을 의미한다.
 6. “유기된 확산탄(Abandoned cluster munitions)”은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거나 버려져, 애초에 남기거나 버린 당사자의 통제를 더 이상 받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는 확산탄 혹은 폭발성 소폭탄을 의미한다. 이것들은 사용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7. “잔류확산탄(Cluster munition remnants)”은 실패한 확산탄, 유기된 확산탄, 불발 소폭탄과 불발 소형 폭탄을 의미한다.
 8. “이전(Transfer)”은 국내 영토 내외부로 오고가는 확산탄의 물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확산탄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의 이전을 포함한다. 그러나 잔류확산탄이 남아 있는 영토에서의 이전은 포함하지 않는다.
 9. “자기파괴 구조(Self-destruction mechanism)”는 탄약의 최초 기폭 구조뿐만 아니라 그 탄약을 파괴하는 기능도 내장된 자동 기능 구조를 의미한다.
 10. “자기비활성화 기능(Self-deactivating)”은 탄약의 작동에 필수적인 배터리 같은 부품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소진시킴으로써 자동적으로 그 탄약을 작동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의미한다.

11. “확산탄 오염지역(Cluster munition contaminated area)”은 잔류확산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12. “지뢰(Mine)”는 지하이나 지상, 기타 지표면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차량의 출현, 접근, 접촉에 의해 폭발되도록 설계된 탄약을 의미한다.
13. “폭발성 소형 폭탄(Explosive bomblet)”은 자체 추진은 되지 않고 목적 수행을 위해 기계장치에서 흩뿌려지거나 방출되어 공격의 이전, 순간, 이후에 걸쳐 폭발하도록 설계된, 20킬로그램이 넘지 않는 재래식 탄약을 의미한다.
14. “방출기기(Dispenser)”는 항공기에 장착되어 폭발성 소형 폭탄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투하할 때 폭발성 소형 폭탄들을 흩뿌리거나 방출하도록 설계된 컨테이너 기기를 의미한다.
15. “불발 소형 폭탄(Unexploded bomblet)”은 방출기기로부터 투하 혹은 분리되어 나왔지만 애초의 의도대로 폭발하지 않은 폭발성 소형 폭탄을 의미한다.

3조

보관과 비축분 폐기

1. 각 당사국들은 자국의 규제에 따라 작전용으로 보유한 탄약에서 관할권에 있는 모든 확산탄을 분리하고 폐기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들은 본 조 1항에 언급된 모든 확산탄을 가능한 한 빨리 폐기하거나 향후 폐기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늦어도 이 협약이 해당 국가에서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8년 이내에 모두 폐기해야 한다. 당사국들은 확산탄 폐기의 방식이 공공의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는 국제 규범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3. 당사국이 본 조 1항에 언급된 모든 확산탄의 폐기를 해당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8년 이내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면, 해당 당사국은 확산탄 폐기 마감기한 연장을 위해 당사국회의나 평가회의에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연장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4년이다. 당사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장 4년의 기한 연장을 한 번 더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된 연장 기한은 해당국이 본 조 2항에 명시된 당사국의 의무를 완수하는 데에 정확히 필요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각각의 기한 연장을 위한 요청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제안된 연장 기간.
- (b) 본 조 1항에 언급된 모든 확산탄을 폐기하는 데에 당사국이 사용할 수 있거나 혹은 요구되는 재정적 기술적 수단을 포함하고,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한 기한 연장안의 세부적인 설명.
- (c) 확산탄 비축분 폐기가 완료되는 시점과 폐기 방식에 관한 계획.
- (d) 당사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시점에 보유했던 확산탄과 폭발성 소폭탄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협약 발효 이후에 발견된 추가의 확산탄과 폭발성 소폭탄의 종류와 수량.
- (e) 본 조 2항에 언급된 시기 동안 폐기된 확산탄과 폭발성 소폭탄의 종류와 수량.
- (f) 연장안의 기간 동안에 폐기될 것으로 남은 확산탄과 폭발성 소폭탄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연간 폐기율 목표치.

5. 당사국회의의 혹은 평가회의에서는 본 조 4항에 언급된 요소들을 고려하여 폐기 마감기한 연장 요청을 평가하고 회의 참석국의 다수결에 따라 연장 요청을 승인할지 결정한다. 당사국들은 요청된 기한 연장의 기간을 줄여서 승인할 수 있고, 적절한 기준을 제안할 수 있다. 폐기 기한 연장 요청은 해당 요청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당사국회의나 평가회의가 열리기 최소 9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6. 본 협약 1조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확산탄 및 폭발성 소폭탄 탐지·제거·파괴 기술의 개발과 훈련, 혹은 확산탄 대응책 개발을 위한 제한된 수의 확산탄 보유나 획득은 허용된다. 이때 보유 또는 획득되는 폭발성 소폭탄의 양은 이러한 목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협약 1조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본 조 6항에 명시된 목적과 확산탄 폐기를 위한 목적으로 다른 당사국으로 확산탄을 이전하는 것은 허용된다.

8. 본 조 6항과 7항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하여 확산탄을 보유, 획득, 이전하는 당사국들은 이에 해당하는 확산탄 및 폭발성 소폭탄들의 사용 계획과 실제 사용된 용도, 종류, 수량 및 제품 번호에 관한 세부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확산탄이나 폭발성 소폭탄이 이러한 목적으로 다른 당사국으로 이전이 된 경우에는 이 보고서에 수령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당사국이 확산탄과 폭발성 소폭탄을 보유, 획득, 이전한 해마다 준비되어야 하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4조

잔류확산탄의 제거와 파괴 및 위험경감 교육

1. 각 당사국은 관할권의 확산탄 오염지역에 있는 잔류확산탄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거 및 파괴해야 한다.
 - (a) 당사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시점에 잔류확산탄이 당사국의 관할권 영역 안에 존재할 경우 당사국은 잔류확산탄의 파괴와 제거를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해야 하며, 협약 발효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b) 당사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시점 이후에 당사국 관할권 영역 안에 잔류확산탄이 생겼을 경우 당사국은 잔류확산탄의 파괴와 제거를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해야 하며, 잔류확산탄을 남긴 교전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c) 본 조 본 항의 (a)와 (b)에 제시된 의무를 완료했다면 그 내용을 차기 당사국회의에서 신고해야 한다.
2. 본 조 1항의 의무들을 수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국제협력과 지원에 관한 본 협약 6조의 조항들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당사국은 관할권에 있는 확산탄 오염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을여 잔류확산탄으로 인한 위협을 조사, 평가, 기록한다.

- (b) 확산탄 오염지역 표시, 민간인 보호, 확산탄 파괴와 제거에 관해 평가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동원할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활동 및 재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하게 기존의 구조물, 경험, 방법론을 바탕으로 국가적 계획을 세운다.
 - (c) 당사국 관할권에 있는 모든 확산탄 오염지역에 민간인을 효과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보호물 설치 등으로 주위를 표시하고, 감시 및 보호될 수 있는 모든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위험 의심지역을 표시할 때는 확산탄의 영향을 받은 공동체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기 방법에 기초한 경고 신호를 활용해야 한다. 신호와 그 밖의 위험지역 경계식별 표시는 가능한 한 잘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오래가고, 환경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표시된 경계의 어느 쪽이 확산탄 오염지역 내부이고 어느 쪽이 안전한 지역인지 명확히 확인 가능해야 한다.
 - (d) 당사국 관할권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잔류확산탄을 제거하고 파괴한다.
 - (e) 잔류확산탄으로 인한 위협이 상존하는 확산탄 오염지역의 내부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위협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위험경감 교육을 실시한다.
3. 본 조 2항에 언급된 활동들을 수행할 때 각 당사국은 국제지뢰행동기준(IMAS)을 포함한 국제기준들을 고려해야 한다.
4. 이 조항은 한 당사국이 해당 당사국에서 본 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사용했거나 유기했던 확산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며, 다른 당사국에 확산탄을 사용한 후 그 당사국에서 본 협약이 발효되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사국 관할권 영역 안에 잔류확산탄이 남아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 (a) 이처럼 두 당사국에서 본 협약이 발효된 경우에 전자의 당사국은 잔류확산탄의 표시, 제거, 파괴의 과정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후자의 당사국에 대해 지원할 것, 그중에서도 기술적, 재정적, 물질적 혹은 인적 자원을 지원할 것이 적극 권장된다. 이러한 지원은 양자협상을 통해 혹은 유엔이나 관련 기구 같이 쌍방이 합의한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b) 이러한 지원에는, 가능하다면 사용된 확산탄의 종류와 수량, 확산탄으로

공격한 정확한 위치, 잔류확산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당사국이 본 조 1항에 언급된 모든 잔류확산탄의 제거와 파괴를 해당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보장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면, 해당 당사국은 잔류확산탄 제거 마감기한 연장을 위해 당사국회의나 평가회의에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연장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이때 요청된 연장 기한은 본 조 1항에 명시된 당사국의 의무를 완수하는 데에 정확히 필요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6. 기한 연장을 위한 요청은 본 조 1항에 언급된 해당 당사국의 잔류확산탄 제거 마감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당사국회의나 평가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각 연장 요청들은 해당 요청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당사국회의나 평가회의가 열리기 최소 9개월 전에는 제출되어야 한다. 각 요청들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제안된 연장 기간.
 - (b) 제안된 연장 기간 동안 모든 잔류확산탄을 제거하는 데에 당사국이 사용할 수 있거나 혹은 요구되는 경제적 기술적 수단을 포함해, 제안된 기한 연장안의 이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 (c) 본 조 1항에 언급된 처음 10년의 기간과 이후 일부 연장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국가 지뢰제거 및 제거 계획에 따른 작업의 진행 상태와 향후 진행할 작업의 준비 내용.
 - (d) 해당 당사국에서 본 협약이 발효되던 시점에 잔류확산탄으로 오염된 전체 지역, 그리고 본 협약 발효 이후에 잔류확산탄이 발견된 추가 지역들.
 - (e) 본 협약 발효 이후에 잔류확산탄이 제거된 오염지역의 전체.
 - (f) 제안된 연장 기간 동안 잔류확산탄을 제거할 오염지역의 전체.
 - (g) 본 조 1항에 언급된 처음 10년의 기한 동안 해당 당사국 관할권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잔류확산탄을 파괴하는 데에 당사국의 역량을 방해한 사정들, 그리고 제안된 연장 기간 동안에 당사국이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국의 역량을 방해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정들.

- (h) 제안된 연장 기간이 지나는 인도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함의.
 - (i) 제안된 이 기한 연장 요청과 관련된 기타 정보들.
7. 당사국회의의 혹은 평가회의에서는 본 조 6항에서 언급된 요소들을 고려하고, 그중에서도 보고된 잔류확산탄의 양에 주목하면서, 마감기한 연장 요청을 평가하고 회의 참석국의 다수결에 따라 연장 요청을 승인할지 결정한다. 당사국들은 요청된 기한 연장의 기간을 줄여서 승인할 수 있고, 적절한 기준을 제안할 수 있다.
 8. 이러한 기한 연장은 본 조 5, 6, 7항에 따라 새로운 요청이 있을 때 최장 5년까지 갱신될 수 있다. 추가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당사국은 본 조에 따라 연장이 승인되었던 기존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작업들에 관한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5조

피해자 지원

1. 각 당사국은 관할권 영역 안의 확산탄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국제인도/인권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에 부합하도록 연령과 성별을 반영해 의료, 재활,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당사국은 확산탄 피해자들에 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본 조 1항에서 언급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당사국은,
 - (a) 확산탄 피해자들의 요구를 헤아려야 한다.
 - (b) 필요한 국내법과 정책을 개발, 시행, 집행해야 한다.
 - (c) 앞서 제시한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을 포함하여 국가적 계획과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이는 관련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여를 존중하면서 기존의 장애·개발·인권의 틀과 구조 속에 피해자들을 통합하는 관점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d) 국내적, 국제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e) 확산탄 피해자들을 차별하거나 피해자들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확산탄 피해자들과 다른 원인으로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 사이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 지원에서의 차이는 오로지 의료, 재활, 심리적 혹은 사회경제적 필요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 (f) 확산탄 피해자들 및 그들의 대표적인 조직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 (g) 본 조의 시행과 관련된 일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중심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 (h) 의료, 재활, 사회적 지원, 심리적 지원, 사회경제적 통합의 영역을 포괄하는 적절한 지침과 바람직한 관행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6조

국제협력과 지원

1. 본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당사국은 지원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2. 그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확산탄의 피해를 당한 당사국에게 기술적,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지원은 특히 유엔 체제, 국제적 지역적 또는 국내의 조직이나 기관, 비정부 조직이나 기구를 통해서 또는 양자관계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이행에 관한 장비와 과학기술적 정보의 교환을 최대한 가능하게 해야 하고, 거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들은 인도적 목적을 위한 제거 장비와 여타의 장비 및 관련 기술 정보의 제공과 인수에 과도한 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4. 본 협약 4조 4항에 따른 의무에 덧붙여, 그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각

당사국은 잔류확산탄의 제거와 파괴를 위한 지원, 확산탄 제거의 다양한 수단 및 기술에 관한 정보, 전문가 목록과 전문기관 또는 잔류확산탄의 제거와 파괴 및 관련 활동을 담당하는 국가 연락관(national point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그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각 당사국은 확산탄 비축분 폐기를 위한 지원의 의무를 가지며, 또한 본 협약 4조에서 규정한 표시, 위험경감 교육, 민간인 보호 및 확산탄 제거와 파괴에 대한 필요성과 실제적 수단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6. 본 협약이 발효된 이후 당사국 관할권 영역 안에 잔류확산탄이 생겼을 경우에 그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각 당사국은 잔류확산탄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긴급 지원을 시급히 제공해야 한다.
7. 그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각 당사국은 연령과 성별을 반영해 의료, 재활,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는 본 협약 5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지원은 특히 유엔 체제, 국제적 지역적 또는 국내의 조직이나 기관, 국제적십자위원회, 각국 적십자사와 적신월사 및 국제적십자사연맹, 비정부 조직을 통해서 또는 양자관계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
8. 그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각 당사국은 확산탄의 영향을 받은 당사국에서 확산탄 사용의 결과로서 요구되는 경제적 사회적 회복에 기여하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9. 그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각 당사국은 본 조의 지원 제공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신탁기금에 기여할 수 있다.
10. 지원을 요구하고 받는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제적 최적관행을 고려하여 국내법과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인원과 물자 및 장비의 드나듦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11. 각 당사국은 국가 행동계획을 세우기 위해 유엔 체제, 지역 조직, 타 당사국 혹은 이와 대등한 자격을 가진 정부 간 국제기구 혹은 비정부 기구에 다음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a) 해당 당사국의 관할권 영역 안에 있는 잔류확산탄의 특성과 범위.
 - (b) 국가 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
 - (c) 해당 당사국의 관할권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잔류확산탄을 제거하고 파괴하는 데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 (d) 잔류확산탄에 의한 부상이나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위험경감 교육 프로그램과 인식 활동.
 - (e) 확산탄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 (f) 국가 행동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일할 해당 당사국 정부와 관련 정부 기관 및 정부 간 국제기구 혹은 비정부 기구 간의 협력관계.
12. 본 조의 조항들에 따라 지원을 주거나 받는 당사국들은 상호간에 합의한 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히 그리고 즉각 실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7조

투명성 조치

1. 각 당사국은 해당 당사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다음에 관하여 보고해야 한다.
- (a) 본 협약 9조에 언급된 국내 이행 조치.
 - (b) 본 협약 3조 1항에 언급된 폭발성 소폭탄을 비롯한 모든 확산탄의 총량 및 확산탄의 종류, 수량 그리고 가능하다면 각각의 제품번호.
 - (c) 해당 당사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시점 이전에 생산된 확산탄과 현재 보유한 확산탄의 종류별 기술적 특성. 이 정보들은 확산탄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작업에 활용이 된다. 여기에는 최소한 확산탄의 크기의 수치, 신관, 폭발성 물질, 금속성 물질, 컬러 사진, 그리고 잔류확산탄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d) 확산탄 생산시설의 전환 혹은 해체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 (e) 확산탄 파괴에 사용될 방법, 모든 파괴 장소의 위치, 적용된 안전 및 환경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해 본 협약 3조에 따른 확산탄 및 폭발성 소폭탄 파괴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 (f) 확산탄 파괴 방법, 파괴 장소의 위치, 적용된 안전 및 환경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해 본 협약 3조에 따라 파괴된 확산탄의 종류와 수량.
 - (g) 본 항의 (e)에 언급된 확산탄 파괴 프로그램과 본 협약 3조에 따른 파괴 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발견된 확산탄과 폭발성 소폭탄의 비축분.
 - (h) 당사국 관할권에 있는 확산탄 오염지역의 규모와 위치. 여기에는 확산탄이 사용되었던 시기와 각각의 오염지역에 남아 있는 잔류확산탄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최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i) 본 협약 4조에 따라 제거되고 파괴된 잔류확산탄의 모든 종류와 수량에 대한 파괴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여기에는 제거된 확산탄 오염지역의 규모와 위치, 그리고 제거되고 파괴된 각각의 잔류확산탄의 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 (j) 당사국 관할권에 있는 확산탄 오염지역에 사는 민간인에 대한 위험경감 교육 제공, 특히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경고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
 - (k) 연령과 성별을 반영해 의료, 재활,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지원해야 하며, 확산탄 피해자들에 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모아야 한다는 본 협약 5조의 의무 이행에 대한 진행 상황.
 - (l) 본 항에 규정된 조치를 이행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된 기관의 명칭과 연락처.
 - (m) 본 협약 3조, 4조, 5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배정된 재정적, 물질적 혹은 현물적 자원을 포함한 국가 자원의 총량.
 - (n) 본 협약 6조에서 제공된 국제협력과 지원의 총량, 종류, 대상.
2. 각 당사국은 본 조 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전해의 회기연도로 매년 갱신하여 매해 4월 30일 이전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유엔 사무총장은 각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모든 보고서를 당사국들에게 전해야 한다.

8조

의무 준수의 촉진과 해명

1.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조항들의 이행과 관련해 상호 협의하고 협력하며, 당사국들이 본 협약의 의무들을 준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협조의 정신으로 함께 일할 것을 약속한다.
2. 만일 하나 혹은 여러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본 협약 조항의 의무 준수 문제와 관련해 해명을 바라거나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해명 요청을 해당 당사국에 보낼 수 있다. 이 해명 요청에는 적절한 모든 정보를 같이 담아야 한다. 해명 요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 당사국은 근거가 없는 해명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해명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28일 이내에 해당 사안을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3. 만일 해명을 요청한 국가가 규정된 기간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면, 이 문제를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차기 당사국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제출된 해명 요청 사안을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같이 담아 모든 당사국에게 전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답변할 권리가 있는, 해명 요청을 받은 당사국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4. 당사국회의 중일 때에는 당사국은 누구라도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의 중재를 활용해 요청된 해명이 촉진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본 조 3항에 따라 해명 요청이 제출되었을 때 당사국회의는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관련 당사국들이 제출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안을 더 고려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당사국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더 고려하기로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국제법에 부합하는 적절한

- 절차의 개시를 포함해 이 사안을 해명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방법과 수단을 관련 당사국들에 제안할 수 있다. 당면한 문제가 해명 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통제를 넘어서는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면 당사국회의는 본 협약 6조에 언급된 협력 수단의 이용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6. 본 조 2항과 5항에 제시된 절차에 더하여, 당사국회의는 사실관계를 포함해 의무 준수의 해명을 위한 다른 일반적인 절차나 특정한 메커니즘을 채택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적절하게 여겨지는 본 협약의 조항들에 맞춘 의무 불이행 사례에 대한 결의문이 포함된다.

9조

국내 이행 조치

자국의 관할권에 있는 사람과 영토를 책임진 각 당사국은 금지된 활동을 방지하고 억제하는 형사적 재제를 포함해 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모든 법적, 행정적, 여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10조

분쟁의 해결

1.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두 당사국 혹은 그 이상의 당사국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관련 당사국들은 당사국회의에 도움을 청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해 협상이나 여타 평화적 방식을 통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상호간 협의를 해야 한다.
2. 당사국회의는 중재를 제의하고, 관련 당사국에게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하고, 동의된 절차에 제한 시한을 권고하는 등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분쟁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11조

당사국회의

1. 각 당사국들은 협약의 적용이나 이행과 관련한 문제를 고려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국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당사국회의에서 다루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 (a) 본 협약의 작동과 상태.
 - (b) 본 협약의 조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서 제기되는 사안.
 - (c) 본 협약 6조에 따른 국제적 협력과 지원.
 - (d) 잔류확산탄의 제거를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
 - (e) 본 협약 8조와 9조에 따른 당사국들의 소위원회.
 - (f) 본 협약 3조와 4조에 따른 당사국들의 소위원회.
2. 첫 당사국회의는 본 협약이 발효된 이후 1년 이내에 유엔 사무총장이 소집해야 한다. 후속 회의는 첫 번째 평가회의 때까지 유엔 사무총장이 매년 소집해야 한다.
3.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유엔, 여타 관련 국제조직이나 기구, 지역조직,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연맹, 관련 비정부 조직은 절차규칙에 따라 당사국회의에 참관인으로 초청될 수 있다.

12조

평가회의

1. 평가회의는 본 협약이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유엔 사무총장이 소집해야 한다. 추가적인 평가회의는 한 개 이상의 당사국이 요청하였을 경우 양 평가회의 사이의 기간이 5년 이상일 때에 유엔 사무총장이 소집해야 한다. 본 협약에 가입한 모든 당사국들은 각 평가회의마다 초청되어야 한다.

2. 평가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협약의 작동과 상태를 검토.
 - (b) 본 협약 11조 2항에 언급된 추가 당사국회의의 필요성과 간격을 고려.
 - (c) 본 협약 3조와 4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요청에 대한 결정.
3.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유엔, 여타 관련 국제조직이나 기구, 지역조직,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연맹, 관련 비정부 조직은 절차규칙에 따라 평가회의에 참관인으로 초청될 수 있다.

13조

개정

1. 본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당사국은 언제든지 협약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제안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이 제안을 모든 당사국들에게 통보하고 이 제안을 고려하기 위한 개정회의 개최 여부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2.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유엔, 여타 관련 국제조직이나 기구, 지역조직,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연맹, 관련 비정부 조직은 절차규칙에 따라 개정회의에 참관인으로 초청될 수 있다.
3. 당사국 다수가 개정회의를 당사국회의 혹은 평가회의에 앞서 개최하자고 요청하지 않는 한 개정회의는 당사국회의 혹은 평가회의가 끝난 직후에 열린다.
4. 개정회의에 참석한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에 개정이 채택된다. 수탁자는 채택된 개정안을 모든 국가에 통보해야 한다.
5. 본 협약의 개정은 해당 개정안이 채택된 시점의 당사국 다수가 수락서를 기탁했을 때 해당 개정안을 수락한 당사국들에 대하여 발효한다. 남아 있는 당사국들은 그 후에 수락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해당 당사국에서 발효한다.

14조

비용과 행정적 과제

1. 당사국회의와 평가회의, 개정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절히 조정된 유엔 분담금 부담률에 따라 각 당사국과 회의에 참석하는 비당사국이 부담한다.
2. 본 협약 7조와 8조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적절히 조정된 유엔 분담금 부담률에 따라 각 당사국들이 부담한다.
3. 이 협약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이 맡아야 할 행정적 과제의 수행은 유엔의 권한에 속한다.

15조

조인

2008년 5월 30일 더블린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2008년 12월 3일 오슬로에서 조인식이 열리며 이후에는 협약이 발효될 때까지 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서 서명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16조

비준, 수락, 승인 혹은 가입

1. 본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협약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에 가입이 개방된다.
3.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17조

발효

1. 본 협약은 3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수탁자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6개월째 되는 달의 1일에 발효한다.
2. 3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개월째 되는 달의 1일에 그 국가에서 협약이 발효한다.

18조

잠정적 적용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점에 해당 국가는 협약이 발효되기 전이라도 본 협약 1조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19조

유보

이 협약의 조항들은 유보를 적용하지 않는다.

20조

기간과 철회

1. 이 협약은 무기한 존속한다.

2. 각 당사국은 주권 행사의 과정에서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해당국은 이러한 탈퇴의 의사를 다른 모든 당사국과 수탁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탈퇴서에는 탈퇴의 배경이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3. 이와 같은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유효하다. 하지만 이 6개월이 만료되기 이전에 해당국이 무력충돌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이 무력충돌이 끝날 때까지 해당국의 탈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1조

비당사국과의 관계

1. 각 당사국은 본 협약에 모든 국가들이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비당사국들이 본 협약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2.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의무를 본 조 3항에 언급된 모든 비당사국에게 알려야 하고, 확립한 규범을 촉진해야 하며, 비당사국이 확산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3. 그러나 당사국은, 그 군대나 국민은 본 협약의 1조의 조항과 부합하는 국제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에게는 금지된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비당사국과 군사협력 및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
4. 본 조 3항에 명시된 어떤 내용도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 (a) 확산탄의 개발, 생산 또는 여타의 획득.
 - (b) 확산탄의 비축 또는 이전.
 - (c) 확산탄의 사용.
 - (d) 당사국의 배타적 통제 영역 내에서 사용할 탄약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명시적으로 확산탄의 사용을 요청할 권한.

22조
수탁자

유엔 사무총장이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23조
정본

이 협약의 아랍어 · 중국어 · 영어 · 프랑스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 본은 동등한 정본이다.

무기제로 Weapon Zero

‘무기제로’는 전쟁을 통해 이익을 보는 전쟁수혜자(War profiteer)의 무기거래를 감시하고 무기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활동하는 네트워크 단체다. 2007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무기 생산과 수출 문제에 대해 모니터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발표해 왔다. 또한 국방 감시, 군축전시회, 정책 제언, 캠페인, 직접행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서울 마포구 망원동 422-9 (3층)
- 02-6401-0514
- wzeropeace@gmail.com
- <http://wzero.org>
- 후원계좌 : 국민은행 543001-01-310330 염창근(무기제로)

펴낸날 1판 1쇄 2012년 3월 1일

펴낸곳 무기제로

편 집 무기제로

이 책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값 3,000원

